

여성 경제 활동 백서

발 간 등 록 번 호

11-1384000-100043-10



2025년

여성 경제 활동 백서

2025. 12.





2025년

여성 경제 활동 백서

2025. 12.

발 간 사



안녕하십니까?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입니다.

여성 경제활동 현황 및 정책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담아낸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의 세번째 발간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저성장, 불균형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문을 넓혀 함께 잘 사는 길로 가기 위한 해법의 중심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여성 경제활동 분야의 주요 성과를 보면 여성 고용률 상승과 고용률 성별
격차 완화, 과학기술분야 여성 인력 증가, 남성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비중 증가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안정적 일자리 지원 및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성별임금격차 완화 등 질적인 변화까지
견인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등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백서가 여성 고용정책의 성과를 폭넓게 이해하고 노동시장의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발 간 사



「2025 여성경제활동백서」 세 번째 발간을 축하합니다.
백서 발간을 위해 수고해주신 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한국노동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기술혁신과 일자리의 재편 속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올해 10월 15~64세 여성고용률은 63.5%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고, 일터에서 안전과 존중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바뀌어야 합니다.

일터는 누군가의 하루이자 삶의 기반의 기반입니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는, 결국
모두가 일하기 좋은 일터입니다. 단절 없이 계속 일할 수 있고, 돌봄과 생계를 함께 책임지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맞돌봄 사회’ 전환의 기반을 놓았습니다.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육아휴직
급여 인상도 추진했습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특히, 성희롱·성차별 없는 일터는 권리이자 기준이라는 원칙 아래, 고용평등 심층상담,
익명신고센터 운영, 근로감독 실시 등으로 여성이 안전하고 차별없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연계하여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고용평등은 선언이 아닌, 현장에서 실천되고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차별 없는 근무환경과 신뢰할 수 있는 노동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것이
고용노동부의 책무입니다.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일 러 두 기

- ❁ 여성경제활동백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9조에 따라 여성
경제활동 현황 및 정부 지원정책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발간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경력단절여성 등의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관련부처: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 ❁ 금년은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 세 번째 해로, 여성경제활동 관련 정책 변화와 성과를
기술하고 최근 10여 년간의 통계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경제활동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 통계작성 기준시점은 2025년 6월로, 동시점까지 집계가능한 자료들을 수록
하였습니다.

* 2025년 6월까지 2024년 통계가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3년 통계 사용

* 부처 명칭은 2025년 10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시행에 따라 변경된 명칭 사용

- ❁ 본 통계는 국가데이터처 승인자료, 담당부처 제공자료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자료 특성에 따라 시계열에 반영하였습니다.

- 2014년 자료부터 제시하되, 자료제공이 가능한 연도에 따라 시계열이 달라질 수
있으며, 통계별로 주요 변화 시기를 고려하여 연도를 제시하였습니다.

(각 통계별 주석 참조)

- 통계의 원자료는 각 출처 및 자료,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백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한 것으로 각 항목의 합계 또는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백서는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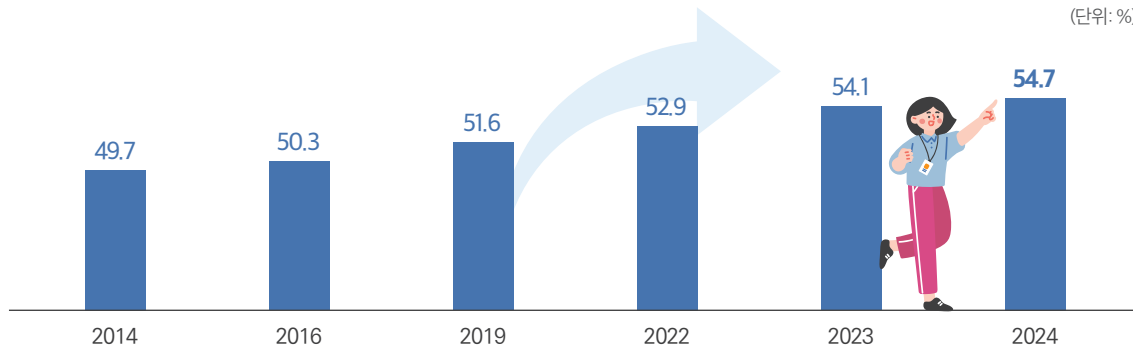
2024년 여성경제활동 통계



여성경제활동의 변화와 근로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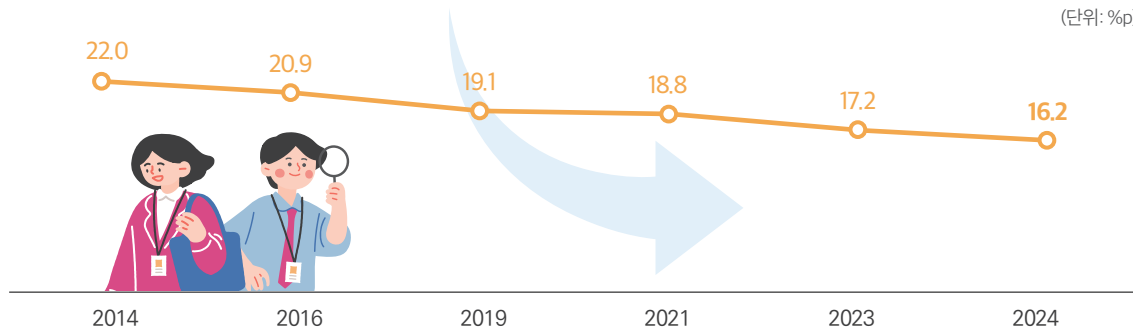
여성 고용률 증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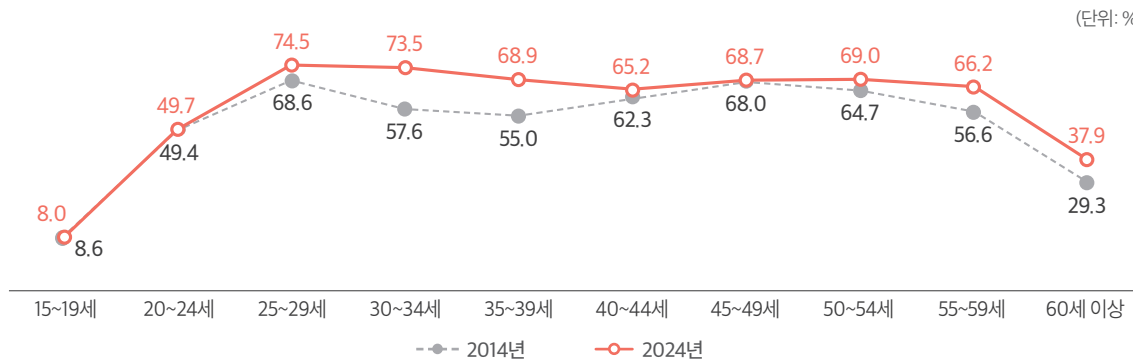
고용률의 성별 격차 감소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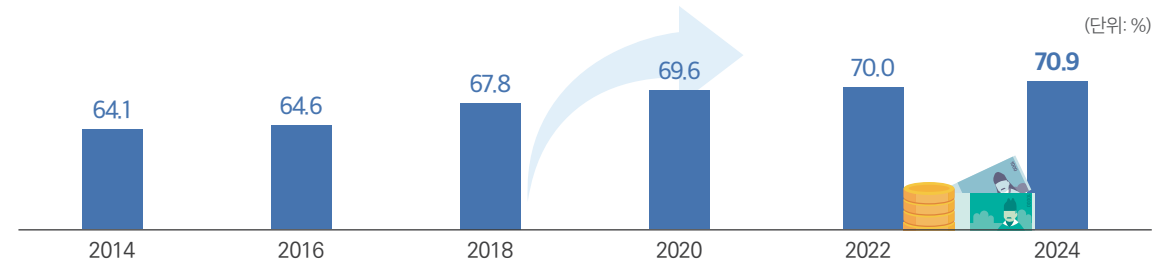
30대 여성고용률의 지속적 상승으로 M자형 완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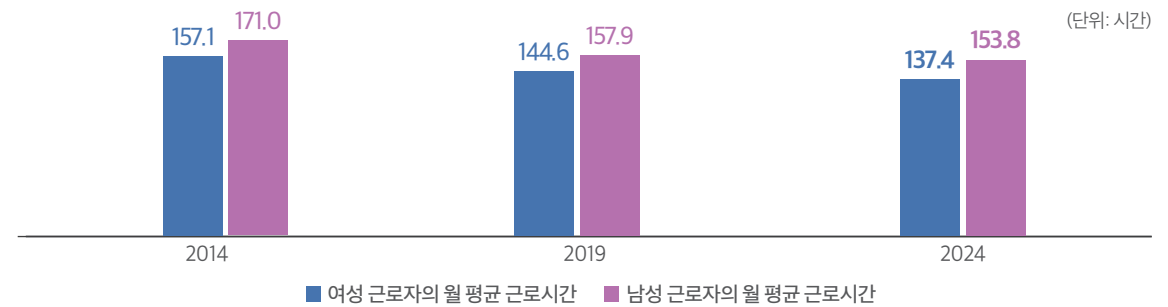
시간당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 비율의 증가 추세

(단위: %)



근로시간의 전반적인 감소세 유지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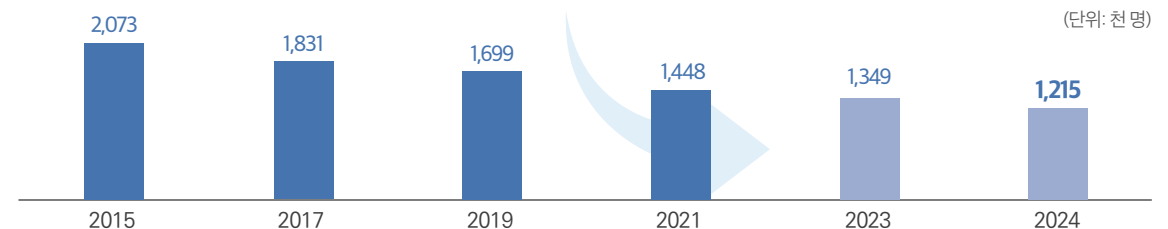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지원 확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현황 변화 및 증가

연도	구직건수	직업교육훈련 과정 수	새일여성인턴 취업률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자 수	경력단절예방사업 운영 센터 수
2014	251,466건	651개	93.0%	25,838명	사업 시행 전
2024	587,738건	733개	96.9%	26,777명	80개소

경력단절 여성 규모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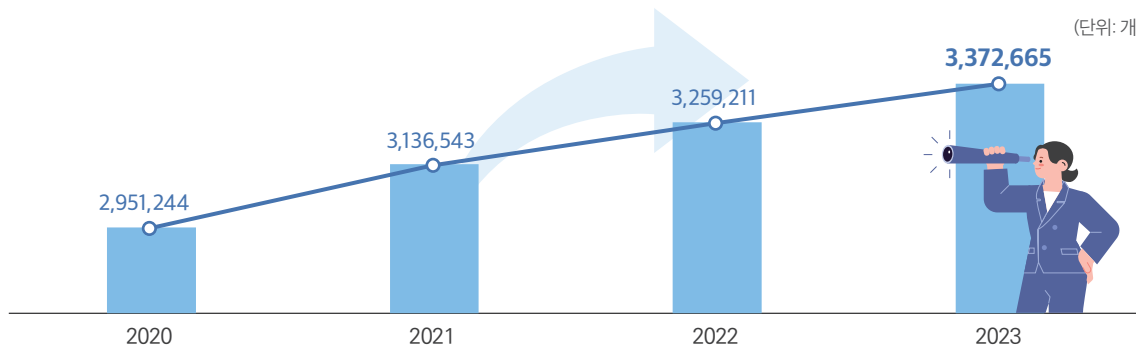
(단위: 천 명)



다양한 분야 여성 인력 진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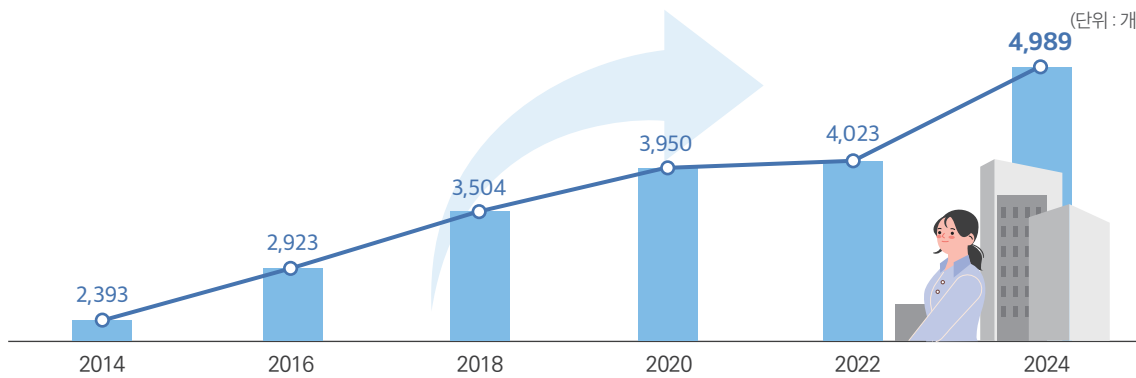
여성 중소기업 수 증가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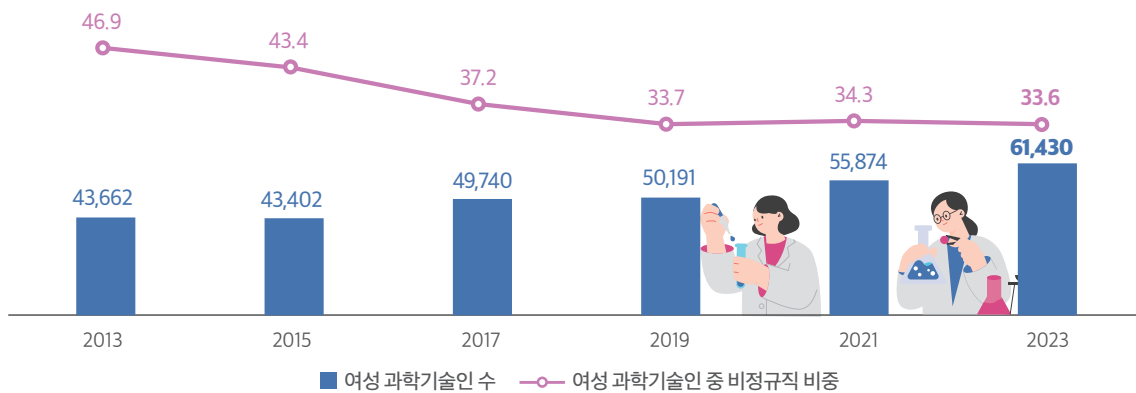
여성 벤처기업 수 증가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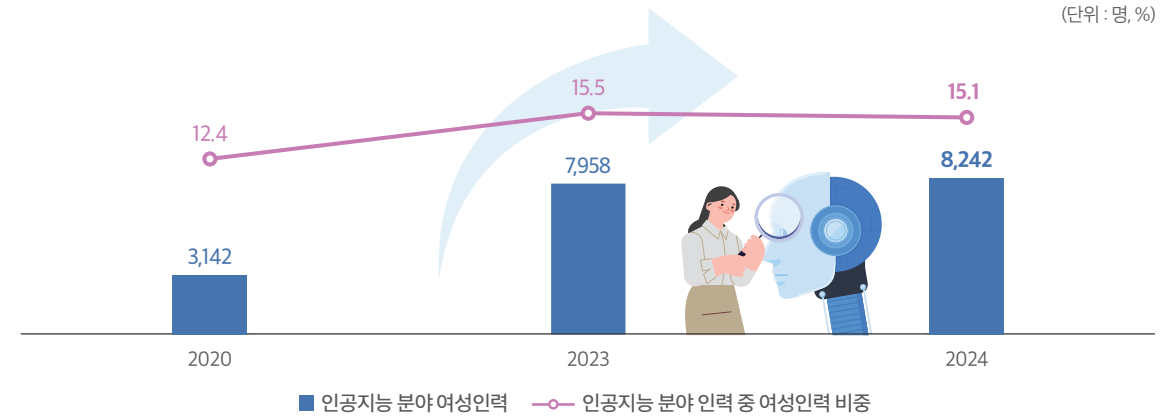
여성과학기술인력 증가 및 비정규직 비중 감소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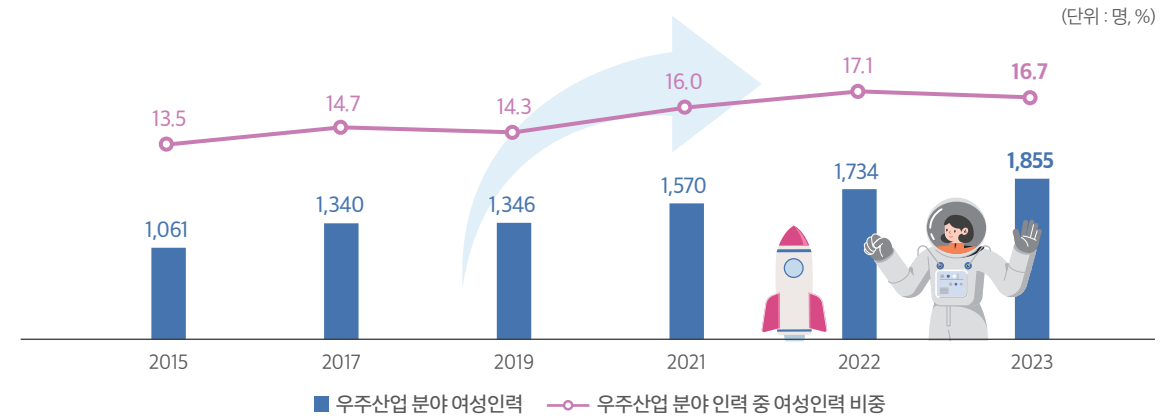
인공지능 분야 여성 인력 증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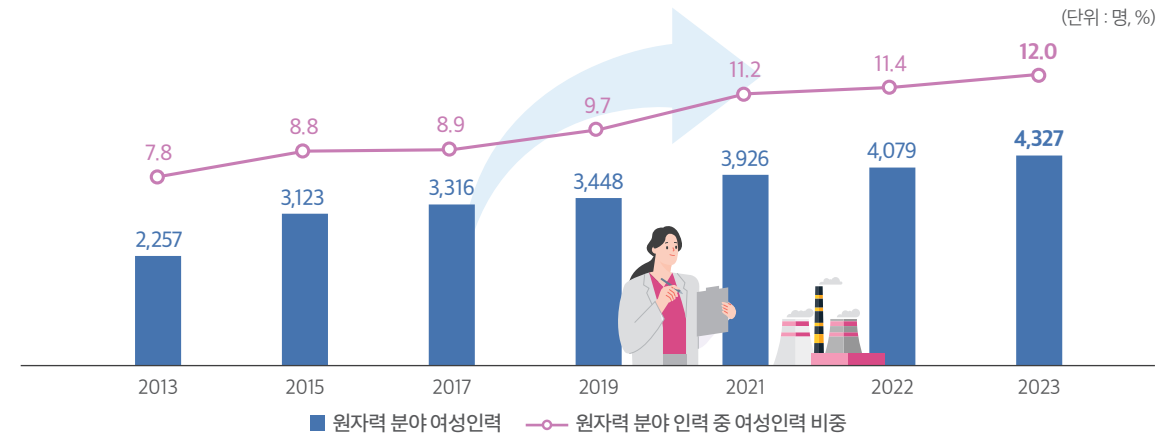
우주산업 분야 여성 인력 증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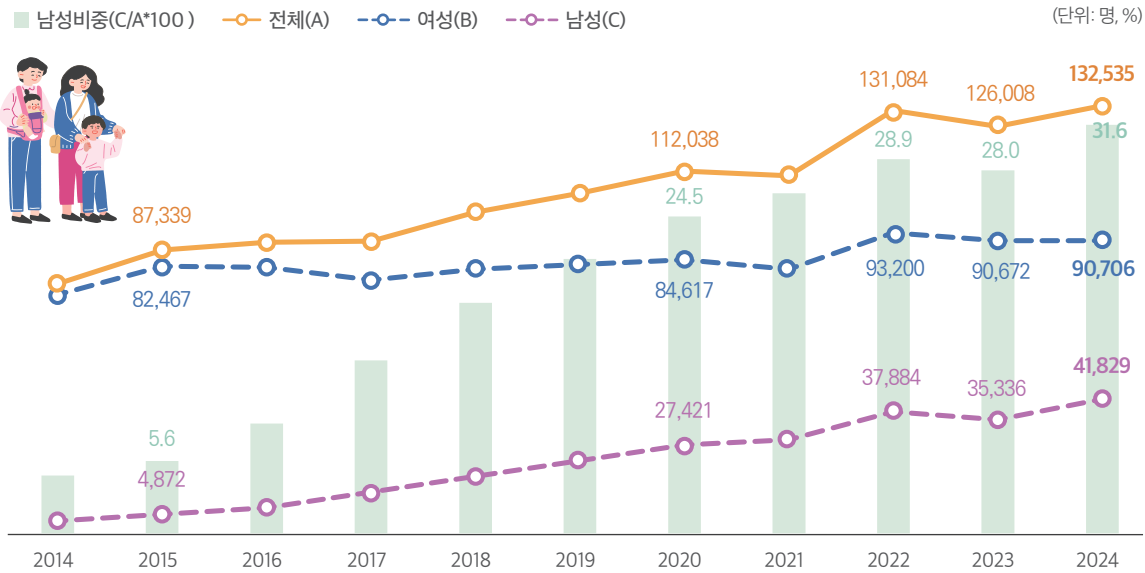
원자력 분야 여성 인력 증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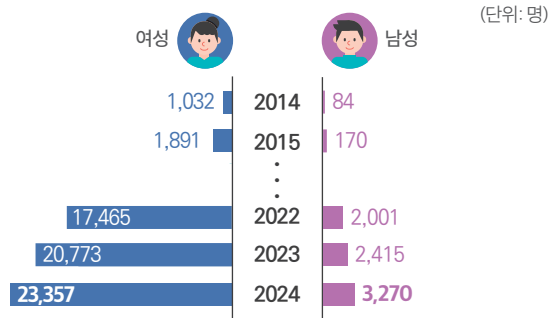


일·생활 균형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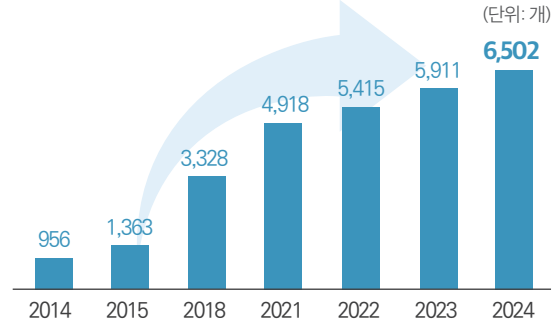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 및 남성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비중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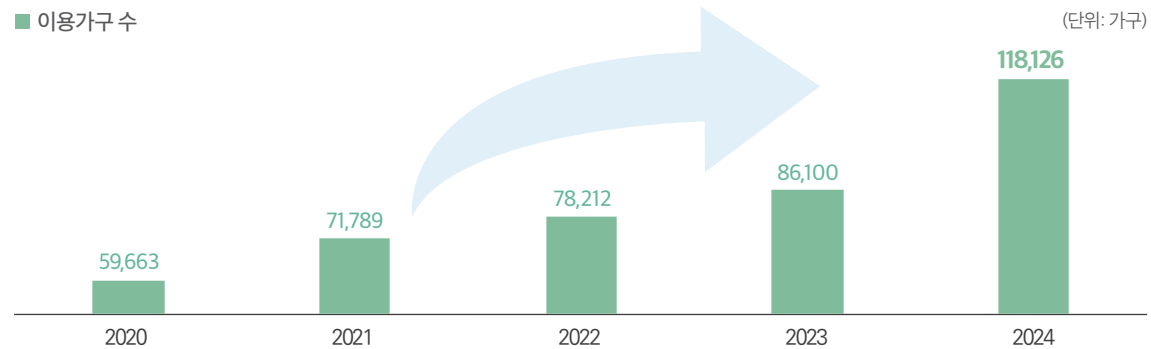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수 증가



가족친화인증기업 수 증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규모 증가



2025년

여성
경제
활동
백서

목차

01 장

여성경제활동
지원 정책



1. 여성경제활동 관련 주요 정책·사업	20
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20
나. 성평등한 고용환경 구축	25
다. 성희롱·성차별 근절과 노동권 보호 강화	40
2. 여성경제활동 관련 법령 제·개정	42
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42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3
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44
라.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5
마. 「양성평등기본법」	46

02 장

여성의 고용



1. 경제활동 현황	50
가. 취업자 변화	50
나. 실업자 변화	56
다. 비경제활동인구 변화	58
2. 취업자 특성	61
가. 산업별·직업별·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61
나.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67
3. 경력단절 여성 및 구직 현황	69
가. 경력단절 여성	69
나. 지역별 경력단절여성 현황	71
다. 고용보험 가입 현황	72
라. 구인·구직 여성	73
4.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여성 인력 및 국가전략기술분야 여성 인력 현황	74
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여성 인력 현황	74
나. 주요 국가전략기술분야 여성 인력 현황	76
①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76
② 원자력 분야	78
③ 우주산업 분야	79
④ 수소 분야	80
⑤ 인공지능 분야	81
⑥ 정보통신 분야	82
⑦ 로봇 분야	83

03 장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기업 활동



1.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88
가. 정부지원 직업훈련 참여 현황	88
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현황	90
2. 여성 기업활동	90
가. 여성경영인 기업 현황	94
나. 창업 현황	97
다. 여성 중소기업 현황	99
라.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현황	101
마. 여성 벤처기업 현황	101
바. 벤처기업 여성고용 현황	103

04 장

여성의
일·생활 균형



1.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106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현황	112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 현황	114
4. 어린이집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116
5. 초등돌봄교실 참여 현황	119
6.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황	120

05 장

여성의
근로여건 현황



1. 임금	124
2. 근로시간	134
3. 사회보험	137

통계 설명자료	140
관련 사이트	142

표 목차

표 II

표 II-1	성별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50
표 II-2	성별·연령별 고용률	52
표 II-3	성별·교육정도별 고용률	54
표 II-4	성별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56
표 II-5	성별·연령별 실업자	57
표 II-6	성별·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58
표 II-7	성별·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60
표 II-8	성별·산업별 취업자	61
표 II-9	성별·직업별 취업자	63
표 II-10	성별·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65
표 II-11	성별·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67
표 II-12	직업별·종사자 규모별 여성 취업자	68
표 II-13	사유별·연령대별 경력단절 여성 규모	69
표 II-14	지역별 경력단절 여성 규모 추이	71
표 II-15	성별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72
표 II-16	성별 구인·구직 및 취업 건수	73
표 II-17	성별·고용형태별 과학기술인 인력 추이	74
표 II-18	성별·기관유형별 과학기술인 인력 추이	75
표 II-19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 예산 및 수혜자 수	76
표 II-20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사업 취업 유지 현황	76
표 II-21	성별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인력	77
표 II-22	성별 원자력 분야 인력	78
표 II-23	성별 우주산업 분야 인력	79
표 II-24	성별 수소 분야 인력(2023년)	80
표 II-25	성별 인공지능 분야 인력	81
표 II-26	성별 정보통신 분야 인력	82
표 II-27	성별 로봇 분야 인력	83

표 III

표 III-1	성별 정부지원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 현황	88
표 III-2	성별 정부지원 실업자 직업훈련 참여 현황	89
표 III-3	전국 새일센터 운영 현황	90
표 III-4	새일센터 구직 건수, 취업률, 취·창업 건수 현황	90
표 III-5	새일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현황	91
표 III-6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과정 수 및 수료자 수	91
표 III-7	연령별 새일센터 고숙련·고부가가치 훈련과정 참여 현황	92
표 III-8	새일여성인턴 연계 및 취업 현황	93
표 III-9	새일센터 경력단절예방사업 현황	93
표 III-10	산업별 여성경영인 기업 비율 추이	94

표 목차

표 III-11	산업별·기업 성장단계별·매출액 규모별 여성기업 현황	96
표 III-12	산업별 여성 창업 건수	97
표 III-13	산업별 여성 중소기업 수	99
표 III-14	지역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개소 현황('24.12.31. 기준)	101
표 III-15	벤처기업 대표자 성별 현황	101
표 III-16	유형별 여성 벤처기업 현황('24.12.31. 기준)	102
표 III-17	업종별 여성 벤처기업 현황('24.12.31. 기준)	102
표 III-18	성별·고용형태별 벤처기업 종사자 수	103

표 IV

표 IV-1	성별 유연근무제 활용 추이	106
표 IV-2	성별 유연근무제 활용 유형	107
표 IV-3	성별·산업별 유연근무제 활용률	108
표 IV-4	성별·직업별 유연근무제 활용률	110
표 IV-5	성별·사업장 규모별 유연근무제 활용률	110
표 IV-6	성별 유연근무제 활용 희망 여부 및 유형	111
표 IV-7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	112
표 IV-8	성별·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	113
표 IV-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현황	114
표 IV-10	성별·사업장 규모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수	115
표 IV-11	전국 어린이집 현황	116
표 IV-12	직장어린이집 수	117
표 IV-13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체의 보육시설 설치 비율	118
표 IV-14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118
표 IV-15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이용 현황	119
표 IV-16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현황	120

표 V

표 V-1	성별·고용형태별 평균 임금	124
표 V-2	성별·근속기간별 평균 임금	126
표 V-3	성별·고용형태별·근속기간별 평균 임금	128
표 V-4	성별·업종별 평균 월 급여 총액	130
표 V-5	성별·업종별 평균 시간당 임금	131
표 V-6	성별·직업별 평균 월 급여 총액	133
표 V-7	성별·직업별 평균 시간당 임금	133
표 V-8	성별·고용형태별 월 평균 근로시간	135
표 V-9	성별·근속기간별 월 평균 근로시간	136
표 V-10	성별 근로자 사회보험 유형별 가입률	138
표 V-11	성별·고용형태별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139

그림 목차

그림 II

그림 II-1	성별 고용률 및 격차	51
그림 II-2	15~64세 성별 고용률 및 격차	51
그림 II-3	연령별 여성 고용률	53
그림 II-4	연령별 남녀 고용률 격차	53
그림 II-5	고학력(대졸 이상) 남녀 고용률	55
그림 II-6	교육정도별 남녀 고용률 격차	55
그림 II-7	성별 실업률 추이	56
그림 II-8	연령별 여성 실업률	57
그림 II-9	활동상태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59
그림 II-10	산업별 여성 취업자 비중	62
그림 II-11	성별 취업자 직업분포	64
그림 II-12	2024년 종사상 지위별 여성 취업자 증감	66
그림 II-13	성별 취업자 종사상 지위 변화	66
그림 II-14	사유별 경력단절 여성 비율 변화	70
그림 II-15	연령별 경력단절 여성 비율 변화	70
그림 II-16	사유별 경력단절 여성 규모	71
그림 II-17	여성 고용보험 가입자 및 비율 추이	73
그림 II-18	여성과학기술인 중 비정규직 비중 추이	75
그림 II-19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여성 인력 및 비율 추이	77
그림 II-20	원자력 분야 여성 인력 및 비율 추이	78
그림 II-21	우주산업 분야 여성 인력 및 비율 추이	80
그림 II-22	인공지능 분야 여성 인력 및 비율 추이	82
그림 II-23	로봇 분야 여성 인력 및 비율 추이	84

그림 III

그림 III-1	정부지원 재직자 직업훈련 여성참여 비율 추이	89
그림 III-2	정부지원 실업자 직업훈련 여성참여 비율 추이	90
그림 III-3	새일센터 고숙련·고부가가치 훈련과정 수 및 취업률 추이	92
그림 III-4	산업별 여성경영인 기업 비율	95
그림 III-5	여성경영인 비중이 증가한 주요 산업	95
그림 III-6	여성 창업기업의 산업별 비중	98
그림 III-7	산업별 여성경영인 중소기업 비율	100
그림 III-8	여성 벤처기업 비중 추이	102

그림 목차

그림 IV

그림 IV-1	성별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 추이	107
그림 IV-2	2024년 성별·산업별 유연근무제 활용률	109
그림 IV-3	2024년 성별·사업장 규모별 유연근무제 활용률	111
그림 IV-4	여성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추이	113
그림 IV-5	성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추이	113
그림 IV-6	성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추이	114
그림 IV-7	2024년 성별·사업장 규모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분포	115
그림 IV-8	2024년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아동 비율	116
그림 IV-9	직장어린이집 및 보육아동 수 추이	117
그림 IV-10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아동 수 및 아이돌보미 수 추이	119
그림 IV-11	가족친화인증기업 수 추이	120

그림 V

그림 V-1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성비	125
그림 V-2	근속기간별 남녀 근로자의 임금과 성비(2014, 2024년)	128
그림 V-3	업종별 여성 월 평균 임금	130
그림 V-4	직업별 여성 월 평균 임금	132
그림 V-5	성별 근로자 월 평균 근로시간	134
그림 V-6	고용형태별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	135
그림 V-7	근속기간별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	137
그림 V-8	남녀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137



01장

여성경제활동 지원 정책



- 1. 여성경제활동 관련 주요 정책·사업
- 2. 여성경제활동 관련 법령 제·개정

01장 여성경제활동 지원 정책



1. 여성경제활동 관련 주요 정책·사업

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맞춤형 취업지원

근거법과 기본계획: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과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25~’29)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성평등가족부)

1) 대상 및 목적

- 경력단절여성 및 구직여성 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창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경력단절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2) 지원 내용

구분	내용
직업교육훈련	• 구인 수요가 높은 취업 직종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 직무 태도 및 직업 적응 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소양 교육, 이력서 작성법, 모의 면접 등 구직 스킬 향상을 위한 취업 준비 교육, 직무 수행을 위한 직업전문 교육으로 구성된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국비 직업교육훈련을 제공 • (직업교육훈련 대상) 취업 의사가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구직 여성, 과정별 선발 조건에 부합하는 구직 여성
새일여성인턴	• 경력단절여성 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 (인턴 대상)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 등 • 인턴기간은 3개월이며, 전일제 원칙(일부 양질의 시간제 가능), 주 35시간 이상(결혼이민여성 주 30시간 이상), 온라인 신청 접수 완료 후 기업별 선발절차 진행 및 참여를 확정함 • 1인 총액 460만 원(기업 400만 원, 개인 60만 원)을 지원함
경력이음 사례관리	• 경력 단절이 두드러지는 30대 전후(20~40대)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초기상담부터 취업 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 • 서비스 제공 상세 내용 ① 심층상담: 상담 및 유형 진단, ② IAP수립: 취업활동 계획수립, ③ 경력개발: 직업교육훈련, 교육, 일경험프로그램, 창업지원, 경력개발프로그램, 집단상담 등, ④ 취업지원: 입사서류클리닉, 면접지원, 동행면접, 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⑤ 사후관리: 사후관리상담, 직장적응지원 등, ⑥ 복지서비스: 자녀양육 및 교육, 건강, 금융, 법률 등)
경력단절예방	• 여성이 결혼·출산·육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정·기업·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과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경력단절예방 정책 등을 홍보하는 사업 • 여성고용유지지원, 직장문화 개선지원, 경력단절협력망구축, 인식개선사업

구분	내용
취·창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 인턴지원, 취업알선 서비스, 창업유관기관 연계 • 취업 후 고용유지프로그램,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구축 지원
집단상담	• 경력단절여성 등의 근로의욕 고취와 구직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소규모 그룹 형태로 취업기초교육을 제공하여 직업교육훈련 연계 및 취업 알선 등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프로그램 종류는 새일스타트(경력단절여성 대상 기본과정, 새일플러스(경력단절여성 대상 심화과정), WiCi(결혼이민여성 대상 필수·선택과정)
새일정보통	•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새로운 소식 및 정책 공지,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지원 성공기 제공

3) 운영 현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08년 5개 기관을 통해 시범운영 실시 후, 2025년 159개 센터를 지정·운영
 ※ 72개소(‘09년) → 85개소(‘10년) → 98개소(‘11년) → 110개소(‘12년) → 130개소(‘13년) → 140개소(‘14년) → 147개소(‘15년) → 150개소(‘16년) → 155개소(‘17년) → 158개소(‘18년) → 159개소(‘24년) → 159개소(‘25년)

- (새일e직업훈련센터) 경력단절여성 및 일반 구직자, 취·창업 예정자, 취·창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서비스인 새일e직업훈련센터 운영. 온라인과정(2025년 기준 23개 과정), 오프라인 교육, 온오프라인 혼합교육을 진행

○ 온라인 여성경력개발센터(꿈날개)운영(성평등가족부)

1) 대상 및 목적

-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취업희망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역량진단-취업상담-온라인교육 등 맞춤형 온라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지원내용

- 경력 보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단계별 서비스 제공

취업지원 단계	내용
취업역량 진단서비스	• 새일센터 구직자 등 대상으로 취업역량 진단을 통해 직업선택 및 역량개발 가이드 제공 • 취업기본진단 - 직업의식진단 - 직업적성검사 - 직업역량진단을 통해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취업가능성 점수 도출 및 직업 추천
온라인교육	• 여성 취업희망 직종(사회복지, 경영, 교육직업군 등), 여성 창업, IT 직종 등 온라인 교육 운영
온라인상담	• 온라인커리어상담사(EM)를 통한 진로상담, 경력개발 코칭,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 취업알선 등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 온라인 직장적응 상담서비스로 노무·법률, 심리, 육아·보육 등 고용유지 상담, 직장적응 교육, 고용유지 관리 등 온라인 상담 및 멘토링 서비스 제공

○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사업(성평등가족부)

1) 대상 및 목적

- 기업의 성별다양성 제고 및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성(DEI) 교육 사업 추진

2) 지원내용

- 조직의 제도변화에 적용 가능한 사례·실행 전략 중심의 ESG·DEI 교육

* ESG : 투자·경영에 있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 고려하는 전략
 * DEI :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을 의미하여 조직문화의 관점에서 반영되어야 할 주요 가치로서 ESG 전략 중 S(사회)에 포함됨

- 기업 규모·직종 등에 따른 조직문화와 제도 확산성을 고려한 업종별·단계별 맞춤형 교육
 - ①제도 파급력과 실행력을 갖춘 대기업, 중견기업, ②자율적 이행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가족친화예비기업, 스타트업 등) 등 기업 규모별 특성 고려
 - 의사결정권을 가진 CEO, 제도설계를 주도하는 HR 담당자 등 직종별로 CEO 포럼, 지역 산업단지 대상 찾아가는 HR 담당자 교육 등 다양한 접근 방식
- 기업의 실질적인 성별균형 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기업 내 성별 다양성 제고 등 조직문화 개선수요가 있는 기업, 지역 산업단지, 중소기업 등 일·가정 양립 인식 및 여건이 부족한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HR 담당자 대상 교육
- 장기적인 교육 효과 측정 및 확산을 위한 기업 유형별 조직문화 인식·진단 및 제도변화 측정

3) 사업 현황 및 실적

-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사업 교육인원

연도	2023년(시범운영)	2024년	2025년
교육 기업 수	98개사	262개사	425개사

- '25년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사업 교육 만족도
 - 일·생활 균형 이해도: (교육 전) 2.96 점 → (교육 후) 4.38 점
 - 관심도·중요도: (교육 전) 3.31 점 → (교육 후) 4.49 점

여성기업 성장 기반 확충

근거법과 기본계획: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제 2차 여성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25~'29)

○ 여성기업 육성(중소벤처기업부)

- 여성창업자 및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판로, 수출, 인력 등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 육성 지원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입주기업(여성기업)은 꾸준히 증가 추세
 - ※ '18년 266만 개사 → '20년 295만 개사 → '22년 326만 개사 → '23년 337만 개사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18개 지역센터 내 여성창업보육실을 운영. 창업 3년 이내의 여성기업 및 예비 여성창업자가 대상. 입주 공간은 10평 내외이며, 입주 기간은 1년(연장심사 후 최대 2년까지 연장)

- 여성창업경진대회: 창업 후 7년 미만 여성창업기업(투자유치 30억 미만)과 예비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우수 여성창업자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화지원 60팀, 지원자 컨설팅, 투자상담회 등을 실시
- 여성창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창업 7년 미만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출 전문가 컨설팅(전략수립, 마케팅, 법률 등)(70개사 내외)지원, 글로벌 홍보 지원(수출용 마케팅 자료, SNS 마케팅 등) 및 해외시장 개척(해외 규격인증, 해외 전시회 등)(30개사 내외)을 지원. 후속지원으로 우수사례 및 성과 등 기획기사를 통한 언론홍보, 컨설팅·글로벌 홍보지원·해외시장개척 참가기업 대상 간담회를 통한 네트워킹, VC 및 액셀러레이터 투자유치 및 IR전문가 멘토링 연계프로그램 지원
- 여성가장 창업자금: 생계형 여성가장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최고 1억 원 이내, 연2% 고정금리, 최대 6년(최초 2년, 최대 2회 연장가능))하여 가계안정과 자활기회를 제공

○ 기술기반 여성창업 사업화 및 자금지원(중소벤처기업부)

- 여성창업기업, 특히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을 가진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위해 성장단계별(창업준비, 창업초기 및 도약기), 초격차 분야별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 혁신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성장 및 생존율 제고
-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여성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창업 사업화자금 융자사업을 실시

○ 여성벤처활성화 지원(중소벤처기업부)

- 유망 여성 스타트업 발굴·육성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여성벤처기업 신규출현과 기존 여성벤처 기업의 지속성장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민간협력 여성벤처 스타트업 육성, 여성벤처 창업케어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판로 확대 및 투자유치를 실시

○ 여성기업 판로 촉진(중소벤처기업부)

- 공공기관 여성기업 제품 구매 의무화: 「여성기업법」 제9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여성기업 확인제도를 운영
- 공영홍소품 입점 지원(입점 및 방송 수수료 지원), SNS 광고 영상 제작비 지원, 생활용품 전시회 지원(일산 킨텍스 전시관 '메가쇼-시즌1' 내 '여성기업제품관' 부스참가비 지원), 판로 역량 강화 교육 및 상담회(판로 교육 지원 및 대형유통사 MD들과 여성기업을 1:1 매칭, 상담을 통해 유통사 입점 및 컨설팅 지원) 등 여성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

○ 여성기업 인력 지원(중소벤처기업부)

- 여성기업 일자리 허브: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전문인력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는 플랫폼(iljarahub.or.kr)
- 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 여성기업의 특성에 맞춘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여 여성기업 경영환경 및 체질 개선 지원
- 여성기업 경영애로지원단: 여성기업의 경영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상담과 컨설팅을 지원. '전문위원 상담'은 전국 6개 권역센터에 배치된 전문위원이 창업, 수출, 자금, 마케팅, 인사노무 등 분야별 경영 상담 무료 지원. '선배 여성CEO 멘토링'은 선배 여성CEO 또는 여성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 더 다양한 분야의 상담 제공

○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중소벤처기업부)

-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방향 수립 및 통계 자료 발간 등을 위해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내에 여성 경제연구소를 설치하고, 국내외 여성기업 지원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을 조사·연구
- 「여성기업법」 제7조에 따라 국내 유일의 국가승인 통계인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실시(2022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여성기업의 현황 및 경영 애로 사항 등을 파악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근거법과 기본계획: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4~'28)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운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과 관련한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지원 활성화 사업 및 관련 정책조사 등을 추진

○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출산과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기업, 연구소에 성공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 멘토링을 지원. 대학, 공공 및 민간기업 연구소 등과 일자리 매칭 사업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고 연구활동비를 지원(연간 학·석사급 2,100만 원/인, 박사급 2,300만 원/인, 최대 3년)
- 참여 기관의 인력 활용 수요에 따라, 2개 트랙으로 지원함(①경력복귀 과제지원: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을 신규 채용시/②경력보유여성 재도약 지원: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을 인턴 3개월 채용 후 일반직 전환시)

○ 여성과학기술인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분야의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 및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출산·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무(남녀 무관)로 연구 공백이 발생한 기관에 대체인력, 인턴연구원, 박사연구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연구의 연속성을 보장. R&D 대체인력은 기존 연구자의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 실무 역량을 습득하고 연구개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됨

- (대체인력채용지원)대체인력 인건비 지원(학/석사 2,100만 원/연, 박사 2,300만 원/연), 대체인력의 역량 강화 교육 제공. (휴직제인 경우 3~15개월, 단축제인 경우 3~12개월)
- (인턴·박사후연구원 채용 지원)추가 연구인력(인턴연구원, 전문박사연구원)의 신규채용 시 인건비 지원(인턴연구원 1,000만 원, 전문박사연구원 3,000만 원/연)하며, 참여인력의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인턴연구원의 경우 6개월(인턴 계약기간 종료 후 계속 고용 시 6개월 추가지원), 박사후연구원은 최대 2년(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평가)지원)

○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 및 국공립대학에서 지정하며, 기관 내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위향상과 채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일·생활 균형 연구문화가 기관 전반에 확산되어 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
- 운영 기관 수를 2005년 30개에서 2025년 147개로 확대

○ 여성과학기술인 채용·재직 목표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채용·재직 목표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설정(3년 단위)하고 목표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는 제도

○ 여성과학기술인 생애주기 성장지원 플랫폼 'W브릿지'(www.wbridge.or.kr)(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경력탐색부터 경력전환, 경력심화 단계까지 여성과학기술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커리어 연속 성장을 지원하며, 초·중·고생, 대학(원)생, 미취업자, 재직자, 고경력자 등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나. 성평등한 고용환경 구축

성평등한 일터 조성

근거법과 기본계획: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23~'27), 「양성평등기본법」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성평등가족부)

- 민간기업·공공기관 대상 여성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하여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도
- 주요 내용 및 절차
 - 적용 대상: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상 민간기업(공시대상 기업 중 300인 이상 포함)
 - 제출 서류: 남녀근로자 및 임금 현황(적용 대상 사업장), 시행계획서(전년도 남녀근로자 및 임금현황 분석결과 동종 산업 평균 여성고용비율(70%)에 미달된 사업장), 이행실적보고서(전년도 시행계획서 제출한 사업장) 등

- 사후 관리: 여성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컨설팅 제공, 3년 연속 기준 미달 및 이행 불응 기업 명단 공개, 우수 이행기업 정부포상 지원 등
- 2025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 수는 총 2,728개사(공공기관: 335개사, 지방공사·공단: 164개사, 민간기업: 2,229개사)이며, 2025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명단공표 대상)은 41개사임

○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성평등가족부)

-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공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성별 임금 실태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공개할 예정임

○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지원(성평등가족부)

- 공공부문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을 지원하여 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사업
- 공공부문 조직문화 진단과 개선을 통해 구성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성평등 관점의 정책 추진을 위한 것으로 파급력이 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관 참여와 개선 독려하고 있음
-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 참여기관 수는 2024년 206개 기관, 2025년 188개 기관임

일·생활 균형 지원

근거법과 기본계획: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23-’27), 「고용보험법」

❁ 임신·출산지원제도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고용노동부)

1) 대상 및 기간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정부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
-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①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전 어느 때라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급여 지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 ①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②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월 210만원) 지급

구분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정부가 출산전후휴가 급여(통상임금 100%(상한액 월 210만원))를 지급하고,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월 210만원)과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정부가 출산전후휴가 급여(통상임금 100%(상한액 월 210만원)) 지급
대규모기업 근로자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정부가 출산전후휴가 급여(통상임금 100%(상한액 월 210만원)) 지급

○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고용노동부)

1) 대상 및 기간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하고 청구하면 10일~90일의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하고, 유산·사산휴가 기간에 대하여 정부가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원
- 유산·사산휴가 기간
 -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급여 지원

-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동일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고용노동부)

1) 대상 및 지급 요건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 *출산일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사업주와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동거친족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①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 ②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
 - ③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④유형: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 ⑤유형: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 ⑥유형: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2) 급여

- 총 150만 원 지원
-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 상이(임신기간 15주까지: 30만 원 / 16 ~ 21주: 50만 원 / 22 ~ 27주: 100만 원 / 28주 이상: 150만 원)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고용노동부)

1) 대상 및 기간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하여 정부가 급여를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며, 3회 분할하여(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 할 수 있음

2) 급여 지원 및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 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②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025년 기준 상한액 1,607,650원) 지급

○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고용노동부)

1) 대상 및 기간

-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사용하려는 남녀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의 난임치료휴가 사용 가능하며,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2) 급여 및 지원요건

- 난임치료 휴가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
 - 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②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025년 기준 상한액 160,760원)을 지급
-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고용노동부)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음
-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됨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육아 지원제도

○ 육아휴직 및 급여(고용노동부)

1) 대상 및 기간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1년(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 사용하고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최대 1년 6개월 사용이 가능하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 사용가능
- 4번에 나누어(분할 3회)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함(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동일)

2) 관련 보호 규정 등

-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도록 함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육아휴직을 마친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3) 급여 및 지급요건

-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

구분	내용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 동안 월별로 받을 수 있음 (1~3개월)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 원) (7개월~)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 원)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 급여인상 (1~3개월)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300만 원) (4~6개월)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 원) (7개월~)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 원)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도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로 지원 월 단위 상한액 (1월) 250만 원 (4월) 350만 원 (2월) 250만 원 (5월) 400만 원 (3월) 300만 원 (6월) 45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고용노동부)

1) 대상 및 기간

-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
- 1년 이내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로 사용이 가능하며,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사용 가능, 1회 기간은 1개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이상 사용하여야 함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사유: ①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②직업안전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③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2) 급여 및 지원 요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을 금지함
 - ①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
 - ②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에 해당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 ③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근로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시간 단축분을 비례 계산하여 산정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20만원, 하한 50만원)를 기준으로 계산

$$\text{월 통상임금의 100\%} \times \frac{10}{\text{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를 기준으로 계산

$$\text{월 통상임금의 80\%} \times \frac{\text{단축 전 근로시간} - \text{단축 후 근로시간} - 10}{\text{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사업주 대상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제도

○ 육아휴직지원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고용노동부)

1) 대상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 *고용보험에 가입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로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

2) 지원내용

- 육아휴직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 원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
-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매월 200만 원을 지원하며, 이후부터 월 30만 원(일반지원금)을 지급함(다만, 육아휴직지원금 특례지원(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받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해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는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1~3번째 허용사례에 대해 월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

자녀 연령	1개월 지급액	연간총액
기본지원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기간 30만 원	870만 원
특례지원	첫 3개월 200만 원	
육아휴직지원금	만 12개월 초과	30만 원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추가지원)	첫 3개월 10만 원	3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 원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지원함. 단, 회사에서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는 매월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하여 월 40만 원을 지원

자녀 연령		1개월 지급액	연간총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일반	30만 원	360만 원
	육아기 단축 인센티브 (추가지원)	10만 원	120만 원

○ 대체인력 지원금(고용노동부)

1) 대상

-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활용시 1인당 매월 최대 120만 원(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 또는 월별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80% 한도)을 지원하며,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최대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도 지원하는제도
- 고용보험에 가입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30일 이상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로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고용 후 1년까지 기존 직원 감원이 없는 사업주

2) 지원내용

구분	지급액
출산전후휴가	월 120만 원,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대 90일
육아휴직	월 120만 원 x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기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월 120만 원 x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업무분담지원금(고용노동부)

1) 대상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 육아휴직자 발생 시 동료 직원에게 업무를 분담하고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로 우선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함
- 업무분담자는 최대 5인까지 지정 가능하며, 대체인력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함. 사업주가 지급한 수당 범위 내에서만 지원

2) 지원내용

- 분담자 1명에게 월 10만 원 수당 지급할 경우 월 10만 원을 지원하며, 분담자 5명에게 각 6만 원 지급 시 월 20만 원(상한선)을 지원

○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고용노동부)

1) 대상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적시에 보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에 대한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2) 지원내용(서비스 제공기관)

- 민간 취업지원기관을 권역별 인재채움뱅크(前대체인력뱅크)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기업수요에 맞는 인재를 적시에 매칭(알선)
- (인재채움뱅크) 대체인력에 관한 구인 수요를 분석하여 적합한 구직자를 알선하고, 대체인력 구직자에 대한 기초소양교육 제공
- (구인기업) 대체인력 취업알선 전문기관으로부터 알선에 따른 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부담없이 적합한 인력을 알선받을 수 있음
- (구직자)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적합한 기간제 또는 시간제 일자리를 알선받을 수 있으며, 취업에 필요한 상담과 기초소양교육도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음

⚙️ 돌봄지원제도

○ 직장어린이집 지원(고용노동부)

1) 대상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주에 대하여 설치비·인건비·운영비를 지원

2) 지원내용

- 설치비: 대규모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교재교구비 등 내역에 따라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20억 원 까지 지원
- 운영비: 인건비 지원은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 1인당 월 60만 원(중소기업 월 138만 원), 중소기업 운영비 지원은 보육현원에 따라 월 200만 원~520만 원 지원
- 긴급돌봄을 수행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긴급돌봄 인건비(신규는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기준과 동일, 기존인력활용인 경우 긴급돌봄 시간당 1만 원 최대(22만 원))과 운영비(긴급돌봄 시간에 따라 최대 50만 원)를 지원함

○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고용노동부)

1) 가족돌봄휴가

-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함
- 연간 최장 10일 사용 가능하고, 일 단위로 사용하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됨
※ 감염병의 확산 등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최대 20일(한부모 근로자는 25일)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미허용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가족돌봄휴직

-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함
- 연간 최장 90일 사용 가능하고,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가족돌봄휴직 미허용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한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의 사유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음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며 단축기간은 1년 이내, 연장은 총 단축기간 3년(단, 학업은 1년)범위 내에서 1회 가능

○ 부모급여 및 수당지원(보건복지부)

근거법: 「아동수당법」

1) 대상

- (부모급여)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이 지원 대상
-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2) 지원내용

구분	내용
부모급여	(가정 양육 시)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어린이집 이용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 0세는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 바우처 54만 원)+부모급여 차액 현금 46만 원 지급 - 1세는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 바우처 47.5만 원)+현금 2.5만 원 지급 ※ '23년부터 시행
가정양육수당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 원, 농어촌아동 10~15.6만 원)
아동수당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아이돌봄서비스(성평등가족부)

근거법: 「아이돌봄지원법」

1) 대상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2) 지원내용

구분	내용
시간제 돌봄 서비스	대상연령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시간: 연 960시간 - (기본형)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및 학원의 등·하원, 안전·신변보호 처리, 준비물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 (*가사활동 제외), 이용요금은 시간당 12,180원 - (종합형) 시간제 돌봄 서비스 내용에 돌봄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 * 아동 관련 세탁물, 놀이공간 정리, 아동 식사 및 간식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이용요금은 시간당 15,830원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대상연령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정부지원시간: 월 80시간~200시간 이내 이용요금: 시간당 12,180원 - 영아 종일제 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가사활동 제외)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동행 가능(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보미, 이용자 간 사전협의 필요) - 정부지원 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이용요금은 시간당 14,610원
기관연계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의 만 0세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만 0세 이상-만 2세 이하: 아이돌보미 1인당 돌봄 아동 수 최대 3명, 기본 이용요금 평일 주간 시간당 18,600원, 야간 및 휴일 할증(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만 3세 이상-만 12세 이하: 아이돌보미 1인당 돌봄 아동 수 최대 5명, 기본 이용요금 평일 주간 시간당 18,600원, 야간 및 휴일 할증(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늘봄학교(교육부)

1) 대상

-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 및 발달을 위해 방과 후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

2) 지원내용

- 희망하는 초등학교 누구나 이용: 원하는 초등학교 모두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
* '24년은 초등 1학년, '25년은 1~2학년, '26년에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운영(예정)
- 초1~2학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저학년의 성장·발달에 맞는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매일 2시간 무료 제공
- 초3~6학년 대상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3~6학년에게 사교육과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미래역량 함양, 진로탐색 등 프로그램 제공

일·생활 균형을 위한 기업지원제도

근거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유연근무장려금 지원(고용노동부)

1) 대상

-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을 변경하여야 함. 이때 선택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작성, 취업규칙 등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지원대상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관리(재택·원격근무는 근로자 동의서도 인정)하여야 하며, 근태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구분	내용
시차출퇴근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선택근무제	1개월(신상품·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의 근무시간을 근로자가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방식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처리하거나, 외부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식

3) 내용

구분	내용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재택·원격근무제)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회수에 따라 15만 원에서 30만 원 지급, 연간 최대 260만 원 지원, 육아기 근로자는 연간 최대 720만 원 지원 (선택근무제)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인 경우 월단위 30만 원 지원, 연간 최대 360만 원 지원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유연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 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그 비용 일부를 지원 - 재택·원격·근무혁신 인프라: 근태관리 시스템과 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 지원(사업주 투자 비용의 50~80% 범위 내 최대 2천만 원 지원) -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 근로시간 단축 등) 인프라는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 지원(사업주 투자 비용의 70% 범위 내 최대 750만 원 지원)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상황 진단, 문제 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이행관리 및 정부지원사업 연계(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컨설팅 포함) - 20인 이상 사업장(기업 규모 및 참여 횟수 등에 따라 일정 비용 자부담)을 대상으로 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고용노동부)

1) 대상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여야 함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유형)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 장시간 동안 일하는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실근로시간(소정 근로+연장 근로)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함
- 지원 대상 근로자는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단축 시행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115만 원 미만인 근로자 등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

3) 내용

구분	내용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지원 (임금감소액보전금) -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 월 30만 원(정액)지원

가족친화인증제(성평등가족부)

근거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1) 인증 개요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탄력적 근무제도,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등

2) 인증 신청 대상: 신규 및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대상 기업

3) 인증 기준

구분	신규 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대기업 등	70점	70점	75점
중소기업	60점	60점	65점
총계	100점 만점		
법규준수사항	「근로기준법」제53조·제23조제2항·제70조부터 제75조까지·제76조의2·제76조의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제76조의3,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제67조의3		

구분	신규 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적용기준	(공통)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 획득		
	• 중소기업 총점 60점 이상 획득(가점 포함) • 대기업 등은 가족친화제도실행 배점에서 35점 이상 획득 및 총점 70점 이상 획득(가점포함)	• 중소기업 총점 60점 이상 획득(가점 포함) • 대기업 등은 가족친화제도실행 배점에서 35점 이상 획득 및 총점 70점 이상 획득(가점포함)	

주 1)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기업
2) 대기업 등 : 중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기관

• 예비인증

- 신청대상 : 중소기업
- 인증기준 : 40점만점에 24점 이상(가점포함)
- 유효기간 : 3년(연장 불가능, 단 신규인증 신청은 가능)

• 선도기업

- 신청대상 : 가족친화인증을 12년 이상 연속 유지한 대기업(중견기업 포함) 및 중소기업
- 최소기준 : 기준 점수* 이상으로 재인증 통과
* 당해 연도 재인증 점수(가점포함) 중소기업 75점 이상, 대기업 85점 이상
- 선정방법 : 총 인증기업의 5% 이내로 가족친화인증위원회에서 선정
* 우수사례, 남성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률, 업종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유효기간 : 3년(재인증 유효기간과 동일)

4) 가족친화인증 혜택

• 인센티브 제공

-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 및 물품구매 등 적격심사 시 가점, 출입국 심사 시 우대, 중소기업 방송광고 송출비 감면 및 제작비 지원, 가족친화인증기업 대상 금리 우대 상향,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감면, 세무조사 유예, 관세조사 유예 등

• 정부포상 및 홍보

- 가족친화 우수기업(관) 정부 포상
-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집 제작
-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안내

5) 인증 현황

- 2025년 12월 기준,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총 6,971개(대기업 865개, 중소기업 4,934개, 공공기관 1,172개)

6)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원

- 지원내용 : 컨설팅 및 직장교육 무료지원
- 사업내용
 - 가족친화 인증준비 컨설팅: 가족친화 인증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법적 요구사항과 지표점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컨설팅

- 가족친화 문화컨설팅: 기업에 맞는 제도 도입과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는 컨설팅
- 가족친화 직장교육: 가족친화 직장교육은 기업(관)의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및 기관 임직원 대상 교육

○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1) 개요

-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제단체, 노동단체 합동으로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을 선정, 혜택 제공

2) 대상

- 대상: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일·생활 균형이 우수한 사업장(「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운법」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은 제외)

3) 신청

-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①신청서(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②일·생활 균형 추진실적, ③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④평가지표별 증빙자료, ⑤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4) 사업절차

사전확인	• 결격사유 조회 및 확인 및 신청서류 검토
서면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현장실사 대상 사업장 선정
현장실사	• 현장실사단 구성 • 현장실사 진행
최종 선정	• '25년 183개소 선정

5) 유효기간 및 인센티브

- (유효기간) 3년
- (인센티브) 선정서(패) 수여 및 보도자료·사례집 등 홍보 지원
 - 감독면제, 국세·관세 조사유예, 금리 우대, 기술·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우대 등 혜택

다. 성희롱·성차별 근절과 노동권 보호 강화

근거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 노동위원회 시정제도(고용노동부)

-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 시행('22.5.19.)
- 1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집·채용, 임금, 교육·배치·승진 등 고용에 있어 성차별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등에도 시정을 신청 가능
- 차별시정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 차별시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노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교수, 변호사 등으로 위촉된 차별시정위원 3인으로 '차별시정위원회'가 구성됨. 차별시정위원회는 담당 조사관을 통해 서면조사, 출석조사,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신청내용에 대해 조사를 한 후에 근로자(신청인), 사용자(피신청인), 증인, 참고인 등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한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

○ 성차별 예방 및 지도·점검사업(고용노동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로 하여금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이외의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에 이르기까지 고용의 전 과정에서 성(性)을 이유로 한 각종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최저 500만 원에서 최고 3,000만 원) 또는 형사처벌에 이르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 이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을 통해 성차별 금지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각종 예방 및 지도·점검사업을 실시
- 2024년도에는 모성보호 관련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등에 대한 차별적 고용관행을 지도·점검한 결과 12,971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 등 조치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관련 지도·점검(고용노동부)

-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전체 직원(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포함)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③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④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의무, 피해자 보호 의무, 행위자 징계 등 조치 의무,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가 부여되며, 이 과정에 참여한 사람 등에게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부여됨

- 정부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자료와 표준 강의안 등을 제작·배포('24.1월~2월)하는 등 교육시행을 지원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사업장의 법 준수를 위해 여성 다수고용 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 시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2024년 2,229개소 점검 사업장 중 직장 내 성희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업장 2,225개소를 적발하여 시정 등 조치

○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고용노동부)

- 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정보와 고용보험 정보를 연계하여 임신·출산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적 의무, 각종 정부 지원제도 등을 문자 및 이메일을 통한 사전 안내서비스로 제공(임산부가 국민행복카드 신청 시 문자 및 이메일 수신에 동의한 경우)
- 가임기 여성근로자가 10인 이상, 임신 32주가 경과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는 매월 팩스 및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
- 2024년 임신 근로자 353,162명, 소속사업장 144,658개소에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를 안내

○ 국가성평등지수

근거법: 「양성평등기본법」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양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점검하기 위해 2010년부터 성평등 수준을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음
-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한 값으로, 남녀의 격차를 측정하는 지수(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이며, 완전 평등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점임
- 3개의 양성평등 목표를 중심으로 총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고용, 소득 영역 주요 지표로는 고용률, 노동시장 직종분리, 임금 격차 등이 있음

목표	동등한 권한	자원의 동등한 접근				평등한 관계	
영역	의사결정	고용	소득	교육	건강	돌봄	양성평등의식

2. 여성경제활동 관련 법령 제·개정

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 개요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8년 6월 5일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은 2021년 12월 7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
- 총 5장(제1장 총칙, 제2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제3장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시책, 제4장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등, 제5장 보칙), 2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 모든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으로 정책 체계를 전환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재직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한 경력 단절 예방 뿐 아니라 여성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 구축

○ 주요 내용

조항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
제5조	기본계획 수립	•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1.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 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 3의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	실태조사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제9조	여성경제활동백서	•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경력단절여성등의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5년 주요 제·개정 내용 및 이유

시점	제·개정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타법개정 2025.10.1. 시행	•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변경	「정부조직법」 일부개정(2025.10.1.)으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법령상의 부처 명칭을 현행화하고 행정 운영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함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2.2.	• ‘경력단절여성등’ 표현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	‘경력단절’이라는 용어에 내포된 부정적 의미를 재정립 하여 사회적 인식 전환을 도모하고, 여성의 돌봄노동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고자 함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 개요

- 1987년 12월 4일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 6월 22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수정하여 시행.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면서 여성 노동시장 정책의 일부 기능(적극적 고용개신조치) 등이 성평등가족부의 정책 영역으로 포함
- 총 6장(제1장 총칙, 제2장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등, 제3장 모성 보호, 제4장 분쟁의 예방과 해결,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39개의 조문, 부칙으로 구성
- 고용상 성차별 해소, 모성보호 지원 등 여성경제활동 관련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법으로, 2024년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남녀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보다 강화

○ 주요 내용

조항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제6조의2	기본계획 수립	•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1. 여성취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에 관한 사항 3.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의 정착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5.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 6.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7. 여성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9.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항		주요 내용
제2장 (제7조~제17조)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3장 (제18조~제22조)	모성 보호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지원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5년 주요 제·개정 내용 및 이유

시점	제·개정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타법 개정 2025.10.1. 시행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의 기획·평가·연구·명단공표 등 주요 기능을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여, 성평등 관점에서의 고용개선 정책 총괄, 관련 조사·연구 기능의 강화 등을 추진함(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7조의5, 17조의7, 제17조의9)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면서 여성 노동시장 정책의 일부 기능(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이 성평등가족부의 정책 영역으로 포함되었으며, 성평등가족부를 공동 소관부처로 명시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중소벤처기업부)

○ 개요

-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9년 2월 5일 제정되어 1999년 6월 1일 시행
- 총 21개 조항으로 구성

○ 주요 내용

조항		주요 내용
제5조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1. 여성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3.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 비율에 관한 사항 5. 그 외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	•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

조항		주요 내용
제8조	여성의 창업지원 특례	• 창업지원종합계획에 여성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하며, 여성창업자 및 여성창업 지원 실적이 우수한 창업지원 관련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음
제9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자만 해당)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함
제10조	자금지원 우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함
제15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할 수 있음
제20조의2	여성기업의 확인 등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여성기업 해당여부 확인을 신청하면, 해당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검토하여,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라.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요

-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2년 12월 18일 제정되어 2003년 6월 19일 시행
- 총 1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 주요 내용

조항		주요내용
제4조	기본계획	•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1.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적극적 조치에 관한 사항 4.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 및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
제10조	여성과학기술인 연구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외의 대학 또는 공공연구 기관, 기준충족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교육이나 훈련·연구 활동 경비 및 국제협력 사업 지원
제11조	적극적 조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 등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잠정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 재직목표 비율 및 직급별 승진목표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음

조항		주요내용
제13조	취업·재취업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취업하거나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제14조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의 설립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을 설립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훈련·연수 및 상담 등을 수행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5년 제·개정 주요 내용 및 이유

시점	제·개정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2025.5.27. 본조신설	•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3조의 3)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사례의 발굴·포상·확산을 통해 역량 발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설
2025.11.28. 시행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 「양성평등기본법」(성평등가족부)

○ 개요

-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2014년 5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 총 7장(제1장 총칙,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5장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54개의 조문, 부칙으로 구성

○ 여성경제활동 관련 주요 내용

조항		주요내용
제20조	적극적 조치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
제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 목표제를 비롯하여 정책결정과정·공직·정치·경제활동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
제24조	경제활동 참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모집·채용·임금·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조항		주요내용
제25조	모성·부성의 권리 보장	•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성권·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제26조	일·가정 양립지원	•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제28조	여성인재의 관리·육성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 관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제29조 ~ 31조	성차별 금지 및 성희롱 방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 노력 조항을 신설하고,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
제47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여성인력개발센터)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5년 제·개정 주요 내용 및 이유

시점	제·개정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타법개정 2025.10.1. 시행	•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변경	「정부조직법」 일부개정(2025.10.1.)으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법령상의 부처 명칭을 현행화하고 행정 운영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조문을 정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02장

여성의 고용



1. 경제활동 현황

2. 취업자 특성

3. 경력단절 여성 및 구직 현황

4.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여성 인력 및 국가전략기술분야 여성 인력 현황

02장 여성의 고용



1. 경제활동 현황

가. 취업자 변화

○ 2024년 여성 취업자는 12,652천 명으로 전년 대비 188천 명 증가, 여성 고용률은 54.7%

- 여성 취업자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 2014년과 비교하면 10년간 여성 취업자는 1,812천 명이 증가하였으며, 고용률은 5.0%p 증가

표 II-1 성별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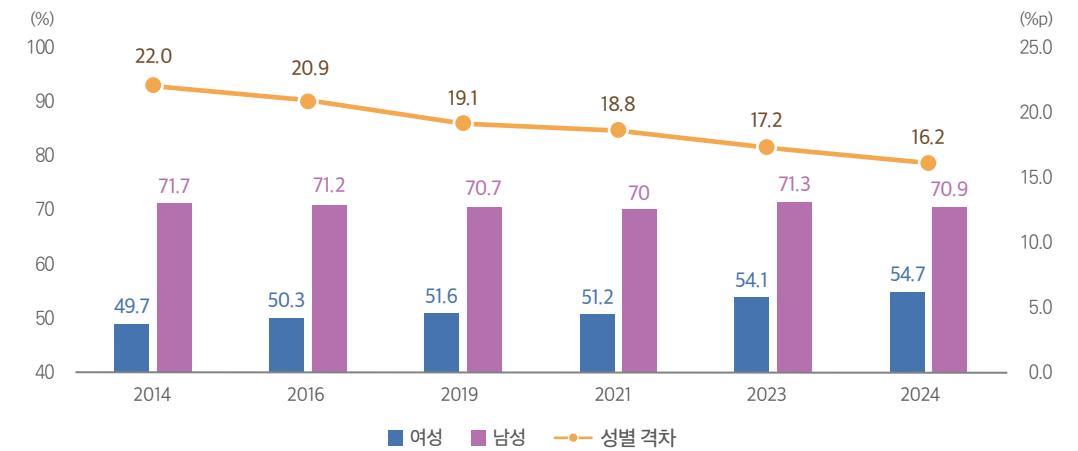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p)

연도	취업자			고용률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2014	25,897	10,840	15,057	60.5	49.7	71.7
2015	26,178	11,022	15,156	60.5	50.1	71.4
2016	26,409	11,168	15,241	60.6	50.3	71.2
2017	26,725	11,356	15,368	60.8	50.8	71.2
2018	26,822	11,450	15,372	60.7	50.9	70.8
2019	27,123	11,660	15,463	60.9	51.6	70.7
2020	26,904	11,523	15,381	60.1	50.7	69.8
2021	27,273	11,725	15,548	60.5	51.2	70.0
2022	28,089	12,161	15,928	62.1	52.9	71.5
2023	28,416	12,464	15,952	62.6	54.1	71.3
2024	28,576	12,652	15,924	62.7	54.7	70.9
증감	'23년 대비	159	188	-29	0.1	0.6
	'14년 대비	2,679	1,812	867	2.2	5.0

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 고용률의 성별 격차는 2014년 22.0%p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 16.2%p로 감소

그림 II-1 성별 고용률 및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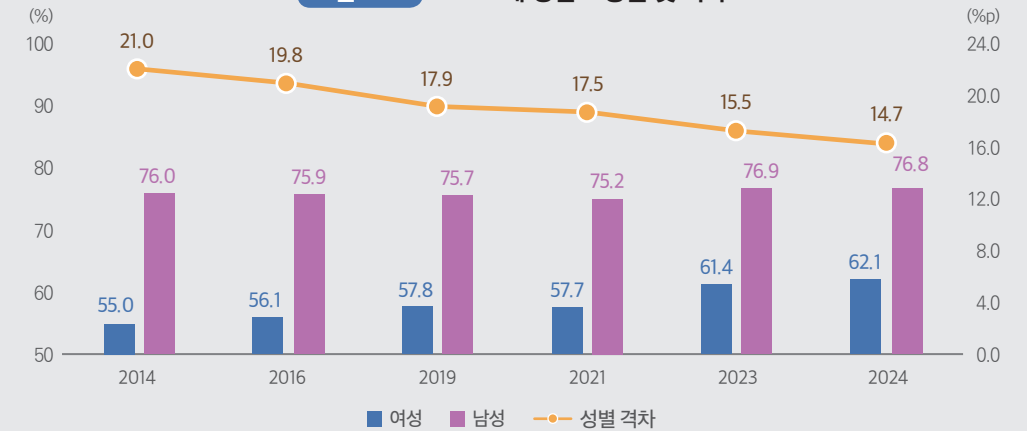


주: 1) 15세 이상
2) 고용률 =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 참고: 15~64세 고용률

- 15~64세 여성 고용률은 2024년 62.1%, 남성 고용률은 76.8%로 성별 격차는 14.7%p
- 15~64세 여성 고용률은 2014년 55.0%p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성별 격차는 지속적으로 완화

그림 II-2 15~64세 성별 고용률 및 격차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 30대 여성 고용률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M-curve 현상은 점차 완화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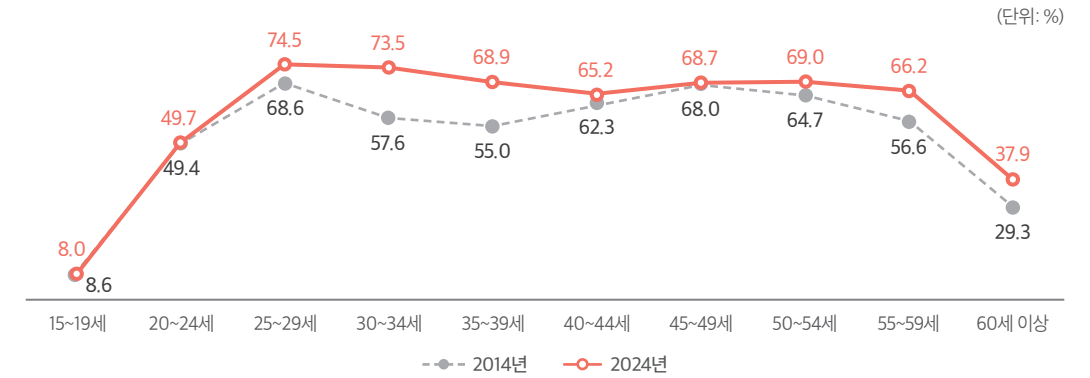
- 여성의 고용률은 2014년과 비교해 20세 이후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했으며, 특히 30~34세(15.9%p), 35~39세(13.9%p) 연령층에서 크게 상승
- 5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2014년과 비교해 고용률이 크게 상승(55~59세 9.6%p, 60세 이상 8.6%p)

표 II-2 성별·연령별 고용률

(단위: %, %p)

연도	소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이상
2014	60.5	7.7	44.8	69.0	74.2	73.9	78.1	80.1	77.2	70.8	39.0
2023	62.6	7.2	45.7	72.3	79.7	78.1	78.0	79.3	79.2	76.0	45.5
2024	62.7	6.4	45.1	72.5	80.4	79.7	78.4	79.8	79.0	75.8	45.9
증감	'23년 대비	0.1	-0.8	-0.6	0.2	0.7	1.6	0.4	0.5	-0.2	0.4
	'14년 대비	2.2	-1.3	0.3	3.5	6.2	5.8	0.3	-0.3	1.8	6.9
2014	49.7	8.6	49.4	68.6	57.6	55.0	62.3	68.0	64.7	56.6	29.3
2023	54.1	8.6	50.5	74.3	71.3	64.7	64.7	67.4	69.0	66.6	36.7
2024	54.7	8.0	49.7	74.5	73.5	68.9	65.2	68.7	69.0	66.2	37.9
증감	'23년 대비	0.6	-0.6	-0.8	0.2	2.2	4.2	0.5	1.3	0	-0.4
	'14년 대비	5.0	-0.6	0.3	5.9	15.9	13.9	2.9	4.3	9.6	8.6

그림 II-3 연령별 여성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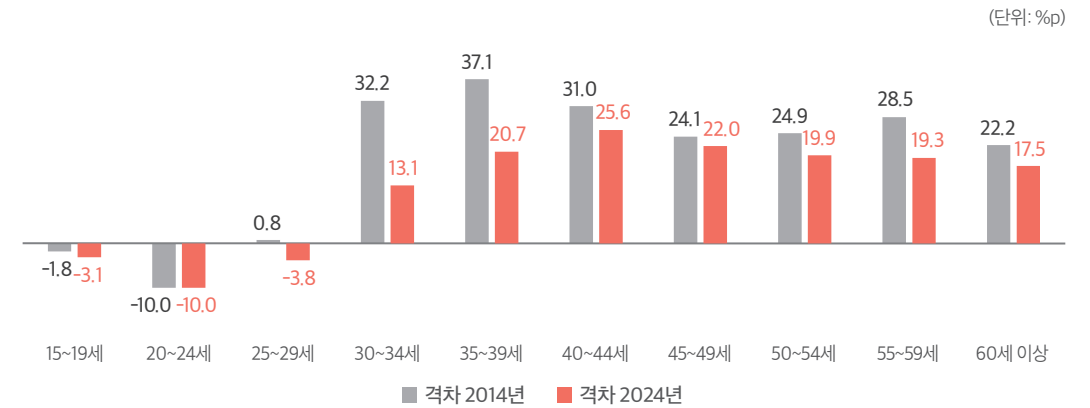


주: 고용률 =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1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 연령대별로 성별 고용률 격차는 2014년과 비교하여 크게 감소

- 특히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30~34세, 35~39세의 성별 고용률 격차가 크게 감소
- 2014년과 비교하여 30~34세 구간은 32.2%p에서 13.1%p로 감소, 35~39세 구간은 37.1%p에서 20.7%p로 감소

그림 II-4 연령별 남녀 고용률 격차



주: 고용률 =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1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 대졸 이상 여성 고용률은 69.1%로 2014년 대비 6.5%p 상승

- 고졸 이하 여성 고용률도 2014년 대비 1.5%p 증가하였으나 대졸 이상에 비해 낮은 상승폭
- 남성의 대졸 이상 고용률은 2014년 대비 -2.8%p 하락하였으나 여성은 6.5%p 증가

표 II-3 성별·교육정도별 고용률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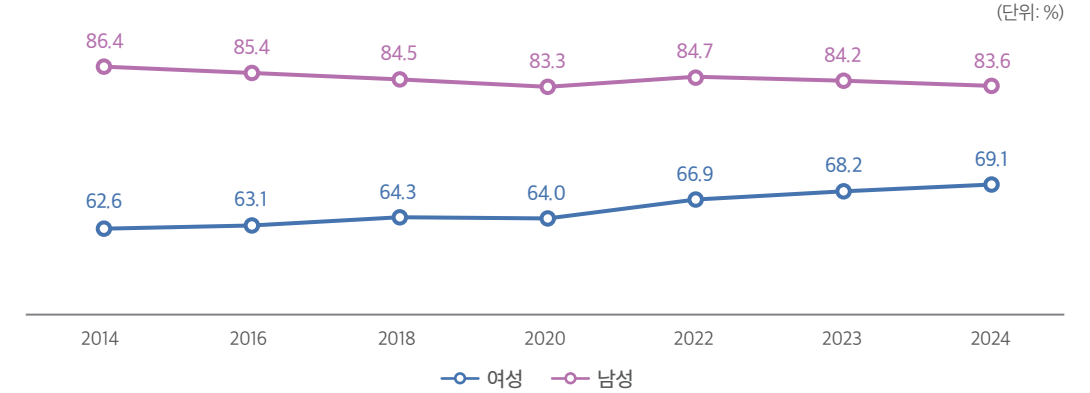
연도	전체			여성			남성		
	소계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소계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소계	고졸 이하	대졸 이상
2013	59.8	51.9	75.6	48.9	43.2	62.3	71.1	62.0	86.8
2014	60.5	52.6	75.5	49.7	43.9	62.6	71.7	62.7	86.4
2015	60.5	52.6	75.2	50.1	44.2	62.6	71.4	62.2	86.0
2016	60.6	52.4	75.1	50.3	44.1	63.1	71.2	62.0	85.4
2017	60.8	52.5	75.0	50.8	44.4	63.4	71.2	61.9	85.1
2018	60.7	52.0	75.0	50.9	43.8	64.3	70.8	61.4	84.5
2019	60.9	52.1	75.0	51.6	44.1	65.0	70.7	61.2	83.9
2020	60.1	51.1	74.3	50.7	43.2	64.0	69.8	60.1	83.3
2021	60.5	51.2	74.8	51.2	43.3	65.0	70.0	60.1	83.5
2022	62.1	52.5	76.3	52.9	44.6	66.9	71.5	61.5	84.7
2023	62.6	52.7	76.6	54.1	45.3	68.2	71.3	61.1	84.2
증감	2024	62.7	52.4	76.7	54.7	45.4	69.1	70.9	83.6
	'23년 대비	0.1	-0.3	0.1	0.7	0.1	0.9	-0.4	-0.6
	'14년 대비	2.2	-0.2	1.2	5.0	1.5	6.5	-0.8	-2.8

주: 1) 15세 이상

2) 고용률 =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1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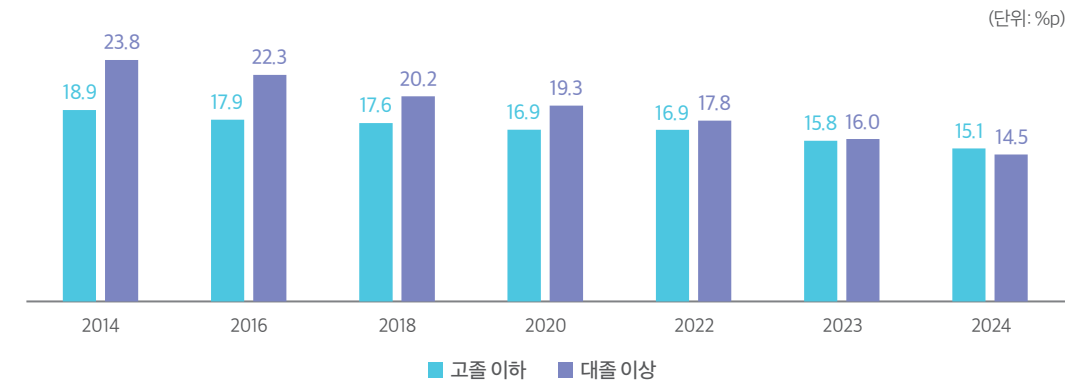
그림 II-5 고학력(대졸 이상) 남녀 고용률



주: 고용률 =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1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그림 II-6 교육정도별 남녀 고용률 격차



주: 남녀 고용률 격차=남성 고용률-여성 고용률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나. 실업자 변화

○ 2024년 여성 실업자는 371천 명, 실업률은 2.9%로 전년 대비 18천 명, 0.1%p 증가

- 여성 실업률은 2020년 4.0%로 가장 높았고, 이후 2023년 2.8% 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4년 0.1%p 증가하여 2.9% 수준
- 남성 실업률은 2024년 2.8%로 여성에 비해 0.1%p 낮지만 전년 대비 0.2%p 상승

표 II-4 성별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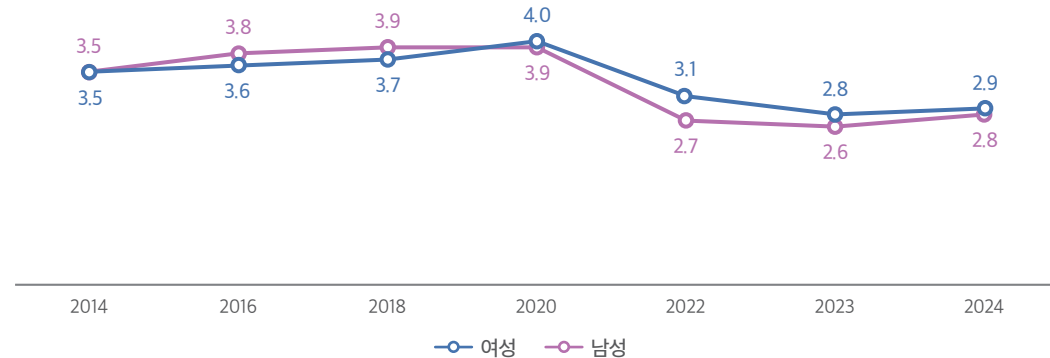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p)

연도	실업자			실업률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2014	939	389	550	3.5	3.5	3.5
2015	976	404	572	3.6	3.5	3.6
2016	1,009	415	594	3.7	3.6	3.8
2017	1,023	416	607	3.7	3.5	3.8
2018	1,073	443	630	3.8	3.7	3.9
2019	1,063	437	627	3.8	3.6	3.9
2020	1,108	484	624	4.0	4.0	3.9
2021	1,037	461	576	3.7	3.8	3.6
2022	833	385	447	2.9	3.1	2.7
2023	787	353	434	2.7	2.8	2.6
2024	823	371	452	2.8	2.9	2.8
증감	'23년 대비	36	18	0.1	0.1	0.2
	'14년 대비	-116	-18	-0.7	-0.6	-0.7

주: 1) 15세 이상
2)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1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II-7 성별 실업률 추이

(단위: %)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4년 25~29세 여성 실업자는 64천 명으로 전년 대비 2천 명 감소

- 2024년 여성 실업자는 60세 이상(90천 명) > 25~29세(64천 명) > 20~24세(48천 명) 순으로 높음
- 2014년 대비 여성 실업자는 60세 이상(66천명 증가)과 55~59세(1천 명 증가)에서 67천 명 증가, 반면에, 20~24세는 동기간 34천 명 감소
- 여성 실업률은 2024년 20~24세가 6.8%로 가장 높고 15~19세 5.6%, 25~29세 5.0%, 순으로 높으며, 2014년 대비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

표 II-5 성별·연령별 실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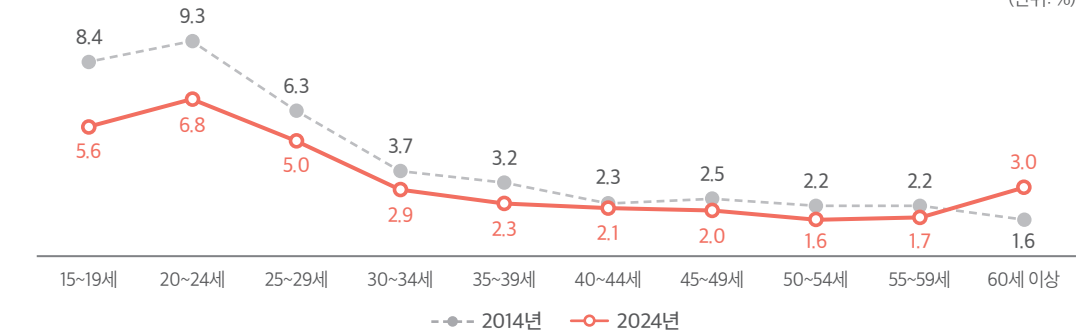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연도		소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전체	2014	939	25	151	201	107	80	78	80	70	66	81	
	2023	787	9	74	159	82	61	59	62	57	59	164	
	2024	823	11	75	148	91	58	62	59	54	67	197	
	증감	'23년 대비	36	2	1	-11	9	-3	3	-3	-3	8	33
		'14년 대비	-116	-14	-76	-53	-16	-22	-16	-21	-16	1	116
여성	2014	389	12	82	71	43	34	32	37	31	23	24	
	2023	353	5	41	66	34	29	27	25	29	26	71	
	2024	371	5	48	64	37	25	28	27	24	24	90	
	증감	'23년 대비	18	0	7	-2	3	-4	1	2	-5	-2	19
		'14년 대비	-18	-7	-34	-7	-6	-9	-4	-10	-7	1	66
남성	2014	550	13	69	131	63	46	46	44	39	42	57	
	2023	434	5	33	93	48	32	32	37	28	33	93	
	2024	452	6	27	84	54	33	35	33	30	43	107	
	증감	'23년 대비	18	1	-6	-9	6	1	3	-4	2	10	14
		'14년 대비	-98	-7	-42	-47	-9	-13	-11	-11	-9	1	50

주: 15세 이상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II-8 연령별 여성 실업률

(단위: %)



주: 1) 15세 이상
2)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1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다. 비경제활동인구 변화

○ 2024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유는 가사로 57.4%, 전년 대비 32천명 증가

-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는 2023년 대비 140천명 감소한 10,088천 명으로 가사(32천명)와 쉬었음(7천명)으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2023년 대비 108천명 증가한 6,084천 명으로 쉬었음(109천명)과 연로(67천명)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

표 II-6 성별·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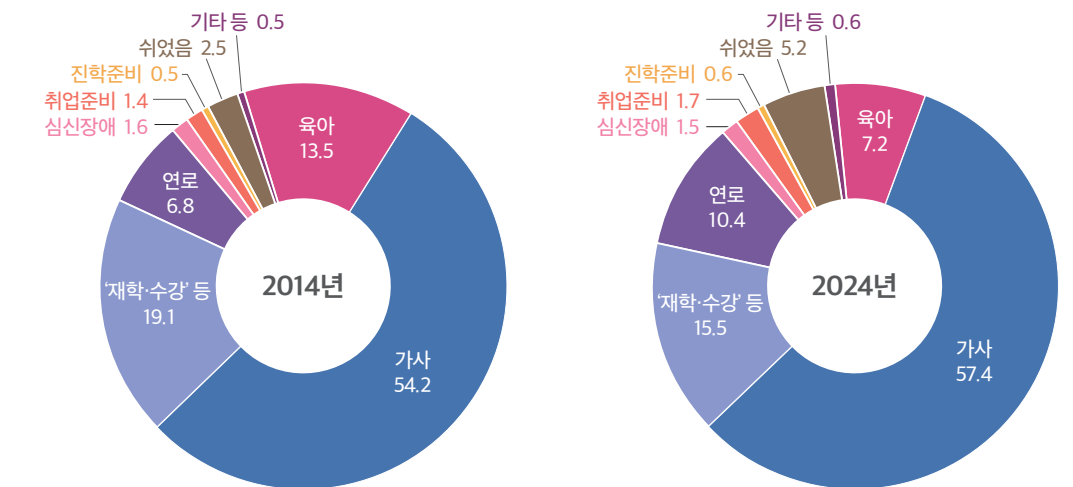
성별	활동상태별	2014	2016	2021	2023	2024	증감	
							'23년 대비	'14년 대비
전체	계	15,959	16,187	16,770	16,204	16,172	-32	213
	육아	1,439	1,363	1,120	856	743	-113	-696
	가사	5,861	5,866	6,018	5,963	6,008	45	147
	'재학·수강' 등	4,222	4,032	3,452	3,328	3,274	-54	-948
	연로	1,903	2,122	2,388	2,477	2,524	47	621
	심신장애	424	447	448	474	469	-5	45
	취업준비	369	398	608	488	438	-50	69
	진학준비	117	154	97	100	101	1	-16
	군입대대기	67	67	57	42	39	-3	-28
	쉬었음	1,455	1,628	2,398	2,351	2,467	116	1,012
	기타 등	102	112	186	126	109	-17	7
여성	계	10,578	10,622	10,696	10,228	10,088	-140	-490
	육아	1,433	1,355	1,107	840	729	-111	-704
	가사	5,737	5,712	5,836	5,761	5,793	32	56
	'재학·수강' 등	2,017	1,920	1,668	1,589	1,560	-29	-457
	연로	720	869	1,036	1,067	1,048	-19	328
	심신장애	165	171	150	150	148	-2	-17
	취업준비	144	165	259	195	175	-20	31
	진학준비	48	68	39	53	58	5	10
	군입대대기	1	-	-	-	-	-	-
	쉬었음	264	310	516	514	521	7	257
	기타 등	50	50	85	60	56	-4	6

성별	활동상태별	2014	2016	2021	2023	2024	증감	
							'23년 대비	'14년 대비
남성	계	5,382	5,565	6,074	5,976	6,084	108	702
	육아	6	8	13	16	14	-2	8
	가사	124	153	181	203	215	12	91
	'재학·수강' 등	2,206	2,112	1,784	1,739	1,714	-25	-492
	연로	1,183	1,252	1,352	1,410	1,477	67	294
	심신장애	259	276	297	324	320	-4	61
	취업준비	225	233	349	293	263	-30	38
	진학준비	70	86	58	47	43	-4	-27
	군입대대기	67	67	57	42	39	-3	-28
	쉬었음	1,191	1,318	1,882	1,837	1,946	109	755
	기타 등	52	62	101	66	53	-13	1

주: 1) 15세 이상
2)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3) 쉬었음: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조기퇴직·명퇴 등으로 인해 쉬고 있는 사람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II-9 활동상태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



주: 1) 15세 이상
2)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3) 쉬었음: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조기퇴직·명퇴 등으로 인해 쉬고 있는 사람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를 연령별로 보면 30대 비경제활동인구가 전년 대비 107천명 감소

-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20대~40대까지 2023년 대비 감소, 반면에 50대 이상에서는 전년 대비 증가
-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2014년과 비교하면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
- 특히 30대 여성 비경제활동인구가 2014년 대비 727천 명으로 가장 크게 감소

표 II-7 성별·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천 명)

성별	연령별	2014	2016	2021	2023	2024	증감	
							'23년 대비	'14년 대비
전체	계	15,959	16,187	16,770	16,204	16,172	-32	213
	15~19세	2,926	2,795	2,124	2,086	2,077	-9	-849
	20~29세	2,290	2,234	2,443	2,163	2,085	-78	-205
	30~39세	1,847	1,741	1,551	1,287	1,206	-81	-641
	40~49세	1,667	1,640	1,701	1,582	1,514	-68	-153
	50~59세	1,927	1,980	1,958	1,800	1,829	29	-98
	60세 이상	5,303	5,797	6,994	7,287	7,461	174	2,158
여성	계	10,578	10,622	10,696	10,228	10,088	-140	-490
	15~19세	1,415	1,351	1,029	1,008	1,008	0	-407
	20~29세	1,146	1,107	1,171	1,019	976	-43	-170
	30~39세	1,591	1,475	1,212	971	864	-107	-727
	40~49세	1,435	1,389	1,377	1,277	1,213	-64	-222
	50~59세	1,509	1,531	1,449	1,322	1,348	26	-161
	60세 이상	3,483	3,770	4,459	4,632	4,680	48	1,197
남성	계	5,382	5,565	6,074	5,976	6,084	108	702
	15~19세	1,511	1,445	1,095	1,078	1,070	-8	-441
	20~29세	1,144	1,127	1,272	1,144	1,109	-35	-35
	30~39세	257	266	339	316	342	26	85
	40~49세	232	251	324	305	301	-4	69
	50~59세	418	449	509	478	481	3	63
	60세 이상	1,820	2,027	2,535	2,655	2,781	126	961

주: 15세 이상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2. 취업자 특성

가. 산업별·직업별·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 2024년 산업별 여성 취업자 비중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9.0%(2,405천명), ‘도매 및 소매업’ 12.2%(1,548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 11.2%(1,442천명), ‘교육 서비스업’ 10.1%(1,278천명)의 순

- 전년 대비 ‘도매 및 소매업’에서 36천명, ‘제조업’에서 44천명 감소하였으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 76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57천명 증가
- 2014년 대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2.6%에서 19.0%로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반면에 ‘도매 및 소매업’은 16%에서 12.2%, ‘제조업’은 12.1%에서 9.9%로 감소

표 II-8 성별·산업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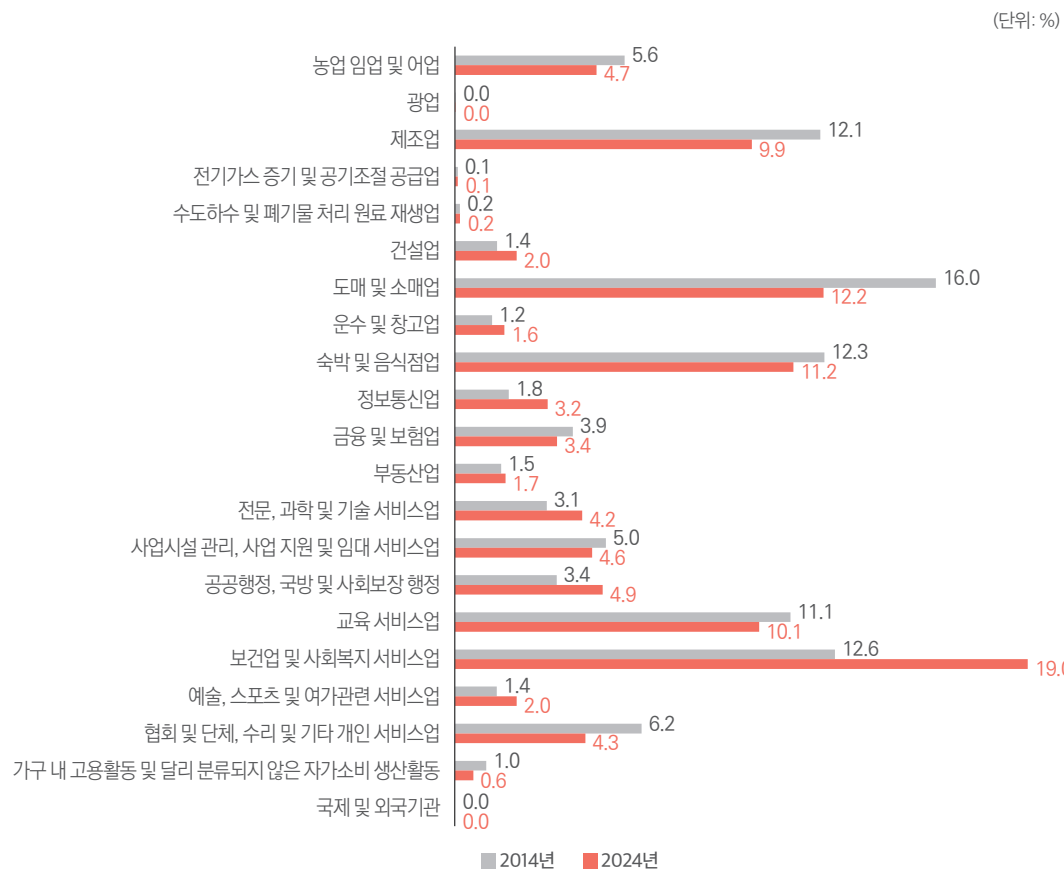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산업	여성					남성				
	2014	2023	2024	증감		2014	2023	2024	증감	
				'23년 대비	'14년 대비				'23년 대비	'14년 대비
전체	10,840	12,464	12,652	188	1,812	15,057	15,952	15,924	-28	867
농업 임업 및 어업	611	592	595	3	-16	835	921	890	-31	55
광업	2	1	2	1	0	11	6	6	0	-5
제조업	1,315	1,291	1,247	-44	-68	3,144	3,170	3,208	38	64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1	17	14	-3	3	58	72	77	5	19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8	23	24	1	6	87	123	118	-5	31
건설업	152	257	259	2	107	1,677	1,856	1,806	-50	129
도매 및 소매업	1,731	1,584	1,548	-36	-183	2,103	1,692	1,667	-25	-436
운수 및 창고업	134	187	208	21	74	1,295	1,458	1,493	35	198
숙박 및 음식점업	1,330	1,384	1,422	38	92	788	913	900	-13	112
정보통신업	194	349	389	40	195	524	688	720	32	196
금융 및 보험업	424	434	429	-5	5	405	348	338	-10	-67
부동산업	166	216	213	-3	47	288	318	307	-11	1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31	504	534	30	203	703	854	888	34	18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43	595	576	-19	33	701	836	803	-33	10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66	544	620	76	254	627	695	687	-8	60

산업	여성					남성				
	2014	2023	2024	증감		2014	2023	2024	증감	
				'23년 대비	'14년 대비				'23년 대비	'14년 대비
교육 서비스업	1,207	1,266	1,278	12	71	622	630	622	-8	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67	2,348	2,405	57	1,038	342	510	536	26	19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1	255	259	4	108	247	257	263	6	1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2	539	548	9	-124	585	591	582	-9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13	76	78	2	-35	3	1	2	1	-1
국제 및 외국기관	4	4	3	-1	-1	10	14	12	-2	2

주: 1) 15세 이상
2) 제10차 표준산업분류로 2013년부터 시계열이 제공됨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II-10 산업별 여성 취업자 비중



주: 1) 15세 이상
2) 기타는 광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3) 제10차표준산업분류로 2013년부터 시계열이 제공됨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4년 여성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4.3%(3,069천명), ‘사무종사자’ 20.9%(2,649천명), ‘서비스 종사자’ 18.8%(2,373천명), ‘단순노무 종사자’ 15.9%(2,017천명)의 순

- 전년 대비 ‘서비스 종사자’(95천명), ‘단순노무 종사자’(95천명), ‘사무 종사자’(74천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59천명)에서 취업자가 증가하였고, ‘판매 종사자’(72천명),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39천명),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23천명)에서 취업자 감소
- 2014년과 비교하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687천명), ‘사무 종사자’(589천명), ‘서비스 종사자’(574천명)가 크게 증가하고, ‘판매 종사자’(257천명),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95천명)는 감소

표 II-9 성별·직업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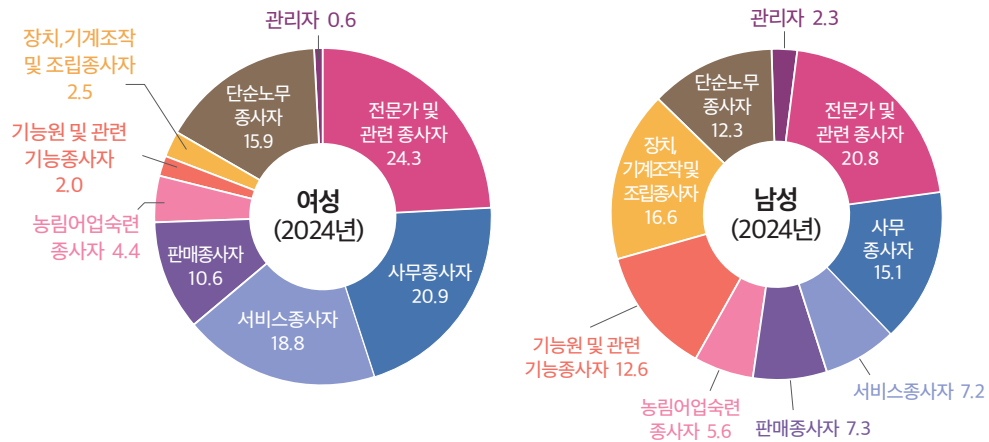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산업	여성					남성				
	2014	2023	2024	증감		2014	2023	2024	증감	
				'23년 대비	'14년 대비				'23년 대비	'14년 대비
전체	10,840	12,464	12,652	188	1,812	15,057	15,952	15,924	-28	867
관리자	45	78	77	-1	32	359	398	363	-35	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382	3,010	3,069	59	687	2,744	3,158	3,319	161	575
사무 종사자	2,060	2,575	2,649	74	589	2,317	2,390	2,403	13	86
서비스 종사자	1,799	2,278	2,373	95	574	979	1,187	1,153	-34	174
판매 종사자	1,600	1,415	1,343	-72	-257	1,554	1,206	1,169	-37	-38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542	557	557	0	15	815	924	893	-31	78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293	273	250	-23	-43	1,997	2,038	2,012	-26	15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413	357	318	-39	-95	2,691	2,647	2,650	3	-41
단순노무 종사자	1,705	1,922	2,017	95	312	1,601	2,005	1,961	-44	360

주: 1) 15세 이상
2) 제7차 표준직업분류로 2013년부터 시계열 자료가 제공됨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II-11 성별 취업자 직업분포

(단위: %)



주: 15세 이상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4년 여성 임금근로자는 10,172천명으로 전년 대비 196천명 증가하였으며 상용근로자 (116천명)와 임시근로자(122천명)는 증가, 일용근로자는 42천명 감소

- 비임금근로자는 2024년 2,480천명으로 전년 대비 8천명 감소하였으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5천명)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7천명)가 증가하였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29천명 감소
- 2014년과 비교해보면, 상용근로자는 42%에서 55.1%로 13.1%p 증가하였으며, 그 외에는 비중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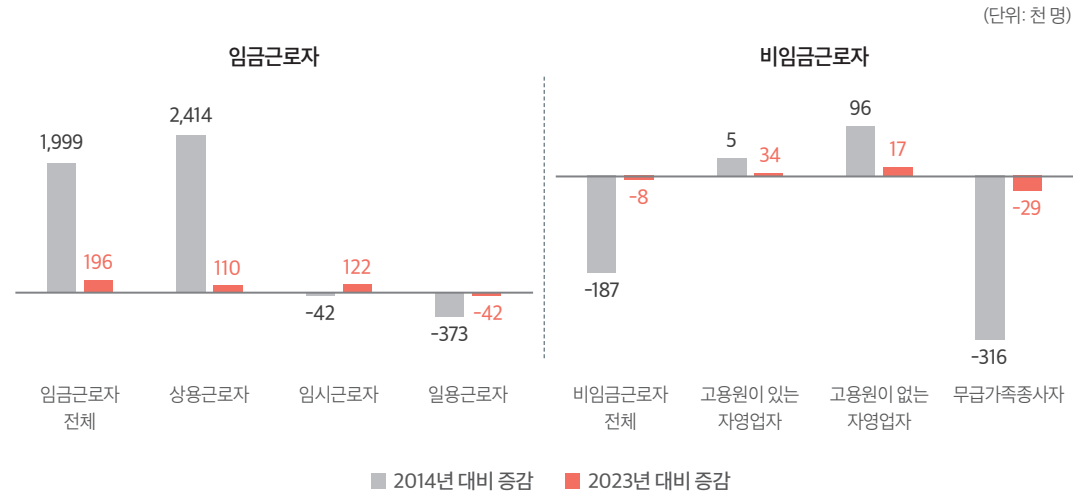
표 II-10 성별·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단위: 천 명)

연도		전체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소계	상용	임시	일용	소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여성	2014	10,840	8,173	4,555	2,967	651	2,667	365	1,238	1,064	
	2015	11,022	8,420	4,747	3,037	636	2,602	384	1,214	1,004	
	2016	11,168	8,622	4,980	3,073	570	2,546	385	1,186	975	
	2017	11,356	8,763	5,196	3,003	565	2,594	412	1,225	957	
	2018	11,450	8,858	5,425	2,916	517	2,592	424	1,207	961	
	2019	11,660	9,085	5,680	2,901	504	2,575	405	1,236	935	
	2020	11,523	9,028	5,855	2,730	443	2,495	364	1,247	884	
	2021	11,725	9,312	6,092	2,856	363	2,413	342	1,222	850	
	2022	12,161	9,694	6,523	2,848	323	2,467	387	1,272	807	
	2023	12,464	9,976	6,853	2,803	320	2,488	394	1,317	777	
	2024	12,652	10,172	6,969	2,925	278	2,480	399	1,334	748	
	증감	'23년 대비	188	196	116	122	-42	-8	5	17	-29
		'14년 대비	1,812	1,999	2,414	-42	-373	-187	34	96	-316
남성	2014	15,057	10,785	7,765	2,102	919	4,272	1,216	2,901	156	
	2015	15,156	10,982	7,969	2,077	936	4,174	1,225	2,799	150	
	2016	15,241	11,047	8,082	2,052	914	4,194	1,199	2,844	151	
	2017	15,368	11,171	8,232	1,989	950	4,197	1,196	2,849	152	
	2018	15,372	11,226	8,347	1,936	943	4,146	1,227	2,780	139	
	2019	15,463	11,355	8,536	1,894	925	4,108	1,132	2,833	143	
	2020	15,381	11,304	8,667	1,753	884	4,077	1,009	2,911	157	
	2021	15,548	11,441	8,795	1,778	868	4,107	965	2,984	157	
	2022	15,928	11,808	9,170	1,829	809	4,121	978	2,994	148	
	2023	15,952	11,852	9,317	1,814	721	4,100	1,026	2,952	122	
	2024	15,924	11,871	9,384	1,846	642	4,052	1,033	2,892	128	
	증감	'23년 대비	-28	19	67	32	-79	-48	7	-60	6
		'14년 대비	867	1,086	1,619	-256	-277	-220	-183	28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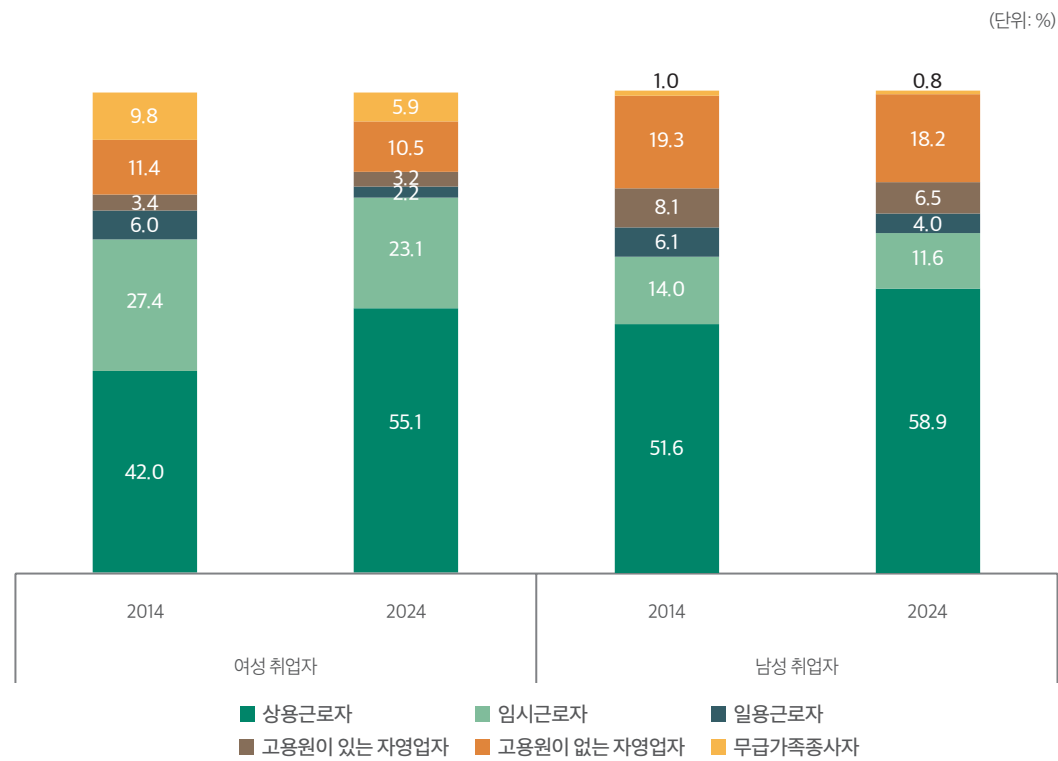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II-12 2024년 종사상 지위별 여성 취업자 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II-13 성별 취업자 종사상 지위 변화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나.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 2024년 여성취업자의 35.6%는 1~4인 규모 사업장에 종사

- 2024년 여성취업자를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1~4인 규모가 35.6%(4,501천명), 10~29인 규모 18.7%(2,362천명), 30~99인 15.6%(1,969천명), 5~9인 14.9%(1,880천명)의 순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여성취업자는 1,125천명으로 전체 여성취업자의 8.9%를 차지

표 II-11 성별·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단위: 천 명)

시점	소계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전체	2014	25,897	10,059	3,709	4,313	3,687	1,823
	2023	28,416	9,962	4,027	5,052	4,147	2,142
	2024	28,576	9,998	3,950	5,037	4,269	2,177
	'23년 대비	160	36	-77	-15	122	35
	'14년 대비	2,679	-61	241	724	582	354
여성	2014	10,840	4,550	1,641	1,825	1,591	597
	2023	12,464	4,416	1,895	2,322	1,918	836
	2024	12,652	4,501	1,880	2,362	1,969	816
	'23년 대비	188	85	-15	40	51	-20
	'14년 대비	1,812	-49	239	537	378	219
남성	2014	15,057	5,510	2,068	2,488	2,096	1,226
	2023	15,952	5,546	2,132	2,730	2,230	1,306
	2024	15,924	5,497	2,070	2,675	2,300	1,361
	'23년 대비	-28	-49	-62	-55	70	55
	'14년 대비	867	-13	2	187	204	135

주: 15세 이상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2024년 직업별 여성취업자를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전년 대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는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서 종사자수가 증가한 반면 ‘판매 종사자’는 모든 규모 사업장에서 종사자수가 감소

- 2014년과 비교해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가 모든 사업장에서 취업자 수 증가한 반면,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모든 규모 사업장에서 취업자 수 감소

표 II-12 직업별·종사자 규모별 여성 취업자

(단위: 천 명, %, %p)

직업	2014			2023			2024			증감					
										'23년 대비			'14년 대비		
	1~4인	5~299인	300인 이상	1~4인	5~299인	300인 이상	1~4인	5~299인	300인 이상	1~4인	5~299인	300인 이상	1~4인	5~299인	300인 이상
전체	4,550 (100.0)	5,653 (100.0)	637 (100.0)	4,416 (100.0)	6,971 (100.0)	1,078 (100.0)	4,501 (100.0)	7,026 (100.0)	1,125 (100.0)	85	55	47	-49	1,373	488
관리자	3 (0.1)	41 (0.7)	1 (0.2)	1 (0.0)	67 (1.0)	10 (0.9)	2 (0.0)	65 (0.9)	10 (0.9)	1 (0.0)	-2 (-0.1)	0 (0.0)	-1 (0.0)	24 (0.2)	9 (0.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696 (15.3)	1,473 (26.1)	214 (33.6)	686 (15.5)	1,909 (27.4)	414 (38.4)	702 (15.6)	1,937 (27.6)	430 (38.2)	16 (0.1)	28 (0.2)	16 (-0.2)	6 (0.3)	464 (1.5)	216 (4.6)
사무 종사자	349 (7.7)	1,431 (25.3)	278 (43.6)	395 (8.9)	1,733 (24.9)	447 (41.4)	425 (9.5)	1,744 (24.8)	480 (42.6)	30 (0.6)	11 (-0.1)	33 (1.2)	76 (1.8)	313 (-0.5)	202 (-1.0)
서비스 종사자	1,016 (22.3)	757 (13.4)	26 (4.1)	1,126 (25.5)	1,104 (15.8)	49 (4.5)	1,174 (26.1)	1,143 (16.3)	55 (4.9)	48 (0.6)	39 (0.5)	6 (0.4)	158 (3.8)	386 (2.9)	29 (0.8)
판매 종사자	1,019 (22.4)	562 (9.9)	19 (3.0)	852 (19.3)	526 (7.5)	37 (3.5)	804 (17.9)	504 (7.2)	35 (3.1)	-48 (-1.4)	-22 (-0.3)	-2 (-0.4)	-215 (-4.5)	-58 (-2.8)	16 (0.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526 (11.6)	16 (0.3)	0 (0.0)	544 (12.3)	12 (0.2)	1 (0.1)	542 (12.0)	15 (0.2)	0 (0.0)	-2 (-0.3)	3 (0.0)	-1 (-0.1)	16 (0.5)	-1 (-0.1)	0 (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48 (3.3)	141 (2.5)	4 (0.6)	122 (2.8)	149 (2.1)	2 (0.2)	130 (2.9)	118 (1.7)	2 (0.1)	8 (0.1)	-31 (-0.4)	0 (-0.1)	-18 (-0.4)	-23 (-0.8)	-2 (-0.5)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51 (1.1)	302 (5.3)	61 (9.6)	47 (1.1)	260 (3.7)	50 (4.6)	50 (1.1)	230 (3.3)	38 (3.4)	3 (0.0)	-30 (-0.4)	-12 (-1.2)	-1 (0.0)	-72 (-2.1)	-23 (-6.2)
단순노무 종사자	741 (16.3)	930 (16.5)	34 (5.3)	642 (14.5)	1,212 (17.4)	69 (6.4)	671 (14.9)	1,270 (18.1)	76 (6.7)	29 (0.4)	58 (0.7)	7 (0.3)	-70 (-1.4)	340 (1.6)	42 (1.4)

주: 1) 15세 이상

2) 제7차 표준직업분류로 2013년부터 시계열이 제공됨

3) 관리자: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

자료: 국가데이터저,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3. 경력단절 여성 및 구직 현황

가. 경력단절 여성

○ 2024년 경력단절 여성 규모는 1,215천 명으로 전년 대비 9.9%(134천 명) 감소

- 경력단절 여성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대비 2024년에는 858천명 감소
- 특히 30~39세 여성의 경력단절 규모는 2015년 대비 622천명 감소하여 가장 큰 폭으로 감소
- 경력단절의 사유는 2015년에 결혼이 37%로 가장 높았으나 2024년에는 육아가 41.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경력단절 여성의 연령별 분포는 2015년에는 30~39세가 52.6%로 가장 높았으나 2024년에는 40~49세가 4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표 II-13 사유별·연령대별 경력단절 여성 규모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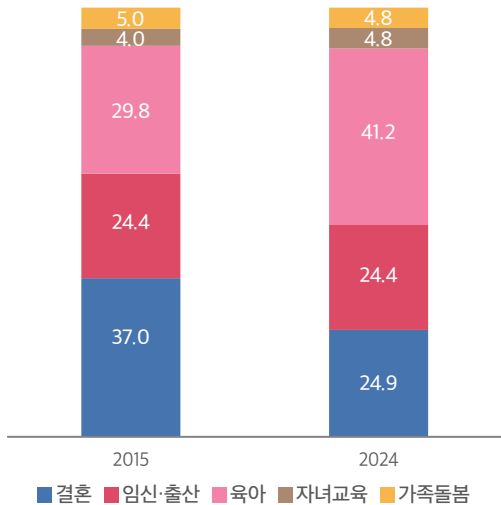
사유별	연령대별	2015	2017	2019	2021	2023	2024	증감	
								'23년 대비	'15년 대비
전체	계	2,073	1,831	1,699	1,448	1,349	1,215	-134	-858
	15~29세	177	144	118	75	64	52	-12	-125
	30~39세	1,091	933	806	655	544	469	-75	-622
	40~49세	630	606	634	579	590	544	-46	-86
	50~54세	176	148	142	138	150	151	1	-25
결혼	계	767	633	522	396	353	303	-50	-464
	15~29세	68	52	40	24	19	15	-4	-53
	30~39세	346	283	223	158	127	105	-22	-241
	40~49세	268	230	201	164	154	135	-19	-133
	50~54세	84	68	59	50	54	49	-5	-35
임신·출산	계	505	454	384	320	310	297	-13	-208
	15~29세	59	55	37	24	23	19	-4	-40
	30~39세	314	275	217	166	149	138	-11	-176
	40~49세	114	109	116	111	120	119	-1	5
	50~54세	18	15	15	20	18	21	3	3

사유별	연령대별	2015	2017	2019	2021	2023	2024	증감	
								'23년 대비	'15년 대비
육아	계	618	586	649	626	567	500	-67	-118
	15~29세	48	36	40	26	21	18	-3	-30
	30~39세	387	340	339	312	247	207	-40	-180
	40~49세	158	182	238	248	253	227	-26	69
	50~54세	24	27	32	41	46	47	1	23
자녀교육	계	82	77	69	55	60	58	-2	-24
	15~29세	0	0	0	1	0	0	0	0
	30~39세	30	26	19	14	16	13	-3	-17
	40~49세	43	44	43	34	34	36	2	-7
	50~54세	8	7	7	7	10	9	-1	1
가족돌봄	계	103	82	75	50	58	58	0	-45
	15~29세	1	1	2	0	1	1	0	0
	30~39세	13	9	9	5	6	6	0	-7
	40~49세	46	41	37	24	29	27	-2	-19
	50~54세	42	31	28	21	23	25	2	-17

주: 2014년부터 경력단절여성 범위에 '가족돌봄' 사유가 추가되었음
자료: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

그림 II-14 사유별 경력단절 여성 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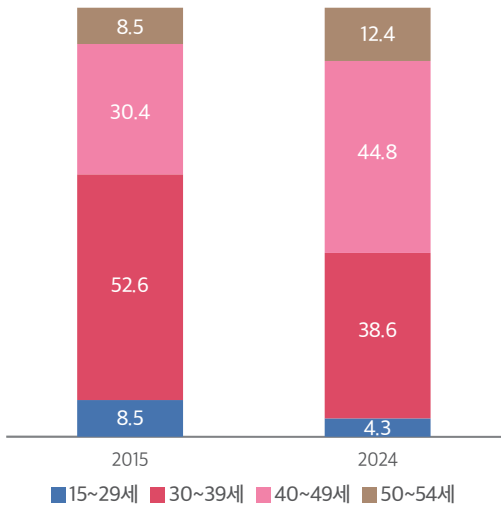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

그림 II-15 연령별 경력단절 여성 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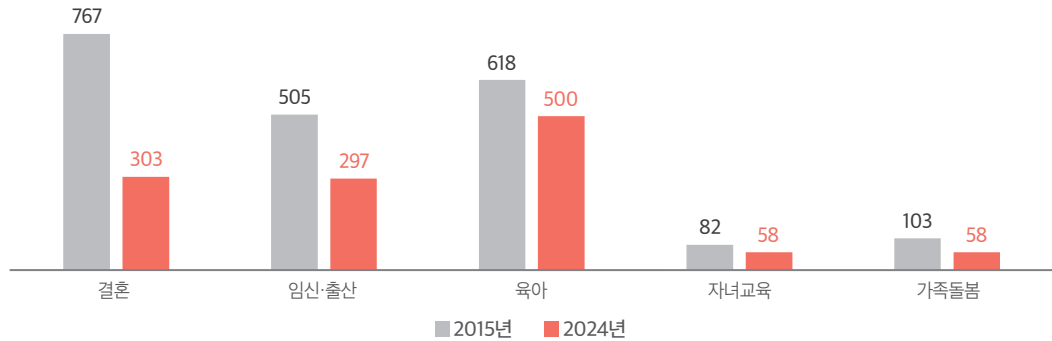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

그림 II-16 사유별 경력단절 여성 규모

(단위: 천 명)



자료: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

나. 지역별 경력단절여성 현황

○ 경력단절 여성의 규모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369천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71천 명, 경남과 인천 81천 명의 순

- 경력단절 여성은 2023년 대비 인천은 3천 명 증가하였으며, 그 외의 모든 지역에서 감소
- 2014년 대비 모든 지역의 경력단절 여성 규모는 감소

표 II-14 지역별 경력단절 여성 규모 추이

(단위: 천 명)

지역별	2014	2018	2022	2023	2024	증감	
						'23년 대비	'14년 대비
전국	2,164	1,847	1,397	1,349	1,215	-134	-949
서울특별시	358	324	220	180	171	-9	-187
부산광역시	117	114	80	84	71	-13	-46
대구광역시	113	90	69	69	66	-3	-47
인천광역시	122	101	81	78	81	3	-41
광주광역시	68	55	45	35	33	-2	-35
대전광역시	81	54	47	40	36	-4	-45
울산광역시	87	55	38	41	34	-7	-53
세종특별자치시	-	16	18	16	15	-1	-
경기도	627	544	424	446	369	-77	-258
강원도	55	47	33	32	31	-1	-24
충청북도	67	57	45	48	43	-5	-24
충청남도	106	75	68	61	60	-1	-46
전라북도	62	48	32	27	25	-2	-37
전라남도	63	54	35	31	30	-1	-33
경상북도	101	84	59	62	60	-2	-41
경상남도	123	118	95	86	81	-5	-42
제주특별자치도	16	13	11	12	10	-2	-6

다. 고용보험 가입 현황

○ 2024년 여성 고용보험 가입자는 6,848천 명으로 전년 대비 129천 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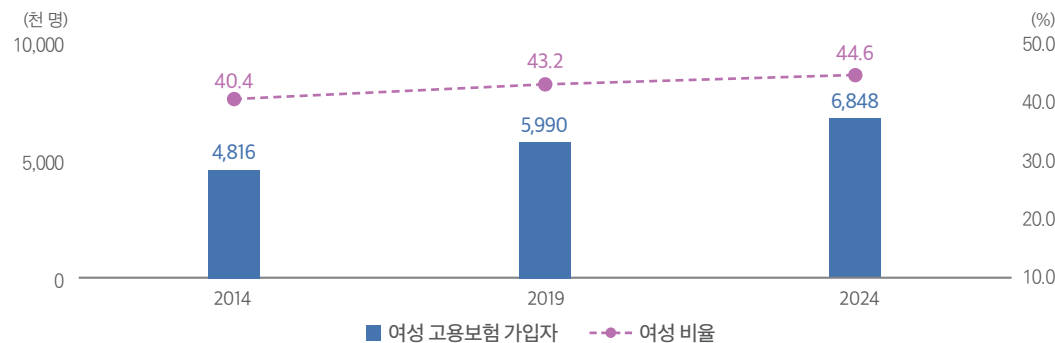
- 여성 고용보험 가입자는 2014년 4,816천명에서 2024년 6,848천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비중 역시 40.4%에서 44.6%로 4.2%p 증가
- 2014년과 대비하여 남성은 1,402천명 증가한 반면 여성은 2,032천명 증가하여 여성의 증가가 뚜렷

표 II-15 성별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단위: 명, %, %p)				
연도	전체	여성	남성	여성 비율
2014	11,930,602	4,815,795	7,114,807	40.4
2015	12,363,063	5,064,769	7,298,294	41.0
2016	12,655,202	5,244,088	7,411,114	41.4
2017	12,958,825	5,431,205	7,527,620	41.9
2018	13,432,497	5,717,676	7,714,821	42.6
2019	13,864,138	5,989,964	7,874,174	43.2
2020	14,111,690	6,149,543	7,962,147	43.6
2021	14,550,033	6,392,404	8,157,629	43.9
2022	14,898,502	6,580,091	8,318,411	44.2
2023	15,199,534	6,718,455	8,481,079	44.2
2024	15,364,809	6,847,794	8,517,015	44.6
증감	'23년 대비	129,339	35,936	0.4
	'14년 대비	2,031,999	1,402,208	4.2

주: 여성비율은 여성고용보험가입자(상용근로자+자영업자)/전체고용보험가입자(상용근로자+자영업자)×10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 (비정형통계 분석)

그림 II-17 여성 고용보험 가입자 및 비율 추이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 (비정형통계 분석)

라. 구인·구직 여성

○ 2024년 여성의 신규 구직 건수는 2,491,381건이며, 워크넷 구직을 통해 취업한 건수는 775,392건

- 2023년 대비 여성의 신규 구직건수는 236,386건 감소하였으며, 취업건수는 203,320건 감소
- 남성은 2023년 대비 신규 구직건수가 14,446건 감소하였고, 취업건수는 22,255건 감소
- 2014년과 비교하면 여성의 신규 구직건수는 204,677 증가하였고, 워크넷 구직을 통한 취업건수는 246,185건 감소

표 II-16 성별 구인·구직 및 취업 건수

(단위: 명, 건)								
연도	신규구인인원	신규 구직 건수				취업 건수		
		전체	구인배수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2014	2,509,740	4,144,371	0.61	2,286,704	1,857,667	1,740,735	1,021,577	719,158
2015	2,620,695	4,405,024	0.59	2,454,460	1,950,564	1,937,107	1,150,632	786,475
2016	2,794,405	4,513,114	0.62	2,535,914	1,977,200	2,060,660	1,241,332	819,328
2017	2,852,664	4,803,017	0.59	2,721,979	2,081,038	2,152,661	1,323,194	829,467
2018	2,436,823	4,009,506	0.61	2,237,867	1,771,638	1,832,804	1,120,403	712,401
2019	2,128,728	4,058,258	0.52	2,262,043	1,796,215	1,609,642	983,990	625,652
2020	2,045,112	4,551,020	0.45	2,533,089	2,017,931	1,556,597	940,331	616,266
2021	2,829,040	5,138,533	0.55	2,903,845	2,234,688	1,802,365	1,086,245	716,120
2022	3,317,302	4,684,080	0.71	2,701,794	1,982,286	1,633,522	998,260	635,262
2023	2,904,899	4,776,288	0.61	2,727,767	2,048,521	1,617,934	978,712	639,222
2024	2,246,210	4,525,456	0.50	2,491,381	2,034,075	1,392,359	775,392	616,967
증감	'23년 대비	-658,689	-250,832	-0.11	-236,386	-14,446	-225,575	-203,320
	'14년 대비	-263,530	381,085	-0.11	204,677	176,408	-348,376	-102,191

주: 1) 구인배수=신규구인인원/신규구직건수
2) 취업건수는 공공근로가 포함된 수치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24 워크넷 통계연보」

4.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여성 인력 및 국가전략기술분야 여성 인력 현황

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여성 인력 현황

○ 지난 10여 년간 여성 과학기술인 수는 2013년 43,662명에서 2023년 61,430명으로 17,768명 증가

- 과학기술인 중 여성 비율은 2013년 18.9%에서 2023년 23.1%로 동기간 4.2%p 상승
- 여성 비정규직 과학기술인력 수는 2023년 20,612명으로 2013년 20,459명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고, 여성 과학기술인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23년 기준 33.6%로 2013년(46.9%) 대비 13.3%p 크게 하락

표 II-17 성별·고용형태별 과학기술인 인력 추이

(단위: 명,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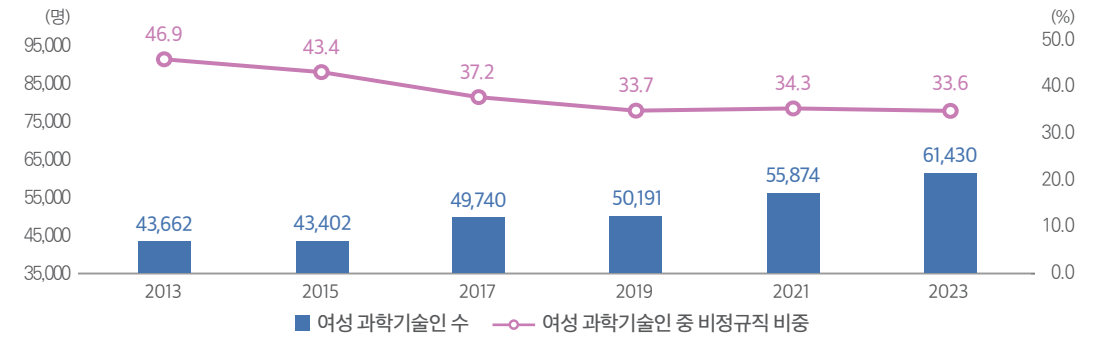
연도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소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소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2013	231,589	43,662	187,928	18.9	169,655	23,203	146,452	13.7	61,934	20,459	41,476	33.0	
2014	232,002	43,433	188,569	18.7	172,369	23,903	148,466	13.9	59,633	19,530	40,103	32.8	
2015	223,756	43,402	180,354	19.4	167,959	24,546	143,413	14.6	55,797	18,856	36,941	33.8	
2016	239,635	46,269	193,366	19.3	184,671	27,608	157,063	14.9	54,964	18,661	36,303	34.0	
2017	247,987	49,740	198,246	20.1	195,789	31,232	164,557	16.0	52,198	18,508	33,690	35.5	
2018	235,097	47,028	188,069	20.0	186,495	30,263	156,232	16.2	48,602	16,765	31,837	34.5	
2019	242,994	50,191	192,803	20.7	195,022	33,291	161,731	17.1	47,971	16,900	31,071	35.2	
2020	252,111	54,201	197,910	21.5	198,352	35,087	163,264	17.7	53,759	19,113	34,646	35.6	
2021	256,178	55,874	200,304	21.8	201,886	36,697	165,188	18.2	54,292	19,177	35,116	35.3	
2022	262,923	59,760	203,163	22.7	207,194	39,925	167,268	19.3	55,729	19,835	35,894	35.6	
2023	265,481	61,430	204,051	23.1	207,301	40,819	166,482	19.7	58,181	20,612	37,569	35.4	
증감	’22년 대비	2,558	1,670	888	0.4	107	894	-786	0.4	2,452	777	1,675	-0.2
	’13년 대비	33,892	17,768	16,123	4.2	37,646	17,616	20,030	6.0	-3,753	153	-3,907	2.4

주: 1) 여성과학기술인 현황은 기관 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인력 현황임

2) 비정규직은 기관 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인력 중 고용보험(직장건강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하며, 기관별 채용기준에 따른 비정규 고용형태의 인력을 의미함.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제수행기간 등에 의해 일정기간 이상 상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도 포함됨. 이공계 대학의 경우 '비전임교수', '시간강사', '전임연구원 및 연구참여 박사과정생'을 비정규직으로 포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

그림 II-18 여성과학기술인 중 비정규직 비중 추이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

- 이공계 대학의 여성과학기술인은 2013년 19,241명(24.4%)에서 2023년 23,837명(29.6%)으로, 공공연구기관 여성과학기술인은 2013년 8,209명(23.3%)에서 2023년 11,246명(26.5%)으로, 민간연구기관 여성과학기술인은 2013년 16,212명(13.8%)에서 2023년 26,347명(18.5%)으로 인력 수와 여성 비중 모두 증가
- 2013년에서 2023년 사이 이공계 대학의 남성과학기술인 수는 2,843명 줄어든 반면 여성과학기술인 수는 4,596명 증가

표 II-18 성별·기관유형별 과학기술인 인력 추이

(단위: 명, %, %p)

연도	이공계 대학				공공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소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소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소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2013	78,761	19,241	59,520	24.4	35,304	8,209	27,095	23.3	117,524	16,212	101,313	13.8	
2014	77,828	18,631	59,197	23.9	34,666	7,933	26,733	22.9	119,508	16,869	102,639	14.1	
2015	73,023	18,370	54,653	25.2	36,717	8,484	28,233	23.1	114,016	16,548	97,468	14.5	
2016	74,403	18,820	55,583	25.3	36,547	8,648	27,899	23.7	128,685	18,801	109,884	14.6	
2017	71,764	18,918	52,846	26.4	38,226	9,078	29,148	23.7	137,997	21,744	116,252	15.8	
2018	68,345	18,131	50,214	26.5	37,352	8,912	28,440	23.9	129,400	19,985	109,415	15.4	
2019	66,828	18,171	48,657	27.2	43,027	10,511	32,516	24.4	133,139	21,509	111,630	16.2	
2020	73,283	21,232	52,051	29.0	44,834	11,086	33,748	24.7	133,994	21,883	112,111	16.3	
2021	74,413	21,795	52,618	29.3	45,663	11,303	34,360	24.8	136,102	22,776	113,326	16.7	
2022	75,809	22,392	53,417	29.5	45,069	11,727	33,342	26.0	142,045	25,641	116,404	18.1	
2023	80,514	23,837	56,677	29.6	42,446	11,246	31,200	26.5	142,521	26,347	116,174	18.5	
증감	’22년 대비	4,705	1,445	3,260	0.1	-2,623	-481	-2,142	0.5	476	706	-230	0.4
	’13년 대비	1,753	4,596	-2,843	5.2	7,142	3,037	4,105	3.2	24,997	10,135	14,861	4.7

주: 1) 2016년도부터 정부투자기관의 명칭을 공공연구기관으로 변경

2) 민간기업연구기관은 2018년 기준 조사부터 조사대상 산업을 정비하여 제조업(7개) 및 건설업(1개), 서비스업(3개) 총 11개 업종분류로 집계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및 연구개발 참여를 위한 연구비를 지원(연간 학·석사급 1인당 2,100만 원, 박사급 1인당 2,300만 원)하는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예산은 2020년 94억 7천 5백만 원에서 2023년 120억 원으로 증가하나, 2024년은 90억 5천 8백만 원으로 감소

- 이에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 수혜자는 2020년 398명에서 2023년 504명으로 증가하나, 2024년 392명으로 감소

표 II-19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 예산 및 수혜자 수

(단위: 백만 원, 명)

연도	지원 예산	수혜자 수(지원 과제 수)
2020	9,475	398
2021	10,800	464
2022	12,000	503
2023	12,000	504
2024	9,058	39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WISET 제공자료

○ 2024년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사업 지원 종료자는 246명, 취업자는 239명, 취업유지율은 97.2%

- 2023년 대비 지원종료자는 49명 증가하고 취업자는 87명 증가
-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은 최대 3년간 가능하며, 지원이 종료된 인원을 기준으로 2024년 취업유지율은 97.2%로 2023년 대비 20.0%p 상승

표 II-20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사업 취업 유지 현황

(단위: 명, %)

연도	지원 종료 후 취업유지율		
	지원종료자(A)	취업자(B)	취업유지율(B/A*100)
2020	180	146	81.1
2021	336	266	79.2
2022	200	157	78.5
2023	197	152	77.2
2024	246	239	97.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WISET 제공자료

나. 주요 국가전략기술분야¹⁾ 여성 인력 현황

①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 2023년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여성 인력은 10,500명으로 전년 대비 8,035명 감소

-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여성 인력 비율은 2023년 6.5%로 전년 대비 5.2%p 하락

•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인력은 2013년 이래 점차 증가하여 2023년은 162,604명으로 25,849명 증가하나,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여성 인력은 2013년 27,312명에서 2017년 36,082명으로 증가하지만,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2년 10,500명으로 감소

•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남성 인력은 2023년 152,104명으로 2013년 대비 42,662명 증가

• 여성 인력 감소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 모두에서 동시에 나타남. 디스플레이 여성 인력은 2017년(11,852명) 이래 감소 추세를 보여 2023년 3,254명으로 감소했고, 반도체 여성 인력은 2019년(24,865명) 이래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3년 7,246명으로 크게 감소

표 II-21 성별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인력

(단위: 명,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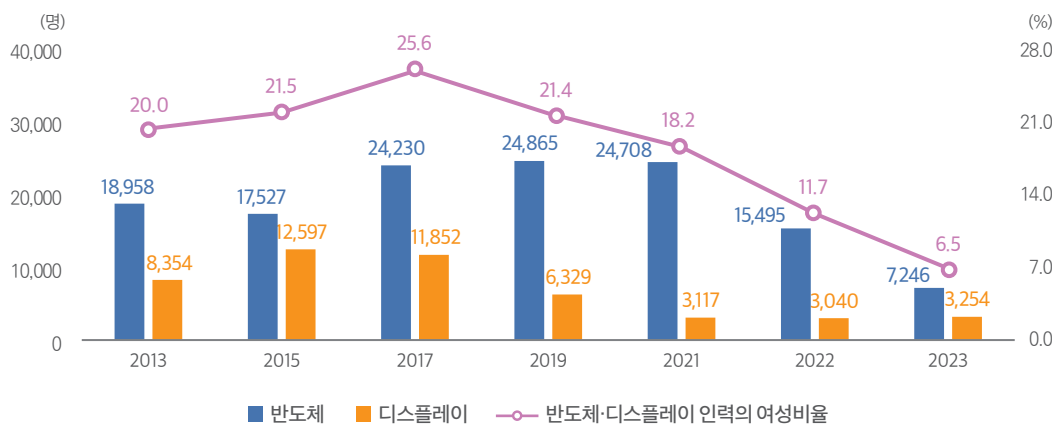
연도	계(반도체+디스플레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계	여성	남성	여성비율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2013	136,755	27,312	109,442	20.0	88,527	18,958	69,569	48,228	8,354	39,873
2015	139,893	30,124	109,769	21.5	90,492	17,527	72,965	49,401	12,597	36,804
2017	141,063	36,082	104,981	25.6	90,501	24,230	66,271	50,562	11,852	38,710
2019	145,436	31,194	114,241	21.4	95,429	24,865	70,564	50,007	6,329	43,677
2021	152,868	27,825	125,042	18.2	104,004	24,708	79,296	48,864	3,117	45,746
2022	157,826	18,535	139,291	11.7	109,014	15,495	93,519	48,812	3,040	45,772
2023	162,604	10,500	152,104	6.5	113,818	7,246	106,572	48,786	3,254	45,532
증감	'22년 대비	4,778	-8,035	-5.2	4,804	-8,249	13,053	-26	214	-240
	'13년 대비	25,849	-16,812	-11.7	25,291	-11,712	37,003	558	-5,100	5,659

주: 1) ()는 전체 산업기술인력 대비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인력 비율

2) 산업기술인력은 고졸 이상 학력자로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 기술직 또는 생산 및 정보통신 업무관련 관리자, 기업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으로 정의함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그림 II-19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여성 인력 및 비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1) 주요 국가전략기술분야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국가전략기술의 선정·관리)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2024년 2월 1일 고시한 12개 국가전략기술분야 중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첨단 바이오, 사이버보안, 양자 등 성별 통계가 공표되지 않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를 의미함

② 원자력 분야

○ 2023년 원자력 분야 여성 인력은 4,327명으로 원자력 분야 인력의 12.0% 차지

- 원자력 분야 여성 인력은 2013년 2,257명에서 2023년 4,327명으로 동기간 2,070명 증가. 여성 비율은 2013년 7.8%에서 점차 상승하여 2023년 12.0%로 4.2%p 상승
- 전년 대비 원자력 분야 여성 인력은 248명 증가하고 여성 비율은 0.6%p 상승
- 2023년 원자력 분야 여성 인력은 기술직(1,797명) > 사무직(1,364명) > 기능직(688명) > 연구직(478명) 순으로 많이 분포 하지만, 기능별 여성 인력 비율을 살펴 보면 사무직 28.5%로 가장 높고 기능직 13.3%, 연구직 11.9%, 기술직 8.1% 순으로 나타남
- 기능별 여성 인력의 변화를 보면, 2013년 대비 기술직은 968명 증가, 사무직은 468명 증가, 연구직은 182명 증가, 기능직은 452명 증가. 이와 같은 인력 증가로 인해 기능별 해당 인력 중 여성 비율은 2013년 대비 기능직은 7.0%p, 사무직 5.6%p, 연구직 3.7%p, 기술직 3.4%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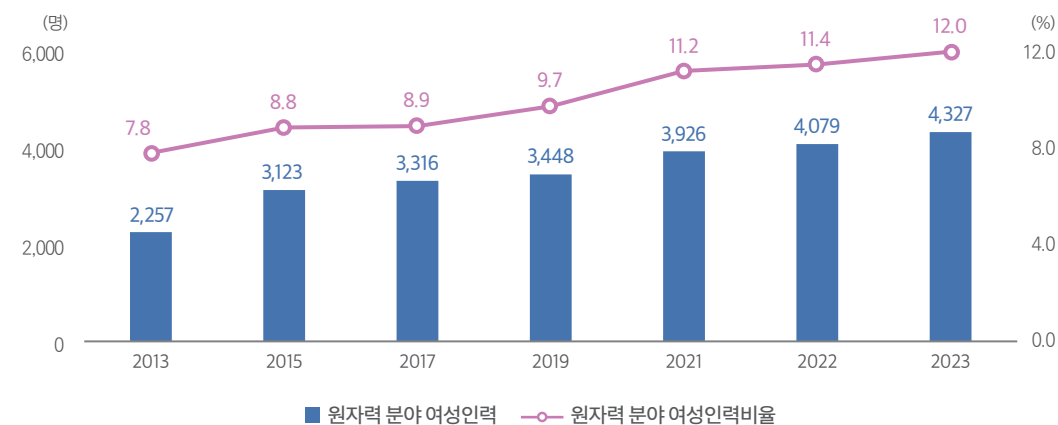
표 II-22 성별 원자력 분야 인력

(단위: 명, %, %p)

연도	원자력 분야 인력				원자력 분야 기능별 여성 인력				
	계	여성	남성	여성비율	기술직	사무직	연구직	기능직	
2013	28,974	2,257	26,717	7.8	829(4.6)	896(22.9)	296(8.1)	236(6.9)	
2015	35,330	3,123	32,207	8.8	1,222(5.3)	1,145(21.9)	286(8.4)	470(12.9)	
2017	37,261	3,316	33,945	8.9	1,322(5.6)	1,120(25.0)	282(8.1)	592(10.6)	
2019	35,469	3,448	32,021	9.7	1,412(6.4)	973(23.0)	354(9.4)	709(13.1)	
2021	35,104	3,926	31,178	11.2	1,514(7.1)	1,161(20.4)	416(11.3)	835(18.7)	
2022	35,649	4,079	31,570	11.4	1,681(7.6)	1,182(22.8)	444(11.2)	772(17.8)	
2023	36,107	4,327	31,780	12.0	1,797(8.1)	1,364(28.5)	478(11.9)	688(13.8)	
증감	'22년 대비	458	248	210	0.6	116(0.5)	182(5.7)	34(0.6)	-84(-4.0)
	'13년 대비	7,133	2,070	5,063	4.2	968(3.4)	468(5.6)	182(3.7)	452(7.0)

주: ()는 원자력 분야 기능별 해당 인력 중 여성 비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산업실태조사」

그림 II-20 원자력 분야 여성 인력 및 비율 추이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산업실태조사」

③ 우주산업 분야

○ 2023년 우주산업 분야 여성 인력은 1,855명으로 전년 대비 121명 증가

- 우주산업 분야 여성 인력은 2015년 1,061명에서 2023년 1,855명으로 동기간 794명 증가하여, 여성 비율은 2015년 13.5%에서 2023년 16.7%로 상승
- 2023년 우주산업 분야 여성 인력의 학력 분포를 보면, 박사가 284명으로 박사인력 중 12.7%, 석사는 437명으로 석사 인력 중 17.4%, 학사는 885명으로 학사 인력 중 16.9%를 보임
- 전년 대비 여성 인력은 박사 30명, 석사 61명, 학사 55명의 인력이 증가하고 기타 인력이 25명 감소하여 총 121명이 증가하였으나, 이에 우주산업 분야에서의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0.4%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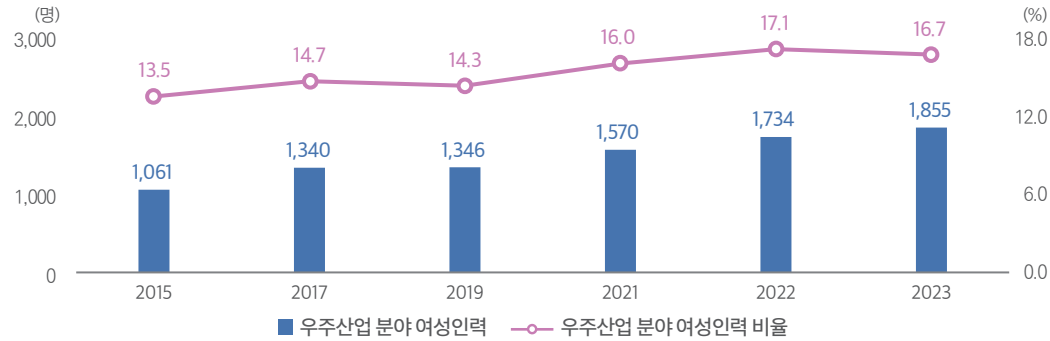
표 II-23 성별 우주산업 분야 인력

(단위: 명, %)

구분	전체	박사	석사	학사	기타		
전체	2015	7,856	1,612	1,868	3,457	919	
	2017	9,138	1,841	2,161	4,005	1,131	
	2019	9,397	1,950	2,226	4,203	1,018	
	2021	9,797	1,793	2,083	4,763	1,158	
	2022	10,125	1,853	2,249	4,951	1,072	
	2023	11,102	2,239	2,518	5,238	1,107	
	증감	'22년 대비	977	386	269	287	35
		'15년 대비	3,246	627	650	1,781	188
여성	2015	1,061(13.5)	169(10.5)	224(12.0)	496(14.3)	172(18.7)	
	2017	1,340(14.7)	240(13.0)	304(14.1)	567(14.2)	229(20.2)	
	2019	1,346(14.3)	246(12.6)	322(14.5)	576(13.7)	202(19.8)	
	2021	1,570(16.0)	232(12.9)	293(14.1)	783(16.4)	262(22.6)	
	2022	1,734(17.1)	254(13.7)	376(16.7)	830(16.8)	274(25.6)	
	2023	1,855(16.7)	284(12.7)	437(17.4)	885(16.9)	249(22.5)	
	증감	'22년 대비	121	30	61	55	-25
		'15년 대비	794	115	213	389	77
남성	2015	6,795	1,443	1,644	2,961	747	
	2017	7,798	1,601	1,857	3,438	902	
	2019	8,051	1,704	1,904	3,627	816	
	2021	8,227	1,561	1,790	3,980	896	
	2022	8,391	1,599	1,873	4,121	798	
	2023	164	38	83	141	-98	
	증감	'22년 대비	5,145	972	1,223	2,340	610
		'15년 대비	9,247	1,955	2,081	4,353	858

주: 1) 우주산업은 우주 개발 자체에 목적이 있는 우주 기기 제작 산업뿐 아니라 우주 개발을 통해 인류에게 돌아가는 부가가치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인 우주 개발을 위한 산업 및 우주 개발을 통해 창출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포함
2) ()는 우주산업 분야 인력 중 여성비율
3) 국가승인통계로 2015년 승인된 이후의 자료부터 분석함
자료: 우주항공청, 「우주산업실태조사」

그림 II-21 우주산업 분야 여성 인력 및 비율 추이



자료: 우주항공청, 「우주산업실태조사」

④ 수소 분야

○ 2023년 수소 분야 여성인력은 3,550명으로 전체 인력의 10.3% 차지

- 여성 인력을 업종별로 보면 수소 활용이 2,842명으로 가장 많고, 수소관련서비스(299명), 수소 유통(210명), 수소생산(198명) 순으로 많이 분포되며, 업종별 여성 비율 또한 동일한 순서대로 많아, 각각 13.5%, 9.9%, 5.8%, 2.9% 순임
- 전년 대비 여성 인력은 153명 감소했고 업종별로 수소 활용과 수소 유통이 각각 140명과 22명 감소했고, 수소관련서비스와 수소생산은 각각 6명과 2명 증가. 이로 인해 여성비율은 2022년 10.8%에서 2023년 10.3%로 0.5%p 하락

표 II-24 성별 수소 분야 인력(2023년)

(단위: 개소, 명, %)

	업종별	사업체 수	수소산업 종사자 수			
			계	여성	남성	여성비율
2022	소계	2,798	34,381	3,703	30,678	10.8
	수소생산	357	6,172	196	5,976	3.2
	수소유통	723	3,381	232	3,150	6.9
	수소활용	1,305	21,703	2,982	18,721	13.7
	수소관련서비스	413	3,124	293	2,832	9.4
2023	소계	2,859	34,454	3,550	30,905	10.3
	수소생산	397	6,739	198	6,540	2.9
	수소유통	766	3,642	210	3,432	5.8
	수소활용	1,294	21,048	2,842	18,206	13.5
	수소관련서비스	402	3,026	299	2,727	9.9
'22년 대비 증감	소계	61	73	-153	227	-0.5
	수소생산	40	567	2	564	-0.3
	수소유통	43	261	-22	282	-1.1
	수소활용	-11	-655	-140	-515	-0.2
	수소관련서비스	-11	-98	6	-105	0.5

주: 수소산업은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판매 및 연료전지·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를 활용하는 장비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부품·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의미함
자료: 산업통상부, 「수소산업실태조사」

⑤ 인공지능 분야

○ 2024년 인공지능 분야 여성 인력은 8,242명으로 전년 대비 284명 증가

- 인공지능 분야 여성 인력은 2020년 3,142명에서 2024년 8,242명으로 약 2.6배 증가
- 이 분야의 여성 인력 비율은 2020년 12.4%에서 2023년 15.5%로 상승하나, 2024년 15.1%로 0.4%p 하락
- 인공지능 분야별로 여성 인력을 보면, 2024년 8,242명 중 6,178명은 AI SW 분야에, 1,826명은 AI 서비스 분야에, 238명은 AI HW 분야에 분포. 2020년 대비 분야별 인력의 증감을 보면, AI SW 분야는 4,438명, AI 서비스 분야는 438명, AI HW 분야는 223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2024년 여성 인력은 1,000인 이상(3,526명)> 100~1,000인 미만(2,311명)> 10~100인 미만(2,107명)> 10인 미만(299명) 순으로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많이 분포. 이에 비해 남성 인력은 10~100인 미만 사업체가 15,749명으로 가장 많았고 100~1,000인 미만(14,267명), 1,000인 이상(12,422명) 순으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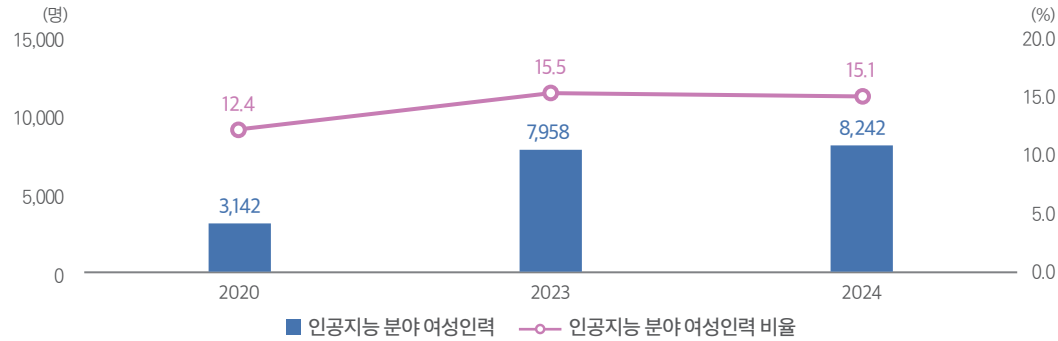
표 II-25 성별 인공지능 분야 인력

(단위: 명)

		전체	인공지능 분야			사업체 규모			
			AI SW	AI 서비스	AI HW	1,000인 이상	100~1,000인 미만	10~100인 미만	10인 미만
전체	2020	25,355	14,937	10,273	349	8,396	6,501	8,719	1,740
	2023	51,211	37,021	13,707	697	14,898	15,722	16,823	3,767
	2024	54,039	37,840	14,433	1,766	15,948	16,578	17,856	3,658
	'23년 대비 증감	2,828	819	726	1,069	1,050	856	1,033	-109
	'20년 대비	28,684	22,903	4,160	1,417	7,552	10,077	9,137	1,918
여성	2020	3,142	1,740	1,388	15	1,446	681	919	96
	2023	7,958	5,999	1,728	232	3,405	2,237	2,026	290
	2024	8,242	6,178	1,826	238	3,526	2,311	2,107	299
	'23년 대비 증감	284	179	98	6	121	74	81	9
	'20년 대비	5,100	4,438	438	223	2,080	1,630	1,188	203
남성	2020	22,213	13,197	8,885	334	6,950	5,820	7,800	1,644
	2023	43,253	31,022	11,979	465	11,493	13,485	14,797	3,477
	2024	45,797	31,662	12,607	1,528	12,422	14,267	15,749	3,359
	'23년 대비 증감	2,544	640	628	1,063	929	782	952	-118
	'20년 대비	23,584	18,465	3,722	1,194	5,472	8,447	7,949	1,715

주: 1) 인공지능산업은 인간의 지적 업무를 모방·대체하는 기반 기술의 총칭이라는 인공지능 개념과 산업의 가치사슬 단계를 고려할 때, ① AI 생산 도구를 제공하거나, ② AI 활용 기반의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③ AI 시스템 구축·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
2) 2024년은 잠정치임
3) 반올림으로 인해 하위 영역의 합이 전체와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

그림 II-22 인공지능 분야 여성 인력 및 비율 추이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

⑥ 정보통신 분야

○ 2023년 정보통신 분야 여성 상용근로자는 325,863명으로 전체 인력의 27.1% 차지

- 여성 상용근로자를 업종별로 보면 정보통신방송기기업(149,840명) >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개발 제작업(118,199명) > 정보통신방송서비스업(45,516명) > 정보통신방송인프라서비스업(12,308명) 순으로 많이 분포하며, 각각 업종의 여성 상용근로자 비율은 각각 26.4%, 28.5%, 32.4%, 16.1%로 나타남
- 전년 대비 남성은 6,798명 증가하나 여성은 20,751명 감소. 정보 분야별로 보면 여성은 정보통신 방송인프라 서비스업에서 569명 증가하지만, 이외 분야에서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26 성별 정보통신 분야 인력

		(단위: 명, %)		
구분		2022	2023	전년 대비 증감
전체	소계	1,214,349	1,223,035	8,686
	정보통신방송기기업	581,623	568,406	-13,217
	정보통신방송서비스업	138,082	140,526	2,444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개발 제작업	421,782	437,446	15,664
	정보통신방송인프라서비스업	72,862	76,657	3,795
여성	소계	346,614(28.5)	325,863(27.1)	-20,751(-1.4)
	정보통신방송기기업	154,100(26.5)	149,840(26.4)	-4,260(-0.1)
	정보통신방송서비스업	47,200(34.2)	45,516(32.4)	-1,684(-1.8)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개발 제작업	133,575(31.7)	118,199(28.5)	-15,376(-3.2)
	정보통신방송인프라서비스업	11,739(16.1)	12,308(16.1)	569(0.0)
남성	소계	867,735	874,533	6,798
	정보통신방송기기업	427,523	418,566	-8,957
	정보통신방송서비스업	90,882	95,010	4,128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개발 제작업	288,207	296,608	8,401
	정보통신방송인프라서비스업	61,123	64,349	3,226

주: 1) ICT 산업 통계(정보통신 통계)는 국가데이터처 전국사업체조사가 조사기반에서 등록기반으로 변경 2) ()는 종사자 중 여성비율
3) 인력은 상용근로자를 말하며, 2023년의 경우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개발 제작업 중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제작업에서 성별 구분 통계가 없어 성별의 합이 계와 약간의 차이가 있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실태조사」

⑦ 로봇 분야

○ 2023년 로봇 분야 여성 인력은 10,273명으로 전년 대비 128명 감소

- 로봇 분야 여성 인력은 2019년 7,617명에서 2021년 11,915명으로 증가하나 이후 감소하여 2024년 10,273명으로 감소
- 여성 인력 비율은 2019년 15.0%에서 2021년 24.5%로 상승하나, 2023년 19.8%로 하락
- 사업체 규모별로 2023년 여성 인력은 50인 이상(4,724명) > 10~49인(3,268명) > 5~9인(1,223명) > 1~4인(1,060명) 순으로 규모가 클수록 많이 분포. 규모별 여성 인력 변동은 2019년 대비 50인 이상에서 2,204명 증가하고 1~4인과 5~9인 사업체에서도 각각 675명과 531명 증가하나, 10~49인 사업체는 752명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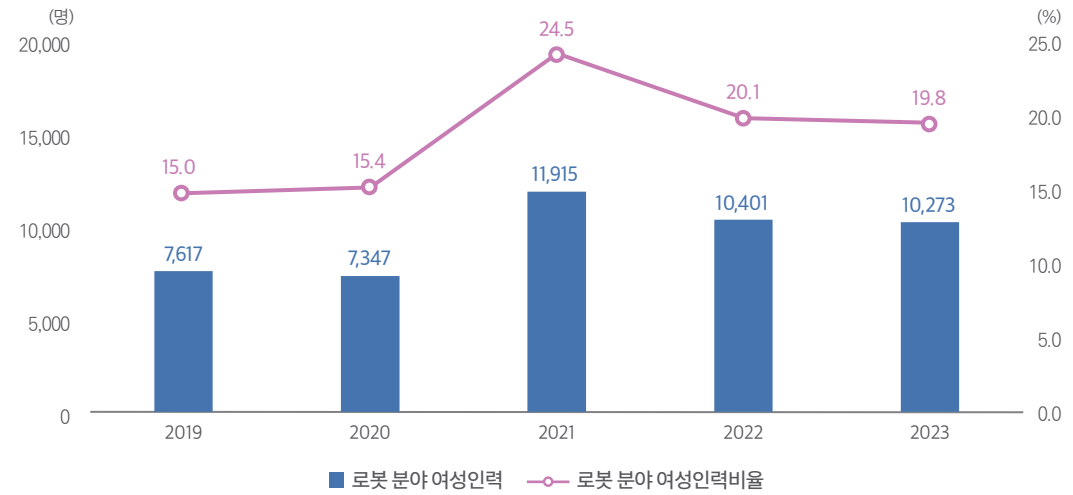
표 II-27 성별 로봇 분야 인력

(단위: 명, %)

구분		전체	사업체 규모				
			1~4인	5~9인	10~49인	50인 이상	
전체	2019	50,746	2,903	3,633	22,118	22,092	
	2020	47,849	3,373	5,582	14,981	23,913	
	2021	48,719	4,611	7,163	15,964	20,980	
	2022	51,656	4,657	5,200	18,408	23,391	
	2023	51,758	4,728	5,857	17,827	23,346	
	증감	'22년 대비	102	71	657	-581	-45
		'19년 대비	1,012	1,825	2,224	-4,291	1,254
여성	2019	7,617	385	692	4,020	2,520	
	2020	7,347	582	1,026	2,143	3,596	
	2021	11,915	1,419	1,774	3,754	4,968	
	2022	10,401	1,208	1,068	3,498	4,627	
	2023	10,273	1,060	1,223	3,268	4,724	
	증감	'22년 대비	-128	-148	155	-230	97
		'19년 대비	2,656	675	531	-752	2,204
남성	2019	43,129	2,518	2,940	18,098	19,573	
	2020	40,502	2,790	4,557	12,838	20,316	
	2021	36,804	3,193	5,389	12,210	16,012	
	2022	41,255	3,449	4,132	14,910	18,764	
	2023	41,485	3,668	4,635	14,559	18,623	
	증감	'22년 대비	230	219	500	-351	-141
		'19년 대비	-1,644	1,150	1,695	-3,539	-950

주: 로봇 분야 업종은 제조업용 로봇, 전문서비스용 로봇, 개인서비스용 로봇, 로봇 시스템, 로봇 임베디드, 로봇 서비스 업종을 포함하며, 2019년 로봇산업 특수분류 개정에 따름
자료: 한국로봇산업협회, 「로봇산업실태조사」

그림 II-23 로봇 분야 여성 인력 및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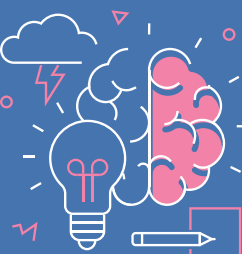


자료: 한국로봇산업협회, 「로봇산업실태조사」

2025년

여성
경제
활동
백서

03장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기업 활동

- 1.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 2. 여성 기업활동

03장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기업 활동



1.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가. 정부지원 직업훈련 참여 현황

○ 2024년 정부지원 재직자 직업훈련의 여성 참여자 비율은 사업주훈련 43.6%, 근로자훈련 62.2%로 근로자훈련의 여성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사업주훈련의 여성 참여자 수는 2021년 대비 81,110명 감소하였으며, 근로자훈련의 여성 참여자 수도 같은 기간 46,615명 감소하였으나 여성 참여 비율은 여전히 전체 참여자의 60% 이상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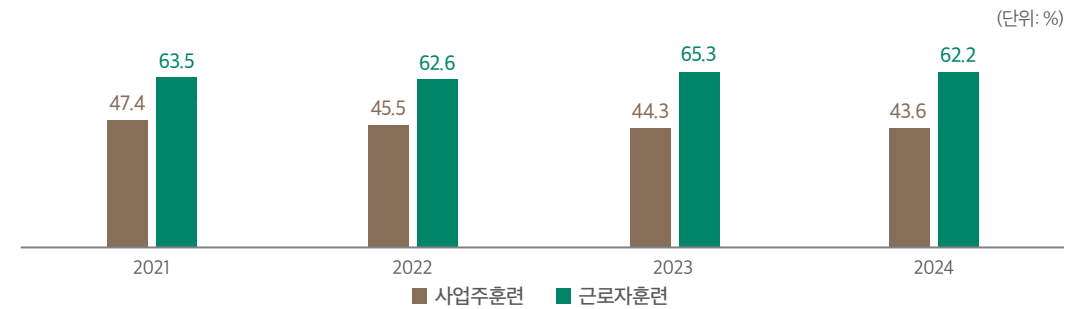
표 III-1 성별 정부지원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 현황

(단위: 명, %)

구분		사업주훈련		근로자훈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21	전체	2,253,603	100.0	377,888	100.0
	여성	1,068,289	47.4	239,918	63.5
	남성	1,185,314	52.6	137,970	36.5
2022	전체	2,985,265	100.0	353,100	100.0
	여성	1,358,762	45.5	220,869	62.6
	남성	1,626,503	54.5	132,231	37.4
2023	전체	2,862,204	100.0	411,593	100.0
	여성	1,266,865	44.3	268,711	65.3
	남성	1,595,339	55.7	142,882	34.7
2024	전체	2,265,558	100.0	310,845	100.0
	여성	987,179	43.6	193,303	62.2
	남성	1,278,379	56.4	117,542	37.8

주: 사업주훈련은 사업주직업능력개발(유급휴가 포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일학습병행 포함이며, 근로자훈련은 국민내일배움카드(재직자)임
자료: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그림 III-1 정부지원 재직자 직업훈련 여성참여 비율 추이



자료: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 2024년 정부지원 실업자 직업훈련의 여성 참여자 비율은 국민내일배움카드(실업자) 70.1%,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35.8%로 국민내일배움카드(실업자)의 여성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국민내일배움카드(실업자)의 여성 참여자 수는 2021년 대비 98,803명 감소하였고 여성 참여 비율도 2.3%p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참여자의 다수를 차지함. 반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여성 참여자 수는 같은 기간 3,303명 감소하였으나 여성 참여 비율은 0.8%p 소폭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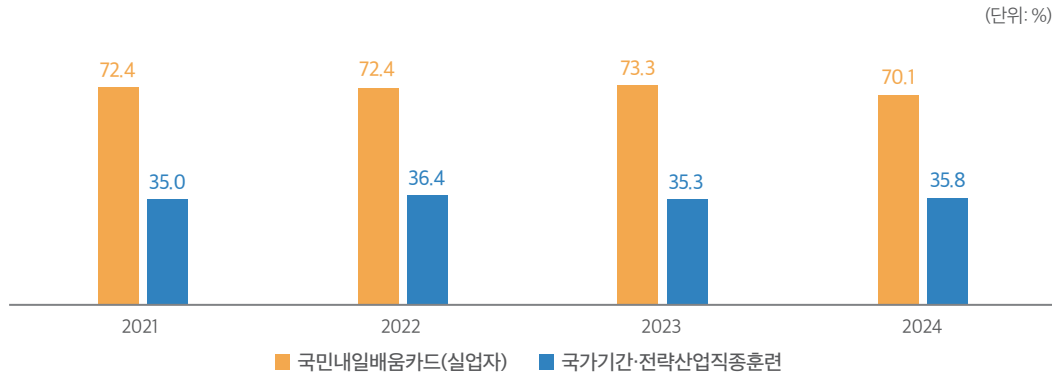
표 III-2 성별 정부지원 실업자 직업훈련 참여 현황

(단위: 명, %)

구분		국민내일배움카드(실업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21	전체	588,466	100.0	88,060	100.0
	여성	426,141	72.4	30,814	35.0
	남성	162,325	27.6	57,246	65.0
2022	전체	513,459	100.0	73,508	100.0
	여성	371,712	72.4	26,727	36.4
	남성	141,747	27.6	46,781	63.6
2023	전체	591,645	100.0	71,703	100.0
	여성	433,845	73.3	25,319	35.3
	남성	157,800	26.7	46,384	64.7
2024	전체	466,640	100.0	76,829	100.0
	여성	327,338	70.1	27,511	35.8
	남성	139,302	29.9	49,318	64.2

자료: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그림 III-2 정부지원 실업자 직업훈련 여성참여 비율 추이



자료: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현황

○ 법정 인력과 시설기준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시·도의 추천심사위원회 및 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의 지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

- 2025년 기준 전국 159개소 지정·운영 중으로 광역센터 13개소, 지역센터 146개소

표 III-3 전국 새일센터 운영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소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센터	146	24	10	5	8	5	2	5	1	27	9	5	10	8	8	8	8	3
광역센터	13	1	1	-	1	-	1	-	-	2	1	1	1	1	1	1	1	-
총계	159	25	11	5	9	5	3	5	1	29	10	6	11	9	9	9	9	3

주: 2025년 기준
자료: 성평등가족부 제공자료

○ 새일센터의 2024년 구직 건수는 587,738건, 취업 건수 166,525건, 창업 건수 1,982건

- 2023년 대비 구직 건수 1,947건 감소, 취업 건수 2,851건 증가, 창업 건수 117건 증가

표 III-4 새일센터 구직 건수, 취업률, 취·창업 건수 현황

(단위: 건, %)

연도	구직건수 (A)	취·창업 건수			
		소계 (B=C+D)	취업률 (B/A)	취업건수 (C)	창업건수 (D)
2021	572,560	180,610	31.5	178,980	1,630
2022	553,590	161,772	29.2	160,065	1,707
2023	589,685	165,539	28.1	163,674	1,865
2024	587,738	168,507	28.7	166,525	1,982

자료: 성평등가족부 제공자료

○ 새일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여성의 경력설계 및 근로의욕 고취를 지원하고 이후 직업훈련, 인턴십 및 취업알선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로 연계하고 있음

-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인원은 2021년 이후 2만 6천 명 이상, 수료자 비율은 99.0% 이상을 유지

표 III-5 새일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명, %)

연도	참여자 수(A)	수료자 수(B)	수료자 비율(B/A)
2021	26,808	26,669	99.5
2022	26,950	26,807	99.5
2023	26,999	26,823	99.3
2024	26,777	26,583	99.3

자료: 성평등가족부 제공자료

○ 2024년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과정 수는 733개, 직업훈련 수료자 수는 13,019명

- 2021년 직업교육훈련 과정 수는 738개로 처음으로 700개를 상회, 2024년은 733개로 전년 대비 18개 증가
- 2024년 직업교육훈련 수료자 수는 13,019명으로 전년 대비 214명 증가
- 2024년 전년 대비 직업교육훈련 과정 수와 직업교육훈련 수료자 수 모두 증가

표 III-6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과정 수 및 수료자 수

(단위: 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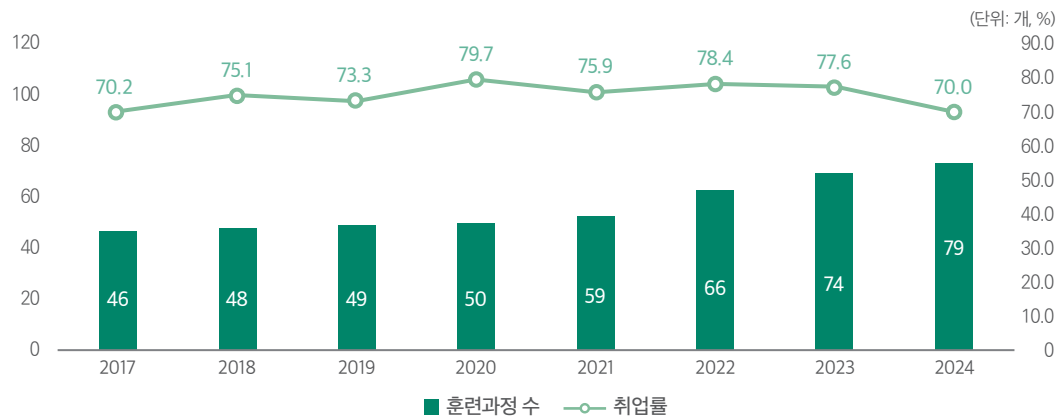
연도	직업교육훈련 과정 수	직업교육훈련 수료자 수
2021	738	11,998
2022	718	11,919
2023	715	12,805
2024	733	13,019

자료: 성평등가족부 제공자료

○ 경력단절여성들이 시대흐름에 맞춰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7년 46개로 시작된 새일센터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교육 훈련과정은 매년 확대

-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교육 훈련과정*은 2024년 79개로 2017년 대비 1.7배 증가하였음. 취업률은 2016년부터 70%를 상회, 2024년 취업률은 70.0%로 나타남
- *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교육 훈련 과정: AI, 3D, 바이오, 빅데이터 등 미래 유망 신기술 분야에서 높은 숙련도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직업 훈련 과정

그림 III-3 새일센터 고숙련·고부가가치 훈련과정 수 및 취업률 추이



자료: 성평등가족부 제공자료

○ 새일센터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교육 훈련과정의 30세 미만 비중은 2021년 이후 40% 내외로 높은 편

- 2024년 30세 미만 비중은 40.1%로 40%대를 유지

표 III-7 연령별 새일센터 고숙련·고부가가치 훈련과정 참여 현황

연도	교육인원	(단위: 명, %)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21	931	403	245	198	73	12
(참여율)	(100.0)	(43.3)	(26.3)	(21.3)	(7.8)	(1.3)
2022	1,094	428	298	259	93	16
(참여율)	(100.0)	(39.1)	(27.2)	(23.7)	(8.5)	(1.5)
2023	1,271	521	362	284	95	9
(참여율)	(100.0)	(41.0)	(28.5)	(22.3)	(7.5)	(0.7)
2024	1,379	553	382	337	102	5
(참여율)	(100.0)	(40.1)	(27.7)	(24.4)	(7.4)	(0.4)

자료: 성평등가족부 제공자료

○ 2024년 새일여성인턴 종료 인원은 7,823명, 연계 중 인원은 1,363명이며, 인턴 종료 후 취업자는 7,581명, 취업률은 96.9%

- 인턴 종료 후 취업률은 2024년 96.9%로 2021년 이후 96.7% 이상 유지

표 III-8 새일여성인턴 연계 및 취업 현황

연도	새일여성인턴 연계 현황		인턴 종료 후 취업 현황	
	종료(A)	연계 중	취업(B)	취업률(B/A)
2021	9,611	1,236	9,312	96.9
2022	8,298	1,085	8,027	96.7
2023	7,202	1,438	6,984	97.0
2024	7,823	1,363	7,581	96.9

자료: 성평등가족부 제공자료

○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경력단절예방사업의 운영 센터 수와 참여자 수 지속적으로 증가. 2017년 경력단절예방사업 도입 이후 새일센터 사업 대상 및 범위가 기존 비취업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외에 재직 여성으로 확대

- 경력단절예방사업을 운영하는 센터 수는 2021~2022년 75개소 이후 2023~2024년 80개소로 증가
- 경력단절예방사업에 참여한 재직여성은 2024년 75,100명으로, 2021년 대비 7,203명 증가
- 여성고용유지 지원사업 참여자 수는 2024년 총 39,549명으로 전체 참여 재직여성의 52.7% 차지
- 직장문화 개선 사업 컨설팅 참여 업체 수는 2,503개로 2021년 대비 756개 증가
- 새일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참여자 수는 2024년 1,077명으로 2023년 이후 1,000명 이상 유지

표 III-9 새일센터 경력단절예방사업 현황

(단위: 건)

연도	운영 센터수	누적 실적		여성고용유지 지원		직장문화 개선				협력망 구축		기타
		재직여성	기업	경력단절 예방상담	직장적응 및 복귀 지원	컨설팅 (업체)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환경 개선 지원 (업체)	새일센터 종사자 교육	경력 단절 예방 협력망 (업체)	
							교육 및 워크숍	네트워크 간담회				
2021	75개소	67,897	2,375	15,548	27,095	1,747	16,520	3,586	166	934	462	4,214
2022	75개소	73,491	3,357	17,241	28,019	1,690	16,381	5,703	158	809	1,509	5,338
2023	80개소	85,372	2,888	19,226	29,480	1,710	20,507	7,055	155	1,277	1,023	7,827
2024	80개소	75,100	4,352	16,591	22,958	2,503	24,778	5,002	142	1,077	1,707	4,694

자료: 성평등가족부 제공자료

2. 여성 기업활동

가. 여성경영인 기업²⁾ 현황

○ 전국 기업체 중 여성이 대표인 기업체는 2023년 40.6%로 2020년 이후 40% 이상 꾸준히 유지

- 2023년 기준 여성기업인 기업 비율이 높은 산업은 교육 서비스업(65.9%), 숙박 및 음식점업(58.2%), 협회및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57.1%), 부동산업(52.8%) 등이며, 여성기업인 기업 비율이 낮은 산업은 운수 및 창고업(10.0%), 광업(16.9%), 건설업(21.4%) 등임
-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한 산업에서 2020년 대비 2023년의 여성기업인 기업 비율이 증가하였음
- 2020년 대비 2023년 여성경영인 기업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산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4%p), 정보통신업(3.0%p), 교육 서비스업(2.5%p) 순임

표 III-10 산업별 여성경영인 기업 비율 추이

(단위: %)

산업별	2020	2021	2022	2023
전체	40.5	40.6	40.5	40.6
농업, 임업 및 어업	*	*	*	23.1
광업	*	*	16.6	16.9
제조업	23.5	24.0	24.2	24.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9.3	38.8	38.2	37.4
수도,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	*	21.7	21.7
건설업	20.9	21.1	21.2	21.4
도매 및 소매업	44.0	44.7	45.1	45.2
운수 및 창고업	10.0	10.0	10.0	10.0
숙박 및 음식점업	59.6	59.0	58.5	58.2
정보통신업	25.5	26.7	27.5	28.5
금융 및 보험업	34.8	35.5	35.5	35.3
부동산업	53.9	53.7	52.6	52.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5.9	27.4	28.5	29.3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0.9	30.6	30.7	30.5
교육 서비스업	63.4	64.4	65.3	65.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24.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3.1	42.9	42.7	42.5
협회및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5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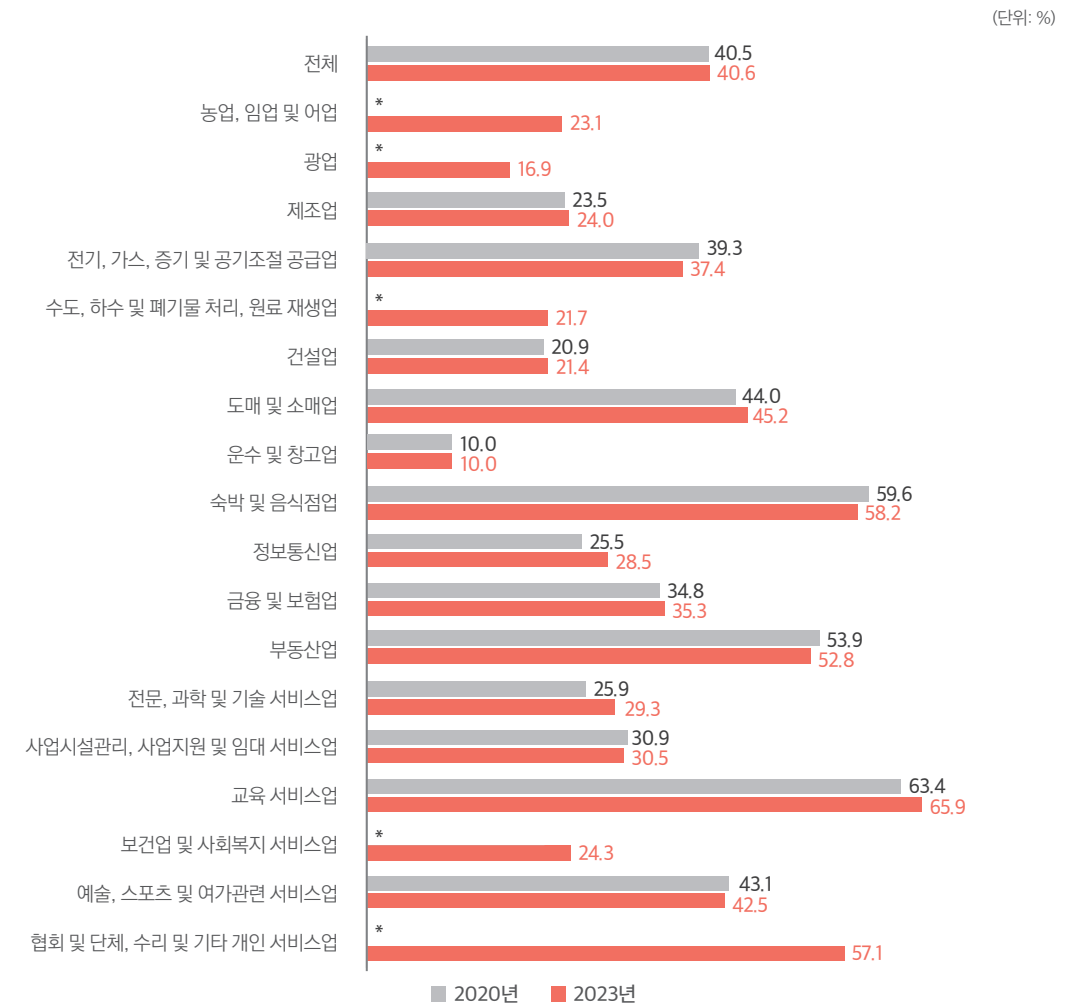
주: 1) 3 미만의 수치 또는 합계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수치는 정보보호를 위해 *처리

2) 한국표준산업분류(제 10차 개정) 대분류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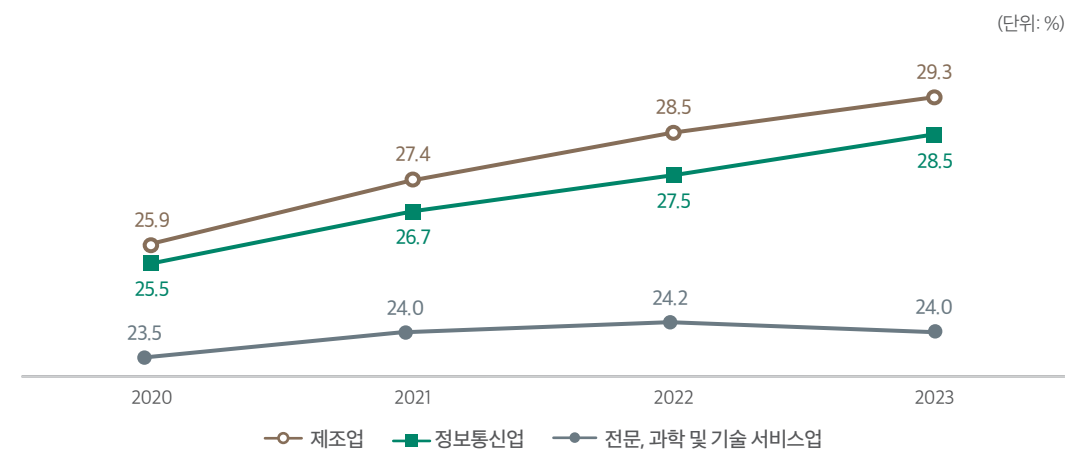
2) 대표자가 여성인 기업

그림 III-4 산업별 여성경영인 기업 비율



주: 3 미만의 수치 또는 합계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수치는 정보보호를 위해 * 처리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그림 III-5 여성경영인 비중이 증가한 주요 산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 여성기업실태조사³⁾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여성기업 중 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이 35.8%, 기업 성장단계 중에서는 성장기의 비중이 39.9%, 매출액 규모로는 5억(3억) 이상~10억 미만인 6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산업별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이 2018년 3.0%에서 2023년 22.6%로 19.6%p 증가하였으며, 도매 및 소매업이 29.4%에서 35.8%로 6.4%p, 부동산업이 2.7%에서 3.5%로 0.8%p 증가
- 진입기(창업기)의 비중은 2018년 7.4%에서 2023년 13.7%로 6.3%p 증가하였고, 매출액 규모 5억(3억) 이상~10억 미만의 비중이 30.0%에서 61.1%로 31.1%p 크게 증가. 이는 최근 들어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의 소규모 여성기업 창업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

표 III-11 산업별·기업 성장단계별·매출액 규모별 여성기업 현황

구분		2018		2023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체		42,803	100.0	260,776	100.0
산업별	식품/음료 제조업	1,062	2.5	3,260	1.3
	섬유/의복/가방/신발 제조업	1,031	2.4	3,710	1.4
	기타 제조업	7,799	18.2	24,202	9.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88	1.1	1,205	0.5
	건설업	7,510	17.5	24,239	9.3
	도매 및 소매업	12,575	29.4	93,365	35.8
	운수 및 창고업	1,810	4.2	4,813	1.8
	숙박 및 음식점업	1,267	3.0	58,934	22.6
	정보통신업	1,078	2.5	3,459	1.3
	금융 및 보험업	363	0.8	3,827	1.5
	부동산업	1,159	2.7	9,110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24	4.0	6,929	2.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164	5.1	5,468	2.1
	교육 서비스업	845	2.0	6,185	2.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68	2.5	8,220	3.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63	0.6	1,149	0.4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97	1.4	2,701	1.0
기업 성장단계별	진입기(창업기)	3,167	7.4	35,726	13.7
	성장기	18,148	42.4	104,050	39.9
	성숙기	17,506	40.9	103,528	39.7
	쇠퇴기	3,981	9.3	17,472	6.7
매출액규모별	5억(3억) 이상~10억 미만	12,861	30.0	159,316	61.1
	10억 이상~50억 미만	23,197	54.2	87,094	33.4
	50억 이상~100억 미만	4,166	9.7	9,138	3.5
	100억 이상~300억 미만	2,054	4.8	4,137	1.6
	300억 이상	525	1.2	747	0.3
	중소기업 범위초과	-	-	344	0.1

주: 1) 여성기업: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2) 기업 성장단계 정의: ① 진입기: 회사를 창업하고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단계 및 시장에 진입하는 단계 (2018년 창업기: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 ② 성장기: 매출액 또는 시장점유율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③ 성숙기: 매출액 또는 시장점유율이 정체되어 있으나 지속적으로 안정적인(2018년에는 '높은') 수익성을 확보하는 경우, ④ 쇠퇴기: 매출액, 시장점유율, 수익성 등 경영지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자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기업실태조사」

나. 창업 현황

○ 2024년 여성 창업기업은 전체 창업기업(1,182,905개) 중 45.0%(532,357개)를 차지하였으며, 2016년 여성 창업기업 551,682개에 비해 19,325개(3.5%) 감소

- 2024년 기준 여성 창업기업의 92.0%, 남성 창업기업의 84.6%가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서비스업 중에서는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이 여성 창업기업 39.4%, 남성 창업기업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산업별 여성 창업 건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의 여성 창업기업 수는 2016년 157,815개에서 2024년 209,779개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여성 창업기업 수가 2016년 10,155개에서 2024년 20,092개로 9,937개 증가

표 III-12 산업별 여성 창업 건수

산업별		2016			2023			2024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1,190,177	551,682	637,829	1,238,617	562,750	673,891	1,182,905 (100.0)	532,357 (100.0)	645,855 (100.0)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10,296	2,558	7,735	14,250	3,990	10,257	14,267 (1.2)	4,221 (0.8)	10,042 (1.6)
제조업	소계(제조업 전체)	58,742	17,314	41,394	37,280	12,046	25,208	35,087 (3.0)	11,557 (2.2)	23,504 (3.6)
	음식료품 및 음료	6,992	3,147	3,840	5,433	2,742	2,691	5,393 (0.5)	2,631 (0.5)	2,761 (0.4)
	섬유 및 가죽	7,972	3,348	4,622	4,639	2,189	2,447	4,341 (0.4)	2,153 (0.4)	2,187 (0.3)
	목재, 가구 및 종이제품	3,665	1,048	2,616	2,373	651	1,722	2,110 (0.2)	639 (0.1)	1,470 (0.2)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473	484	989	782	302	480	813 (0.1)	347 (0.1)	465 (0.1)
	고무 및 화학제품	6,246	2,079	4,162	3,537	1,060	2,474	3,516 (0.3)	1,112 (0.2)	2,399 (0.4)
	기계, 금속	15,544	3,252	12,280	10,273	2,437	7,829	9,348 (0.8)	2,223 (0.4)	7,118 (1.1)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8,117	1,833	6,279	5,178	1,201	3,972	4,777 (0.4)	1,117 (0.2)	3,652 (0.6)
	자동차 및 운송장비	3,307	726	2,579	2,643	617	2,021	2,465 (0.2)	588 (0.1)	1,875 (0.3)
	기타 제조업	5,426	1,397	4,027	2,422	847	1,572	2,324 (0.2)	747 (0.1)	1,577 (0.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6,693	2,714	3,979	31,546	10,415	21,131	32,245 (2.7)	11,242 (2.1)	21,003 (3.3)
건설업		62,200	16,405	45,792	61,514	16,305	45,208	60,497 (5.1)	15,730 (3.0)	44,765 (6.9)
서비스업	소계(서비스업 전체)	1,052,246	512,691	538,929	1,094,027	519,994	572,087	1,040,809 (88.0)	489,607 (92.0)	546,541 (84.6)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848	196	652	690	150	540	792 (0.1)	172 (0.0)	620 (0.1)
	도매 및 소매업	303,493	157,815	145,322	450,194	230,103	218,440	418,280 (35.4)	209,779 (39.4)	204,170 (31.6)
	운수 및 창고업	63,849	10,350	53,489	61,241	8,687	52,544	61,572 (5.2)	8,530 (1.6)	53,030 (8.2)
	숙박 및 음식점업	191,472	111,176	80,274	169,188	90,974	78,190	156,134 (13.2)	84,258 (15.8)	71,860 (11.1)
	정보통신업	22,409	6,184	16,175	44,870	15,362	29,437	40,481 (3.4)	13,881 (2.6)	26,530 (4.1)
	금융 및 보험업	7,070	2,509	4,551	6,557	2,388	4,166	6,876 (0.6)	2,684 (0.5)	4,182 (0.6)
	부동산업	265,827	134,447	131,328	126,685	60,699	65,970	115,778 (9.8)	55,675 (10.5)	60,085 (9.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5,185	10,155	24,951	52,805	19,425	33,253	54,099 (4.6)	20,092 (3.8)	33,868 (5.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1,780	10,011	21,744	43,023	12,274	30,724	44,293 (3.7)	12,895 (2.4)	31,362 (4.9)
	교육 서비스업	35,777	22,855	12,920	44,622	30,849	13,762	44,889 (3.8)	30,025 (5.6)	14,852 (2.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166	2,035	5,131	4,540	1,149	3,391	4,717 (0.4)	1,192 (0.2)	3,524 (0.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5,328	15,330	19,988	27,661	12,013	15,641	25,965 (2.2)	11,184 (2.1)	14,769 (2.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2,042	29,628	22,404	61,951	35,921	26,029	66,933 (5.7)	39,240 (7.4)	27,689 (4.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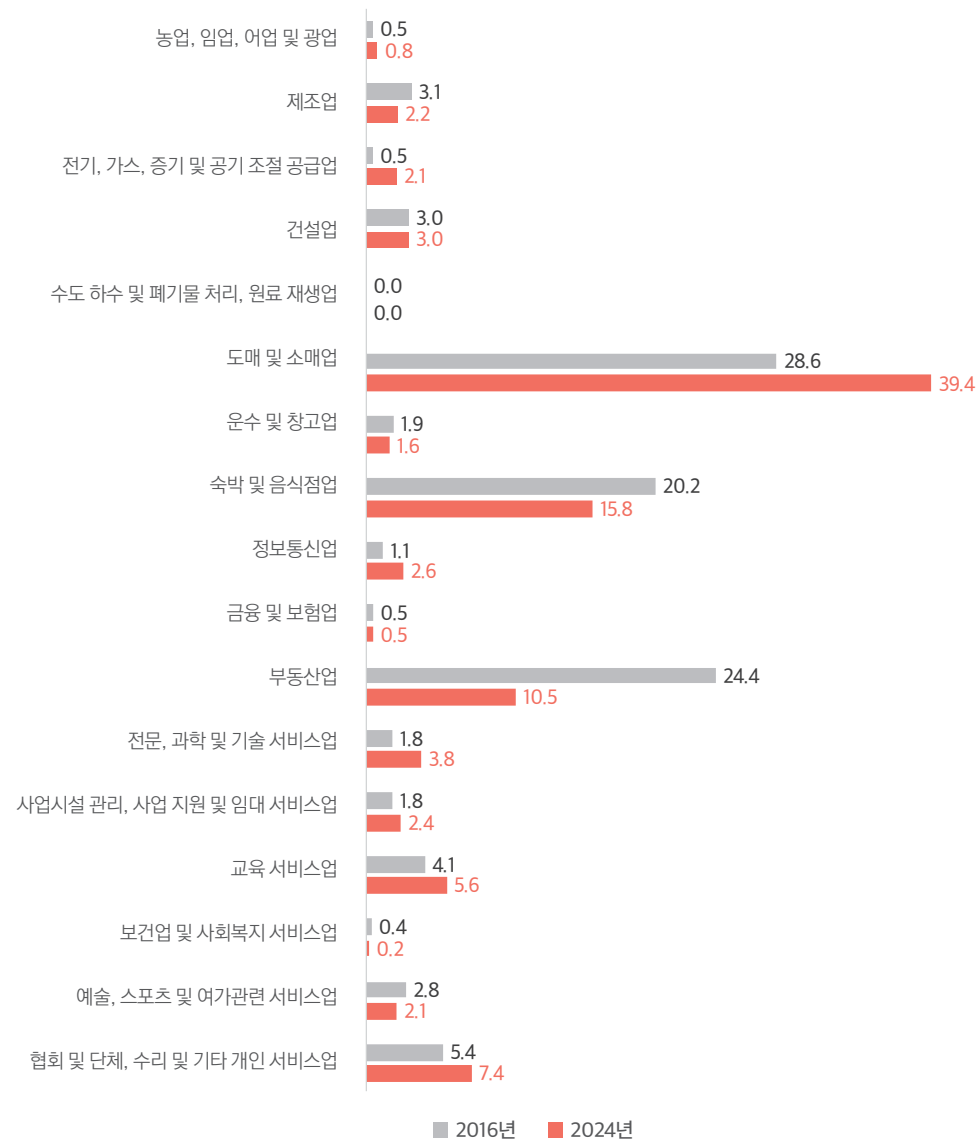
3) 여성기업실태조사의 조사명부는 2021년까지는 전국 사업체 조사 기업체 명부를 사용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기업통계등록부(SBR)를 사용함

○ 2024년 여성 창업기업은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이 39.4%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2016년 28.6% 대비 10.8%p 증가

- 2016년 대비 2024년 부동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여성 창업기업 비중은 각각 13.9%p, 4.4%p 감소한 반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은 각각 2.0%p, 1.5%p 증가

그림 III-6 여성 창업기업의 산업별 비중

(단위: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

다. 여성 중소기업 현황

○ 2023년 여성 중소기업 수는 3,372,665개이며 2020년 대비 421,421개(14.3%) 증가

- 2023년 기준 여성 중소기업의 산업별 비중은 도매 및 소매업(29.5%), 부동산업(19.3%), 숙박 및 음식점업(15.4%) 순임
- 2020년 대비 2023년 전체 여성 중소기업 중 산업별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2.8%p),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0.7%p), 정보통신업(0.5%p) 순임

표 III-13 산업별 여성 중소기업 수

(단위: 개, %)

산업별	2020		2021		2022		2023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전체	2,951,244	100.0	3,136,543	100.0	3,259,211	100.0	3,372,665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20,348	0.7	22,559	0.7	25,231	0.8	27,125	0.8
광업	441	0.0	446	0.0	413	0.0	*	*
제조업	137,872	4.7	148,760	4.7	152,978	4.7	147,878	4.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43,468	1.5	48,830	1.6	54,986	1.7	62,970	1.9
수도,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2,615	0.1	2,707	0.1	2,943	0.1	2,980	0.1
건설업	107,377	3.6	116,105	3.7	123,268	3.8	127,494	3.8
도매 및 소매업	786,908	26.7	864,814	27.6	947,092	29.1	994,606	29.5
운수 및 창고업	62,823	2.1	64,449	2.1	66,690	2.0	67,984	2.0
숙박 및 음식점업	501,296	17.0	513,267	16.4	517,880	15.9	520,285	15.4
정보통신업	37,231	1.3	45,481	1.5	53,465	1.6	62,011	1.8
금융 및 보험업	19,537	0.7	21,468	0.7	22,207	0.7	22,183	0.7
부동산업	666,699	22.6	683,722	21.8	644,362	19.8	651,611	19.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5,269	2.2	77,834	2.5	88,771	2.7	97,998	2.9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3,483	1.8	54,027	1.7	56,992	1.7	59,249	1.8
교육 서비스업	150,092	5.1	163,888	5.2	177,754	5.5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7,329	0.6	18,317	0.6	19,836	0.6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4,494	2.2	66,554	2.1	68,742	2.1	70,066	2.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13,962	7.2	223,315	7.1	235,601	7.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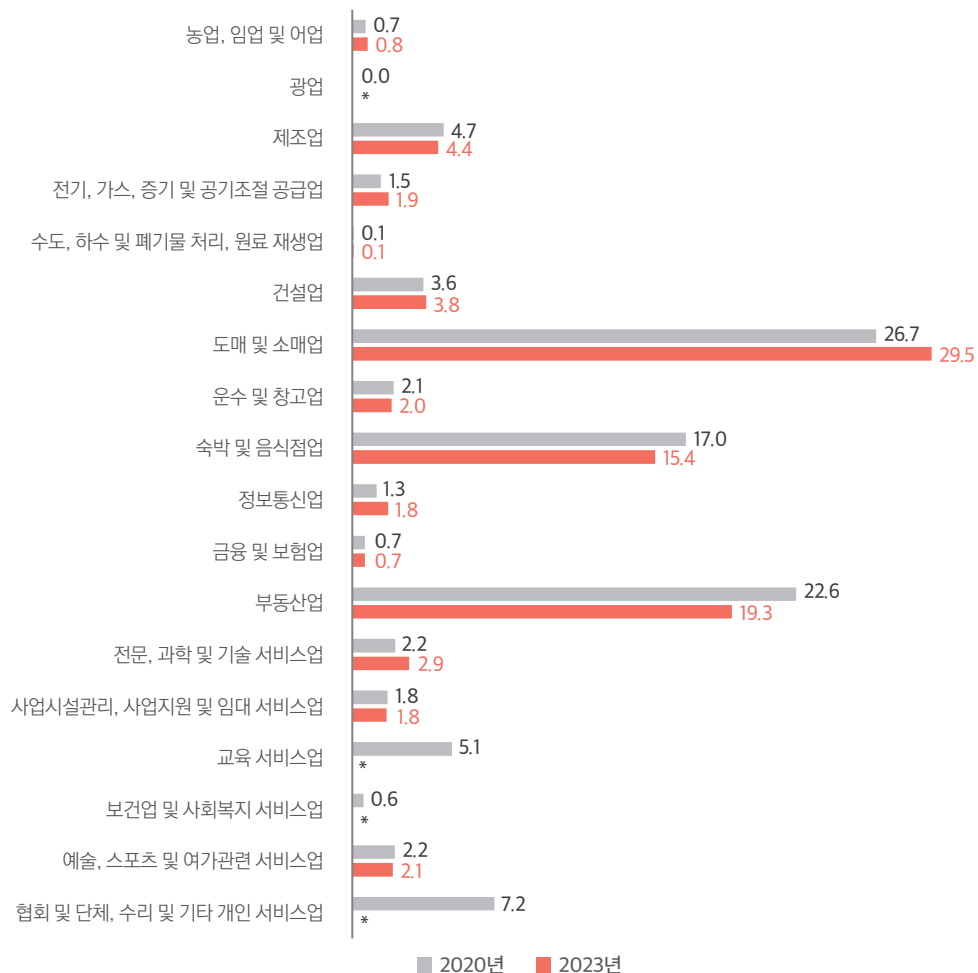
주: 1) 3 미만의 수치 또는 합계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수치는 정보보호를 위해 * 처리
2)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 중분류 기준으로 집계 및 제공됨
3) 여성 중소기업 수는 대표자가 여성인 기업으로 기업체 단위로 작성되어 사업체 단위로 작성되는 통계 결과와는 상이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 2023년 전체 여성 중소기업 중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2020년 26.7%에서 2023년 29.5%로 2.8%p 증가

- 2020년 대비 2023년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여성 중소기업 비중은 각각 3.3%p, 1.6%p 감소한 반면,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은 각각 0.7%p, 0.5%p, 0.4%p 증가

그림 III-7 산업별 여성경영인 중소기업 비율

(단위: %)



주: 3 미만의 수치 또는 합계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수치는 정보보호를 위해 * 처리
2023년부터 산업중분류별 여성 경영인 기업수는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집계됨. 이에 따라 이전 연도통계도 중소기업 기준으로 소급 적용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라.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현황

○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2024년 기준 전국 238개소 설치·운영 중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2007년 9개소로 시작된 이후 매년 꾸준히 확충되어, 17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으며, 시·도별로 최소 9개에서 최대 19개까지 창업 보육실을 운영 중
- 2007년 중앙에서 처음 설치된 이후, 2008년 부산과 경기도가 가장 먼저 보육실을 설치하였고, 2010년 운영을 시작한 인천이 현재 19개의 창업 보육실을 갖추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육실을 운영 중

표 III-14 지역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개소 현황('24.12.31. 기준)

(단위: 개)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경기북부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제주
설립연도	-	'17	'08	'09	'21	'10	'11	'11	'12	'08	'17	'09	'13	'10	'14	'09	'09	'12
창업보육실	238	16	10	16	12	19	9	15	16	11	15	13	9	16	10	12	18	1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자료

마. 여성 벤처기업 현황

○ 2024년 기준 여성 벤처기업 수는 4,989개로, 전체 벤처기업 38,216개 중 13.1%를 차지

- 유형별 여성 벤처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혁신성장 유형이 6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예비벤처는 0.6%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임
- 특히 여성 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유형 비중(65.7%)은 전체 벤처기업(63.7%)보다 2.0%p 높음

표 III-15 벤처기업 대표자 성별 현황

(단위: 개)

연도	전체	여성	남성
2014	29,910	2,393	27,517
2015	31,260	2,566	28,694
2016	33,360	2,923	30,437
2017	35,282	3,277	32,005
2018	36,820	3,504	33,316
2019	37,008	3,579	33,429
2020	39,511	3,950	35,561
2021	38,319	4,104	34,215
2022	35,123	4,023	31,100
2023	40,081	4,842	35,239
2024	38,216	4,989	33,227
증감	'23년 대비	-1,865	-2,012
	'14년 대비	8,306	5,71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자료

그림 III-8 여성 벤처기업 비중 추이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자료

표 III-16 유형별 여성 벤처기업 현황('24.12.31. 기준)

(단위: 개, %)										
구분	벤처투자		연구개발		혁신성장		예비벤처		합계	
전체 벤처기업 수	7,670	20.1	5,939	15.5	24,358	63.7	249	0.7	38,216	100.0
여성 벤처기업 수	1,055	21.1	626	12.5	3,279	65.7	29	0.6	4,989	100.0

주: 벤처기업 유형 중 벤처투자유형은 ①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서 ②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가 5천만 원 이상이고, ③ 자본금 중 투자금액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단, 문화콘텐츠는 7% 이상)인 기업을 의미, 연구개발유형은 ①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이며, ②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을 보유하고, ③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합계가 5천만 원 이상이며, ④ 직전 4개 분기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5% 이상(창업 3년 미만은 적용 제외)인 기업을 의미, 혁신성장유형은 ①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서 ② 사업의 성장성 평가가 우수한 기업을 뜻함, 예비벤처유형은 ①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로서 ②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가 우수한 경우를 의미(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확인기관, 2024. 11. 「벤처기업확인제도 가이드북」, pp.22~2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자료

○ 2024년 여성 벤처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이 54.0%로 가장 많고 농·어·임광업이 0.3%로 가장 적음

- 여성 벤처기업의 도소매업 비중은 6.5%로, 전체 벤처기업(4.2%)보다 2.3%p 높음

표 III-17 업종별 여성 벤처기업 현황('24.12.31. 기준)

(단위: 개, %)								
구분	제조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운수	도소매업	농·어·임광업	기타	합계
전체 벤처기업 수	21,484	3,373	1,510	919	1,621	180	9,129	38,216
	56.2	8.8	4.0	2.4	4.2	0.5	23.9	100.0
여성 벤처기업 수	2,693	416	183	144	322	13	1,218	4,989
	54.0	8.3	3.7	2.9	6.5	0.3	24.4	1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자료

바. 벤처기업 여성고용 현황

○ 2023년 기준, 벤처기업 총 종사자 934,708명 중 여성 종사자는 269,405명으로 28.8%이며, 한 기업당 평균 종사자 수는 여성 7.3명, 남성 18.0명임

- 2015년 대비 2023년 벤처기업 여성 종사자 수는 72,392명(36.7%) 증가하였으며, 총 종사자 중 여성의 비율은 27.0%에서 28.8%로 1.8%p 소폭 상승
- 2015년과 비교하여 남녀 모두 비정규직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벤처기업 여성 종사자 중 비정규직 종사자 비율은 2015년 1.5%에서 5.0%로 3.5%p 증가

표 III-18 성별·고용형태별 벤처기업 종사자 수

연도			구분			전체	여성	남성
2015	총 종사자 수	소계				728,424	197,013	531,411
		기업당 평균				23.3	6.3	17.0
	정규직 종사자 수	소계				717,670	193,998	523,672
		기업당 평균				23.0	6.2	16.8
	비정규직 종사자 수	소계				10,754	3,015	7,739
		기업당 평균				0.3	0.1	0.2
2020	총 종사자 수	소계				817,297	240,426	576,871
		기업당 평균				20.9	6.1	14.8
	정규직 종사자 수	소계				801,812	233,890	567,922
		기업당 평균				20.5	6.0	14.5
	비정규직 종사자 수	소계				15,485	6,536	8,949
		기업당 평균				0.4	0.2	0.2
2022	총 종사자 수	소계				808,824	248,479	560,345
		기업당 평균				25.1	7.7	17.4
	정규직 종사자 수	소계				783,239	238,615	544,624
		기업당 평균				24.3	7.4	16.9
	비정규직 종사자 수	소계				25,585	9,864	15,721
		기업당 평균				0.8	0.3	0.5
2023	총 종사자 수	소계				934,708	269,405	665,304
		기업당 평균				25.3	7.3	18.0
	정규직 종사자 수	소계				896,445	255,964	640,481
		기업당 평균				24.3	6.9	17.3
	비정규직 종사자 수	소계				38,263	13,440	24,823
		기업당 평균				1.0	0.4	0.7

주: 성별인력 현황은 2015년부터 제공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04장

여성의 일·생활 균형



1.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현황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 현황

4. 어린이집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5. 초등돌봄교실 참여 현황

6.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황

04장 여성의 일·생활 균형



1.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 2024년 여성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129만 1천 명으로 전체 여성 임금근로자의 12.6%를 차지

- 남성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수는 203만 6천 명으로 17.1%를 차지하였음
-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은 여성과 남성 임금근로자 모두 2021년 정점을 기록한 후 정체 및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뚜렷한 감소 추세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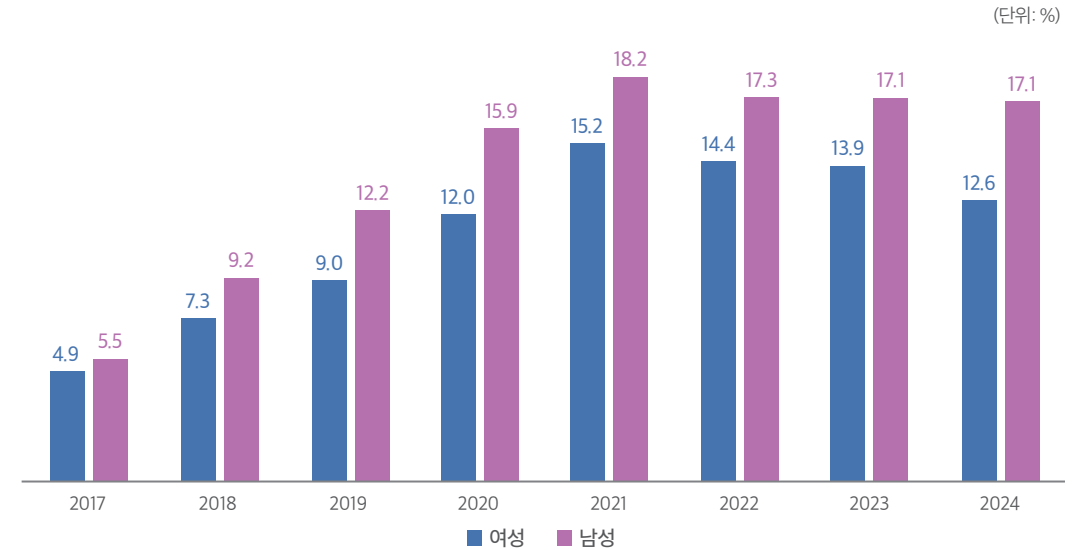
표 IV-1 성별 유연근무제 활용 추이

(단위: 천 명,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임금근로자	20,006	20,045	20,559	20,446	20,992	21,724	21,954	22,143
	유연근무제 활용	1,041	1,675	2,215	2,898	3,534	3,475	3,430	3,328
	비중	5.2	8.4	10.8	14.2	16.8	16.0	15.6	15.0
여성	임금근로자	8,818	8,874	9,163	9,085	9,476	9,788	10,027	10,235
	유연근무제 활용	429	645	827	1,093	1,441	1,406	1,389	1,291
	비중	4.9	7.3	9.0	12.0	15.2	14.4	13.9	12.6
남성	임금근로자	11,188	11,171	11,396	11,361	11,517	11,936	11,927	11,908
	유연근무제 활용	612	1,030	1,387	1,805	2,092	2,069	2,041	2,036
	비중	5.5	9.2	12.2	15.9	18.2	17.3	17.1	17.1

주: 비중은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을 의미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그림 IV-1 성별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 추이



주: 비중은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을 의미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2024년 여성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 유형은 시차출퇴근제(36.6%), 탄력적 근무제(27.6%), 선택적 근무시간제(2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4년 남성의 경우 유연근무제 활용 유형은 시차출퇴근제(34.0%), 탄력적 근무제(30.7%), 선택적 근무시간제(2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2 성별 유연근무제 활용 유형

(단위: 천 명, %)

구분	2023				2024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
전체	1,389	100.0	2,041	100.0	1,291	100.0	2,036	100.0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144	10.4	184	9.0	170	13.2	230	11.3
시차출퇴근제	501	36.1	629	30.8	472	36.6	693	34.0
선택적 근무시간제	347	25.0	561	27.5	324	25.1	522	25.6
재택 및 원격 근무제	264	19.0	419	20.5	200	15.5	329	16.2
탄력적 근무제	371	26.7	699	34.2	356	27.6	626	30.7
기타 유형	134	9.6	182	8.9	104	8.0	206	10.1

주: 중복 응답 포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2024년 산업별 여성의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은 정보통신업(38.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37.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9.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24.9%), 금융 및 보험업(22.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남성도 동일하게 정보통신업이 45.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7.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5.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26.7%), 금융 및 보험업(23.3%) 순으로 나타남

표 IV-3 성별·산업별 유연근무제 활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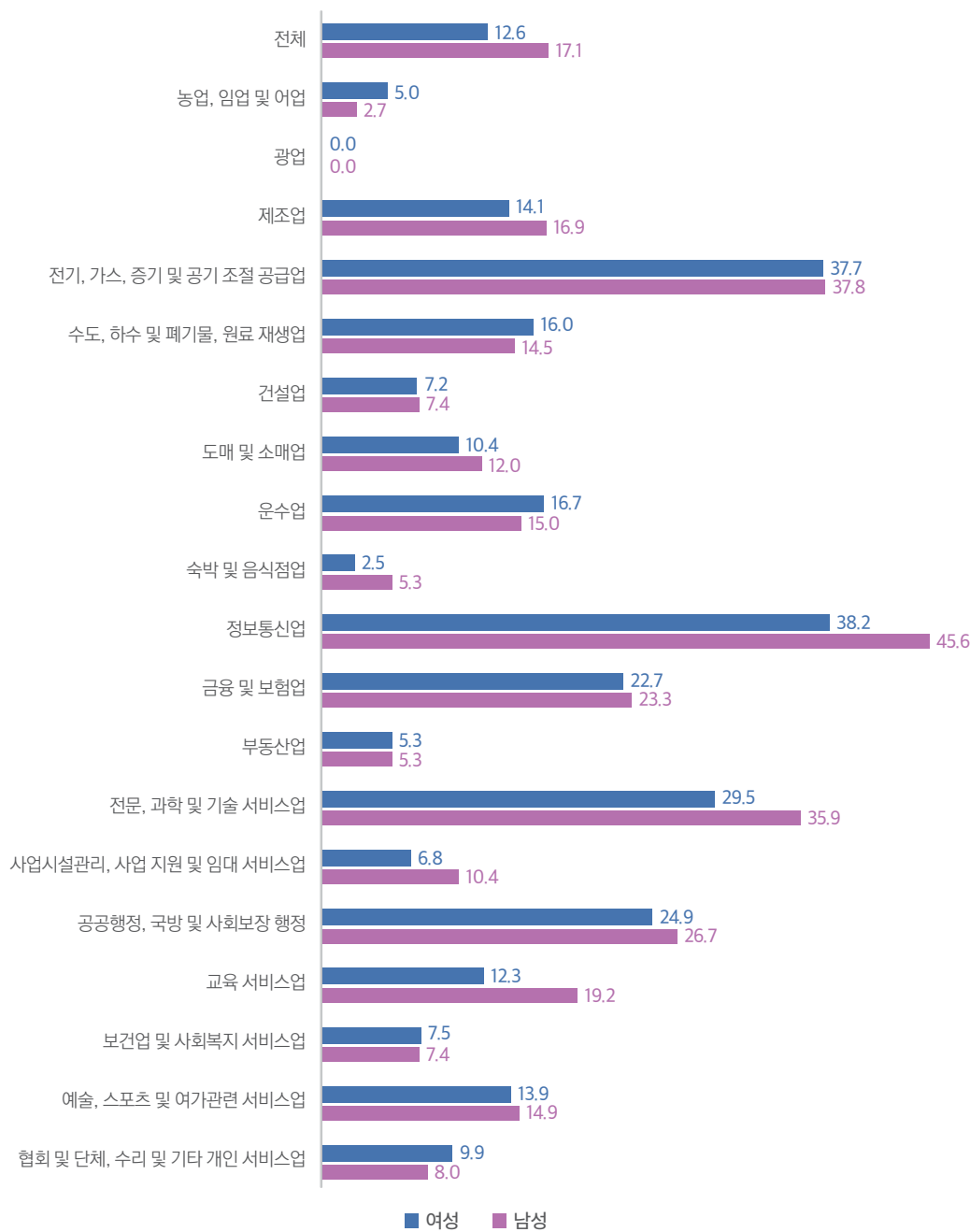
(단위: %)

산업별	2023			2024		
	소계	여성	남성	소계	여성	남성
전체	15.6	13.9	17.1	15.0	12.6	17.1
농업, 임업 및 어업	4.3	3.6	4.8	3.5	5.0	2.7
광업	0.0	0.0	0.0	0.0	0.0	0.0
제조업	16.9	14.1	18.1	16.1	14.1	16.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8.1	36.5	38.5	37.8	37.7	37.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원료 재생업	8.7	13.6	7.8	14.8	16.0	14.5
건설업	6.9	9.6	6.5	7.4	7.2	7.4
도매 및 소매업	10.8	10.7	10.9	11.2	10.4	12.0
운수업	17.3	18.2	17.1	15.3	16.7	15.0
숙박 및 음식점업	5.8	4.7	7.8	3.5	2.5	5.3
정보통신업	40.1	37.1	41.6	43.1	38.2	45.6
금융 및 보험업	27.2	28.4	25.6	22.9	22.7	23.3
부동산업	4.9	4.8	5.0	5.3	5.3	5.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4.1	29.1	37.1	33.4	29.5	35.9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8.4	8.4	8.5	8.8	6.8	10.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7.6	29.0	26.5	25.9	24.9	26.7
교육 서비스업	16.2	14.7	18.9	14.5	12.3	19.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0	9.0	9.3	7.5	7.5	7.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8.2	16.2	20.2	14.6	14.3	14.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	8.2	10.3	8.8	9.9	8.0

주: 활용률은 산업별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을 의미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그림 IV-2 2024년 성별·산업별 유연근무제 활용률

(단위: %)



주: 활용률은 산업별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을 의미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2024년 직업별 여성의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은 관리자가 28.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무 종사자(22.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7.5%) 순으로 나타남

• 남성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31.0%), 관리자(24.4%), 사무 종사자(23.9%) 순으로 나타남

표 IV-4 성별·직업별 유연근무제 활용률

직업별	2023			2024		
	소계	여성	남성	소계	여성	남성
전체	15.6	13.9	17.1	15.0	12.6	17.1
관리자	22.4	20.1	22.8	25.2	28.8	24.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5.5	18.6	32.0	24.5	17.5	31.0
사무 종사자	23.1	22.2	24.1	22.9	22.0	23.9
서비스 종사자	9.8	7.6	14.4	8.0	5.6	13.6
판매 종사자	11.0	12.0	9.5	8.0	7.4	9.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6.6	0.0	18.9	4.9	8.9	4.1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6.9	8.4	6.7	8.6	6.0	8.9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0.1	9.3	10.3	10.1	10.4	10.0
단순노무 종사자	3.9	3.8	4.0	3.1	2.8	3.5

주: 활용률은 직종별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을 의미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은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나, 2024년 기준 여성의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은 300인 이상(32.1%), 100~299인(25.0%), 30~99인(16.8%), 10~29인(13.9%), 5~9인(2.6%), 1~4인(1.2%)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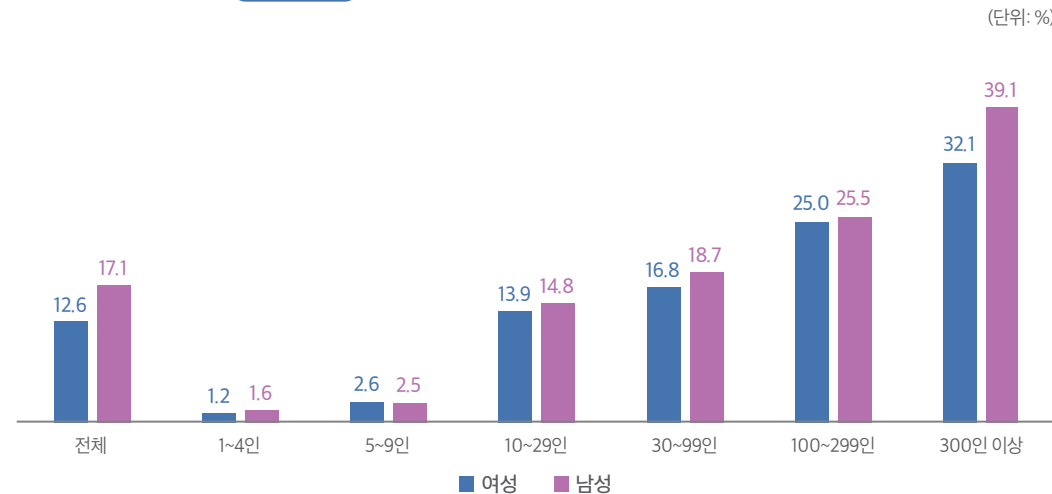
• 남성 근로자 역시 2024년 300인 이상 사업체의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은 39.1%인 반면, 1~4인 사업체와 5~9인 사업체는 각각 1.6%와 2.5%로 나타남

표 IV-5 성별·사업장 규모별 유연근무제 활용률

사업장 규모별	2023			2024		
	소계	여성	남성	소계	여성	남성
전체	15.6	13.9	17.1	15.0	12.6	17.1
1~4인	2.0	1.6	2.4	1.4	1.2	1.6
5~9인	2.7	2.6	2.7	2.6	2.6	2.5
10~29인	14.7	15.5	13.9	14.4	13.9	14.8
30~99인	18.6	19.0	18.3	17.8	16.8	18.7
100~299인	25.5	23.3	26.8	25.3	25.0	25.5
300인 이상	39.3	36.0	41.1	36.6	32.1	39.1

주: 활용률은 사업장 규모별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을 의미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그림 IV-3 2024년 성별·사업장 규모별 유연근무제 활용률



주: 활용률은 사업장 규모별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을 의미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2024년 유연근무제 미활용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를 희망하는 여성 근로자는 49.3%로 나타남

• 여성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 희망 유형은 선택적 근무시간제(36.1%), 탄력적 근무제(26.4%), 근로시간 단축근무제(25.5%) 순이었음

표 IV-6 성별 유연근무제 활용 희망 여부 및 유형

구분	2023				2024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미활용 근로자	비율	미활용 근로자	비율	미활용 근로자	비율	미활용 근로자	비율
전체	8,637	100.0	9,887	100.0	8,944	100.0	9,872	100.0
유연근무제 활용 희망	4,244	49.1	4,466	45.2	4,410	49.3	4,632	46.9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1,010	23.8	1,094	24.5	1,124	25.5	1,158	25.0
시차출퇴근제	854	20.1	861	19.3	915	20.7	926	20.0
선택적 근무시간제	1,508	35.5	1,463	32.7	1,591	36.1	1,484	32.0
재택 및 원격 근무제	794	18.7	621	13.9	750	17.0	654	14.1
탄력적 근무제	1,233	29.0	1,498	33.5	1,165	26.4	1,496	32.3
기타 유형	297	7.0	382	8.6	309	7.0	415	9.0
유연근무제 활용 비희망	4,393	50.9	5,421	54.8	4,534	50.7	5,240	53.1

주: 유연근무제 활용 희망 유형은 중복 응답으로, 괄호의 총합은 100%가 아님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현황

○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 수는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부터 증가 추세로 돌아섰으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511명 (6.2%) 증가한 77,718명으로 나타남

○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는 2023년을 제외하면 2024년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전년 대비 6,527명(5.2%) 증가한 132,535명으로 나타남

-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 여성은 90,706명으로 전년 대비 34명(0.04%) 증가하였고 남성은 41,829명으로 전년 대비 6,493명(18.4%) 증가
- 남성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는 2024년 전체 수급자의 31.6%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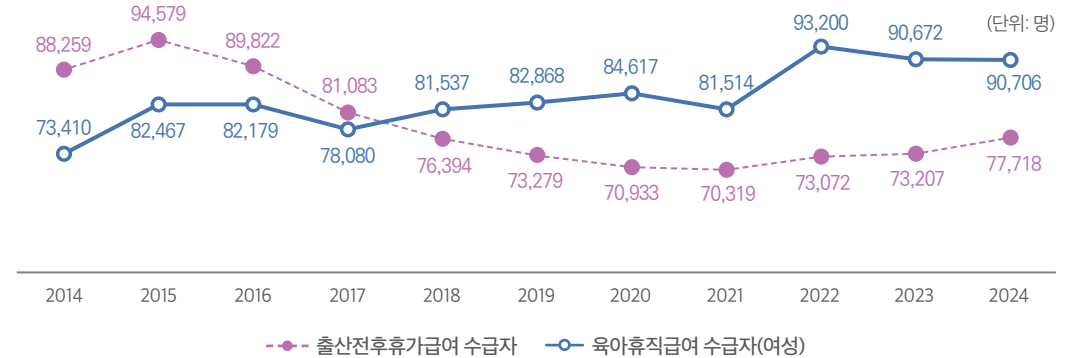
표 IV-7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

(단위: 명)

연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 수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		
			전체	여성	남성
2014		88,259	76,831	73,410	3,421
2015		94,579	87,339	82,467	4,872
2016		89,822	89,795	82,179	7,616
2017		81,083	90,122	78,080	12,042
2018		76,394	99,199	81,537	17,662
2019		73,279	105,165	82,868	22,297
2020		70,933	112,038	84,617	27,421
2021		70,319	110,555	81,514	29,041
2022		73,072	131,084	93,200	37,884
2023		73,207	126,008	90,672	35,336
2024		77,718	132,535	90,706	41,829
증감	’23년 대비	4,511	6,527	34	6,493
	’14년 대비	-10,541	55,704	17,296	38,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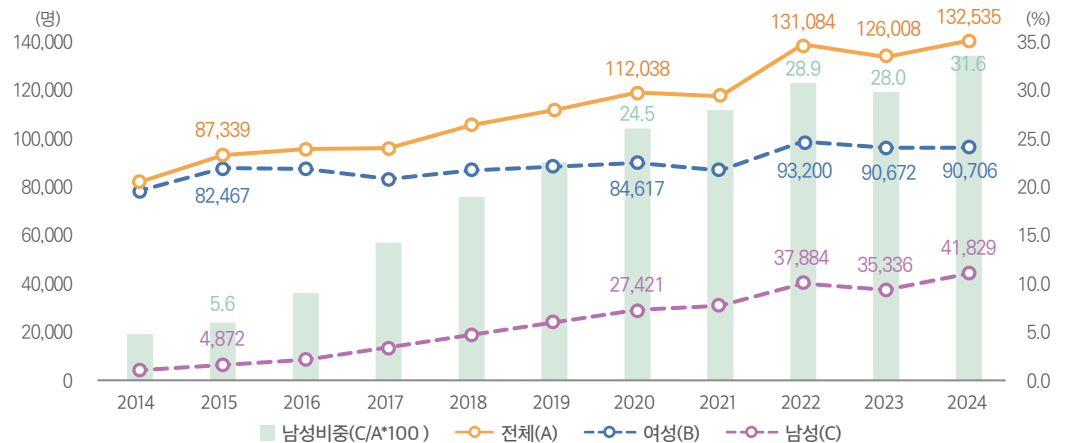
주: 공무원, 교직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해석에 유의 바람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그림 IV-4 여성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추이



주: 공무원, 교직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해석에 유의 바람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그림 IV-5 성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추이



주: 공무원, 교직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해석에 유의 바람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를 보면, 2024년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여성이 36.1%(전체 여성 중), 남성이 52.6%(전체 남성 중)를 차지

표 IV-8 성별·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

사업장 규모별	2023			2024		
	소계	여성	남성	소계	여성	남성
전체	126,008	90,672	35,336	132,535	90,706	41,829
1~9인	22,382	18,506	3,876	23,825	18,565	5,260
10~29인	16,697	14,041	2,656	18,384	14,710	3,674
30~99인	16,914	12,906	4,008	17,919	13,180	4,739
100~299인	16,717	11,501	5,216	17,655	11,519	6,136
300~999인	17,323	11,478	5,845	17,947	11,144	6,803
1,000인 이상	35,975	22,240	13,735	36,797	21,581	15,216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 현황

○ 2024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수는 여성은 23,357명으로 전년 대비 2,584명(12.4%) 증가하였고, 남성은 3,270명으로 전년 대비 855명(35.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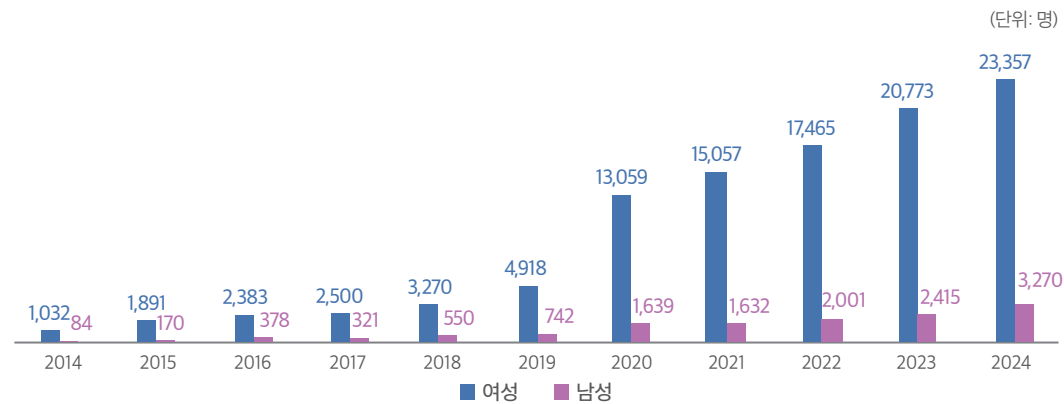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수는 2019년 육아휴직과 별개로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이후 수급자 수가 지속 증가
- 2024년 전체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2.3%로 육아휴직에 비해 남성의 사용률이 낮은 편임

표 IV-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현황

(단위: 명)			
연도	전체	여성	남성
2014	1,116	1,032	84
2015	2,061	1,891	170
2016	2,761	2,383	378
2017	2,821	2,500	321
2018	3,820	3,270	550
2019	5,660	4,918	742
2020	14,698	13,059	1,639
2021	16,689	15,057	1,632
2022	19,466	17,465	2,001
2023	23,188	20,773	2,415
2024	26,627	23,357	3,270
증감	'23년 대비	3,439	855
	'14년 대비	25,511	3,186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그림 IV-6 성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추이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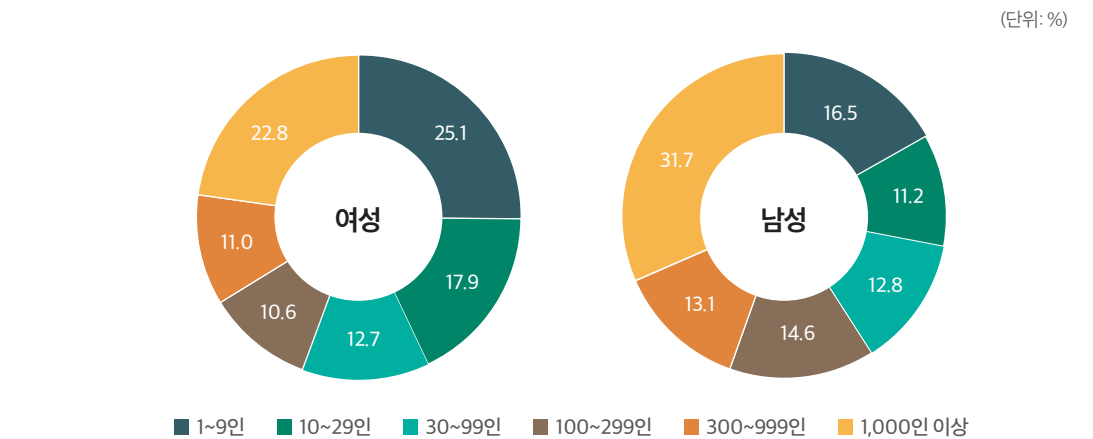
○ 사업장 규모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수를 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비중은 여성이 33.8%(전체 여성 중), 남성이 44.8%(전체 남성 중)로, 육아휴직에 비해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10 성별·사업장 규모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수

사업장 규모별	2023			2024		
	소계	여성	남성	소계	여성	남성
전체	23,188	20,773	2,415	26,627	23,357	3,270
1~9인	6,210	5,801	409	6,380	5,839	541
10~29인	4,029	3,730	299	4,539	4,172	367
30~99인	2,733	2,427	306	3,382	2,963	419
100~299인	2,420	2,110	310	2,966	2,487	479
300~999인	2,510	2,172	338	2,995	2,567	428
1,000인 이상	5,286	4,533	753	6,363	5,327	1,036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그림 IV-7 2024년 성별·사업장 규모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분포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4. 어린이집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 2024년 기준 전국 어린이집 수는 27,387개로, 전년 대비 1,567개 감소, 2024년 기준 보육아동 수는 941,303명으로, 전년 대비 70,510명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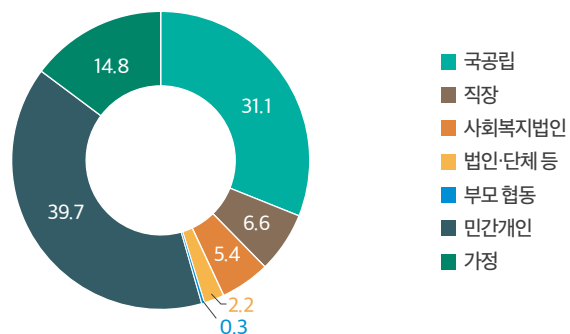
- 기관 유형별 분포를 보면 가정어린이집(35.0%), 민간·개인어린이집(29.9%), 국공립어린이집(23.8%), 직장어린이집(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보육아동 수를 기준으로 보면 민간·개인어린이집이 39.7%로 가장 높고, 국공립어린이집(31.1%), 가정어린이집(14.8%), 직장어린이집(6.6%) 등이 그 뒤를 이음

표 IV-11 전국 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 유형	2023				2024			
	어린이집 수		보육아동 수		어린이집 수		보육아동 수	
	개소	비율	현원	비율	개소	비율	현원	비율
전체	28,954	100.0	1,011,813	100.0	27,387	100.0	941,303	100.0
국공립	6,187	21.4	286,487	28.3	6,521	23.8	293,049	31.1
직장	1,308	4.5	61,570	6.1	1,305	4.8	61,741	6.6
사회복지법인	1,206	4.2	56,812	5.6	1,171	4.3	50,377	5.4
법인·단체 등	551	1.9	24,010	2.4	507	1.9	20,778	2.2
부모 협동	124	0.4	2,851	0.3	116	0.4	2,662	0.3
민간·개인	8,886	30.7	420,219	41.5	8,181	29.9	373,524	39.7
가정	10,692	36.9	159,864	15.8	9,586	35.0	139,172	14.8

자료: 교육부, 「보육통계(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그림 IV-8 2024년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아동 비율



자료: 교육부, 「보육통계(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 2024년 기준 전체 어린이집 중 직장어린이집 비중은 4.8%로 전년 대비 0.3%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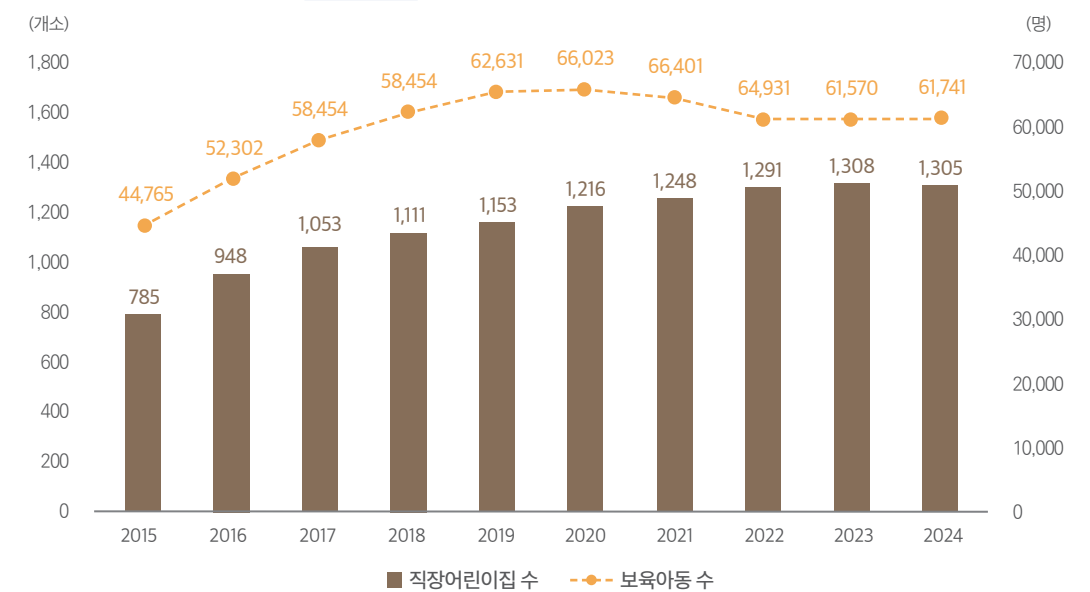
- 2024년 직장어린이집 수는 1,305개로 나타났으며 보육아동 수는 61,741명
- 전체 보육아동 수에서 직장어린이집 보육아동의 비중은 6.6%로 전년 대비 0.5%p 증가

표 IV-12 직장어린이집 수

연도	어린이집 수		보육아동 수	
	개소	비중	현원	비중
2015	785	1.8	44,765	3.1
2016	948	2.3	52,302	3.6
2017	1,053	2.6	58,454	4.0
2018	1,111	2.8	62,631	4.4
2019	1,153	3.1	66,023	4.8
2020	1,216	3.4	66,401	5.3
2021	1,248	3.8	64,931	5.5
2022	1,291	4.2	61,650	5.6
2023	1,308	4.5	61,570	6.1
2024	1,305	4.8	61,741	6.6

주: 비중은 전체 어린이집 중 직장어린이집 비중을 의미
자료: 교육부, 「보육통계(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그림 IV-9 직장어린이집 및 보육아동 수 추이



자료: 교육부, 「보육통계(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 2024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643개로 전년에 비해 0.2%(4개) 증가하였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은 93.9%로 전년 대비 0.8%p 증가

표 IV-13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체의 보육시설 설치 비율

연도	의무사업장	이행	설치		미이행
			설치	위탁	
2015	1,143	52.9	50.5	2.4	47.1
2016	1,153	81.5	63.2	18.3	18.5
2017	1,253	86.7	67.0	19.7	13.3
2018	1,389	90.1	68.9	21.2	9.9
2019	1,445	90.2	68.3	21.9	9.8
2020	1,432	90.9	68.4	22.4	9.1
2021	1,486	90.9	68.4	22.5	9.1
2022	1,602	91.5	67.9	23.6	8.5
2023	1,639	93.1	68.3	24.8	6.9
2024	1,643	93.9	65.9	28.0	6.1

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설치 의무 위반 시 명단 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수는 2018년 65,248가구에서 2024년 118,126가구로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인 감소를 제외하면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 2024년 기준 종일제 서비스(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대상) 이용가구는 1,155가구로 나타났으며, 시간제 서비스 이용가구는 70,021가구, 단기서비스와 기관연계서비스 등 기타 서비스 이용가구는 46,950가구로 나타남

표 IV-14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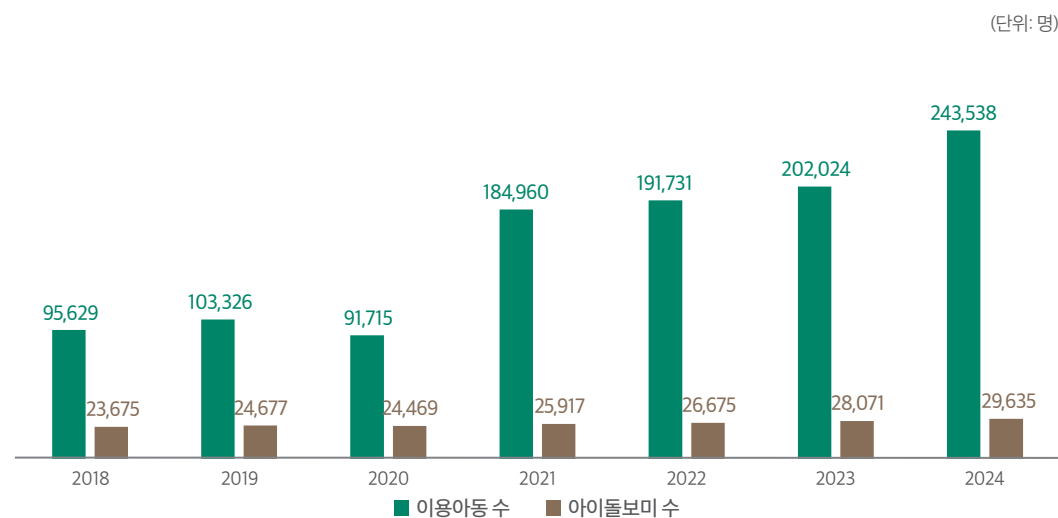
연도	이용가구	가구별 월평균 이용시간		
		시간제	종일제	기타
2018	65,248	60,710	4,538	-
2019	70,485	66,783	3,702	-
2020	59,663	56,525	3,138	-
2021	71,789	57,454	2,617	11,718
2022	78,212	61,138	2,760	14,314
2023	86,100	66,515	1,890	17,695
2024	118,126	70,021	1,155	46,950

주: 기타는 일시연계, 기관연계,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인력을 의미. 가구별 월평균 이용시간은 시간제기본형 기준
자료: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아동 수 및 아이돌보미 수 증가 추세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아동 수는 2023년 202,024명에서 2024년 243,538명으로 20.5% 증가하였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수 역시 2023년 28,071명에서 2024년 29,635명으로 증가

그림 IV-10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아동 수 및 아이돌보미 수 추이



자료: 성평등가족부 제공자료

5. 초등돌봄교실 참여 현황

○ 초등돌봄교실 수와 이용 인원 수 꾸준히 증가

- 돌봄교실 수는 2023년 15,147개에서 2024년 15,495개로 348개 증가하였으며, 이용 인원 수는 2023년 300,535명에서 2024년 314,647명으로 14,112명 증가

표 IV-15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이용 현황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돌봄교실 수	11,980	12,398	13,910	14,278	14,774	14,970	15,147	15,495
이용 인원	245,303	261,287	290,358	256,213	283,818	292,068	300,535	314,647

자료: 교육부 제공자료

6.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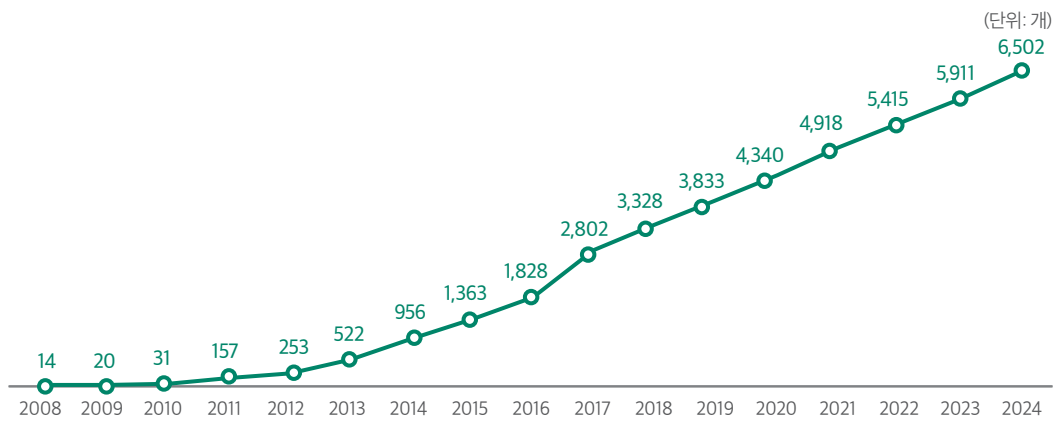
○ 2008년부터 시작된 가족친화인증제를 통해, 2024년 총 6,502개의 기업·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그중 중소기업이 4,552개로 70.0%를 차지

표 IV-16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현황

연도	전체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기업·기관수	비율	기업·기관수	비율	기업·기관수	비율
2008	14	1	7.1	4	28.6	9	64.3
2009	20	6	30.0	6	30.0	8	40.0
2010	31	9	29.0	11	35.5	11	35.5
2011	157	49	31.2	43	27.4	65	41.4
2012	253	76	30.0	65	25.7	112	44.3
2013	522	183	35.1	144	27.6	195	37.4
2014	956	428	44.8	223	23.3	305	31.9
2015	1,363	702	51.5	258	18.9	403	29.6
2016	1,828	992	54.3	276	15.1	560	30.6
2017	2,802	1,596	57.0	335	12.0	871	31.1
2018	3,328	2,028	60.9	364	10.9	936	28.1
2019	3,833	2,445	63.8	408	10.6	980	25.6
2020	4,340	2,840	65.4	455	10.5	1,045	24.1
2021	4,918	3,317	67.4	520	10.6	1,081	22.0
2022	5,415	3,706	68.4	591	10.9	1,118	20.6
2023	5,911	4,110	69.5	668	11.3	1,133	19.2
2024	6,502	4,552	70.0	784	12.1	1,166	17.9

자료: 성평등가족부 제공자료

그림 IV-11 가족친화인증기업 수 추이



자료: 성평등가족부 제공자료

05장



여성의 근로여건 현황

- 1. 임금
- 2. 근로시간
- 3. 사회보험

05 장 여성의 근로여건 현황⁴⁾



1. 임금

○ 2024년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20,363원, 시간당 임금의 남녀 성비는 70.9%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전년대비, 0.2%p 하락)

- 2024년 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월임금 총액은 3,541천 원으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1,489천 원)의 약 2.4배 수준이며,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여성 근로자가 22,670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15,807원) 약 1.4배 많은 수준임
- 전년 대비 여성 근로자의 월임금 총액은 68천 원, 시간당 임금은 1,861원 상승하였으며, 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경우 월임금 총액은 132천 원, 시간당 임금은 2,465원 상승함
- 10년 전(2014년) 대비 여성 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은 926천 원, 시간당 임금은 7,863원 높아졌으며, 정규직 여성의 경우 월 임금 총액 1,210천 원, 시간당 임금 8,898원 높아짐
-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경우 전년 대비 월 임금 총액은 14천 원, 시간당 임금은 863원 상승하였고, 10년 전 대비 월 임금총액은 422천원, 시간당 임금은 5,989원 높아짐

표 V-1 성별·고용형태별 평균 임금

(단위: 월 임금총액-천 원, 시간당 임금-원, 임금성비-%, 임금성비증감 -%p)

연도	성별	전체 근로자			정규 근로자			비정규 근로자		
		월 임금 총액	시간당 임금	임금 성비	월 임금 총액	시간당 임금	임금 성비	월 임금 총액	시간당 임금	임금 성비
2014	전체	2,700	16,701		3,151	18,426		1,333	11,463	
	여성	1,925	12,500	64.1	2,331	13,772	65.4	1,067	9,818	74.1
	남성	3,218	19,505		3,613	21,054		1,620	13,243	
2019	전체	3,138	20,573		3,612	22,193		1,643	15,472	
	여성	2,371	16,358	69.4	2,801	17,565	69.9	1,325	13,417	76.5
	남성	3,682	23,566		4,126	25,127		1,964	17,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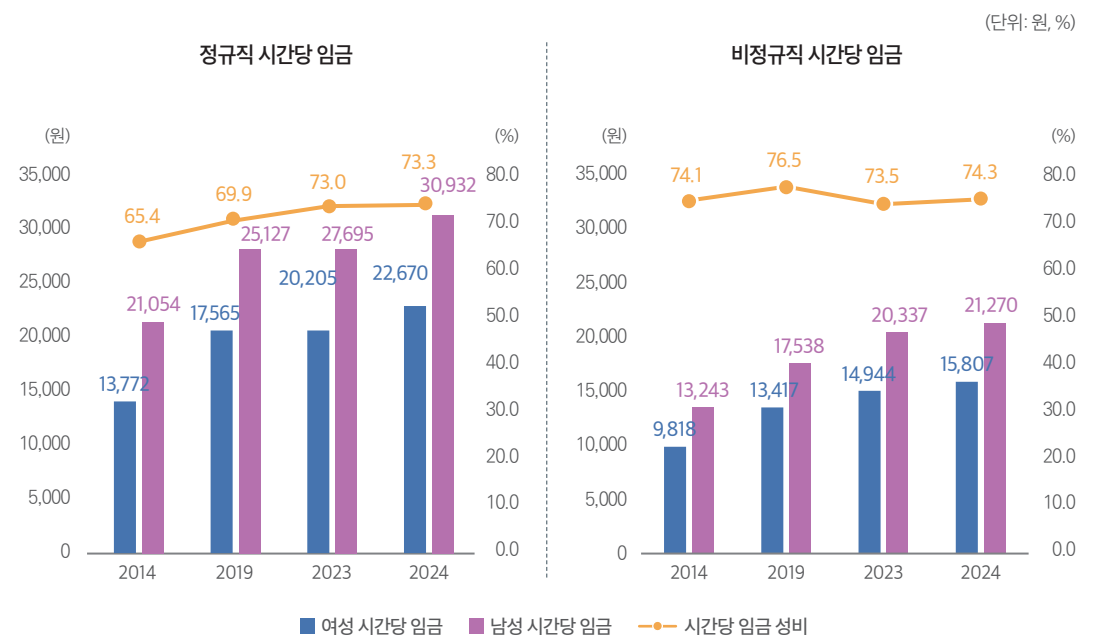
4) 본 장은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중 특수형태 근로자를 제외한 표본에 대한 요약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포함되는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또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일부 업종("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가구나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개인경영 농림어업")을 조사에서 제외하고 있음. 본 장의 분석 결과는 이들 업종에 관한 사항은 반영하지 않고 있음

연도	성별	전체 근로자			정규 근로자			비정규 근로자			
		월 임금 총액	시간당 임금	임금 성비	월 임금 총액	시간당 임금	임금 성비	월 임금 총액	시간당 임금	임금 성비	
2023	전체	3,640	22,878		4,280	24,799		1,876	17,586		
	여성	2,783	18,502	71.0	3,409	20,205	73.0	1,475	14,944	73.5	
	남성	4,260	26,042		4,830	27,695		2,294	20,337		
2024	전체	3,737	25,156		4,427	27,703		1,909	18,404		
	여성	2,851	20,363	70.9	3,541	22,670	73.3	1,489	15,807	74.3	
	남성	4,398	28,734		4,996	30,932		2,371	21,270		
증감	'23년 대비	전체	97	2,278		147	2,904		33	818	
		여성	68	1,861	-0.2	132	2,465	0.3	14	863	0.8
		남성	138	2,692		166	3,237		77	933	
	'14년 대비	전체	1,037	8,455		1,276	9,277		576	6,941	
		여성	926	7,863	6.8	1,210	8,898	7.9	422	5,989	0.2
		남성	1,180	9,229		1,383	9,878		751	8,027	

주: 해당 값은 반올림한 것으로 각 항목의 합계 또는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V-1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성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 여성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길수록 평균 월 임금 총액과 시간당 임금이 높아짐

- 2024년의 경우,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여성 근로자의 평균 월 임금 총액은 1,853천 원, 시간당 임금은 15,801원, 근속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여성 근로자의 평균 월 임금 총액은 2,557천 원, 시간당 임금은 18,368원, 근속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여성 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은 2,889천 원, 시간당 임금은 19,907원, 근속기간 5년 이상 7년 미만 여성 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은 3,147천 원, 시간당 임금은 21,236원, 근속기간 7년 이상 여성 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은 4,352천 원, 시간당 임금 28,559원으로 나타남
- 2024년 기준 성별 시간당 임금비는 근속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근로자 집단에서 각각 79.0%, 74.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7년 이상 집단에서 72.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2024년 기준 성별 시간당 임금비는 전년대비 0.7%p 감소한 근속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집단과 0.3%p 감소한 근속기간 7년 이상 집단을 제외한 집단에서 전년 대비 상승함. 10년 전과 비교하면 모든 근속기간별에서 성별 시간당 임금비 상승
- 고용형태별 근로자의 근속기간별 임금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속기간이 5년 이상인 여성의 평균 월 급여 총액은 4,303천 원으로 근속기간 5년 미만 여성 근로자(3,000천 원)에 비해 월 급여 총액이 현저히 높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속기간 5년 이상 여성의 월 급여 총액은 1,841천 원으로 근속기간 5년 미만 여성 근로자(1,446천 원)에 비해 약간만 높은 수준임

표 V-2 성별·근속기간별 평균 임금

(단위: 월 임금 총액-천 원, 시간당 임금-원, 임금성비-%, 임금성비 증감 -%p)

연도	성별	1년 미만			1-3년			3-5년		
		월 임금 총액	시간당 임금	임금 성비	월 임금 총액	시간당 임금	임금 성비	월 임금 총액	시간당 임금	임금 성비
2014	전체	1,592	11,333		2,285	13,725		2,709	16,085	
	여성	1,274	9,541	73.8	1,819	11,324	72.2	2,113	13,003	71.5
	남성	1,876	12,932		2,663	15,676		3,114	18,179	
2019	전체	1,970	15,433		2,608	16,771		2,952	18,689	
	여성	1,643	13,166	75.8	2,150	14,626	77.9	2,400	15,917	76.3
	남성	2,248	17,358		3,036	18,777		3,384	20,855	
2023	전체	2,278	17,518		3,149	19,328		3,504	21,237	
	여성	1,857	14,802	74.7	2,573	16,884	78.4	2,868	18,362	78.1
	남성	2,635	19,812		3,665	21,523		4,004	23,497	
2024	전체	2,288	18,781		3,130	20,887		3,539	23,076	
	여성	1,853	15,801	74.0	2,557	18,368	79.0	2,889	19,907	77.5
	남성	2,663	21,346		3,668	23,248		4,076	25,695	

연도	성별	1년 미만			1-3년			3-5년		
		월 임금 총액	시간당 임금	임금 성비	월 임금 총액	시간당 임금	임금 성비	월 임금 총액	시간당 임금	임금 성비
증감	'23년 대비	전체	10	1,263		-18	1,559		35	1,840
		여성	-3	999	-0.7	-16	1,484	0.6	21	1,545
		남성	28	1,534		2	1,724		72	2,197
	'14년 대비	전체	697	7,448		846	7,162		830	6,992
		여성	579	6,260	0.2	738	7,044	6.8	776	6,904
		남성	787	8,414		1005	7,572		962	7,516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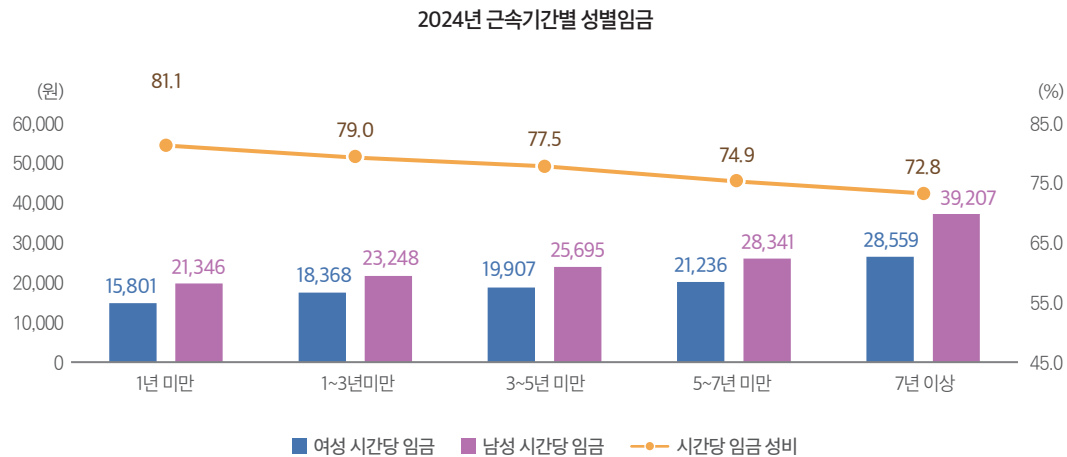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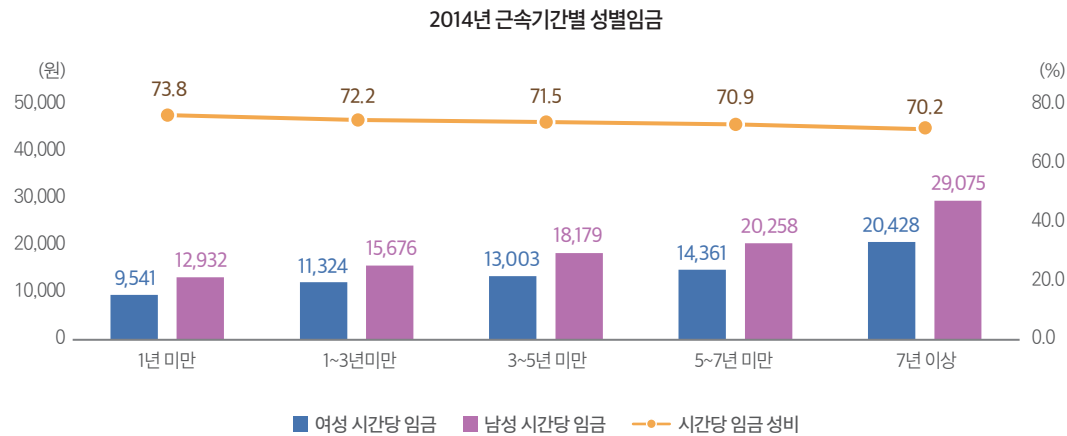
표 V-2 성별·근속기간별 평균 임금-계속

(단위: 월 임금 총액-천 원, 시간당 임금-원, 임금성비-%, 임금성비 증감 -%p)

연도	성별	5-7년			7년 이상			
		월임금총액	시간당 임금	임금 성비	월임금총액	시간당 임금	임금 성비	
2014	전체	3,021	18,079	70.9	4,500	26,800	70.2	
	여성	2,319	14,361		3,344	20,423		
	남성	3,432	20,258		4,913	29,075		
2019	전체	3,329	20,931	74.8	4,820	29,905	72.1	
	여성	2,673	17,465		3,662	23,547		
	남성	3,788	23,358		5,321	32,656		
2023	전체	3,851	22,827	75.0	5,557	32,518	73.1	
	여성	3,088	19,086		4,308	26,058		
	남성	4,387	25,455		6,161	35,643		
2024	전체	3,952	25,358	74.9	5634	35,600	72.8	
	여성	3,147	21,236		4,352	28,559		
	남성	4,534	28,341		6,291	39,207		
증감	'23년 대비	전체	100	2,531	-0.1	77	3,082	-0.3
		여성	59	2,150		44	2,501	
		남성	146	2,886		129	3,564	
	'14년 대비	전체	931	7,279	4.0	1,133	8,800	2.6
		여성	828	6,875		1,008	8,136	
		남성	1,102	8,083		1,377	10,132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원자료 분석

그림 V-2 근속기간별 남녀 근로자의 임금과 성비(2014, 2024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원자료 분석

표 V-3 성별·고용형태별·근속기간별 평균 임금

(단위: 월임금총액-천원, 시간당임금-원, 임금성비-%, 임금성비증감 -%p)

연도	성별	정규직						비정규직					
		5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월임금 총액	시간당 임금	임금 성비	월임금 총액	시간당 임금	임금 성비	월임금 총액	시간당 임금	임금 성비	월임금 총액	시간당 임금	임금 성비
2014	전체	2,416	13,951		4,288	25,357		1,308	11,292		1,714	14,104	
	여성	1,955	11,421	72.5	3,213	19,292	69.8	1,051	9,666	74.1	1,321	12,104	73.9
	남성	2,746	15,757		4,695	27,655		1,586	13,046		2,163	16,389	

연도	성별	정규직						비정규직					
		5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월임금 총액	시간당 임금	임금 성비	월임금 총액	시간당 임금	임금 성비	월임금 총액	시간당 임금	임금 성비	월임금 총액	시간당 임금	임금 성비
2019	전체	2,813	17,275		4,620	28,389		1,609	15,254		1,990	17,672	
	여성	2,376	14,912	77.7	3,566	22,337	71.7	1,291	13,092	75.4	1,624	16,292	83.7
	남성	3,166	19,187		5,100	31,149		1,921	17,374		2,466	19,467	
2023	전체	3,406	19,723		5,361	31,070		1,821	17,420		2,423	19,229	
	여성	2,903	17,211	79.6	4,223	25,017	73.4	1,431	14,752	73.2	1,878	16,719	75.2
	남성	3,787	21,629		5,926	34,072		2,221	20,161		3,075	22,234	
2024	전체	3,492	21,843		5,464	34,202		1,856	18,216		2,358	20,019	
	여성	3,000	19,135	80.0	4,303	27,654	73.5	1,446	15,562	73.8	1,841	17,772	77.8
	남성	3,870	23,926		6,067	37,605		2,303	21,101		3,006	22,837	
	'23년 대비	전체	86	2,120		103	3,132		35	796		-65	790
		여성	98	1,924	0.4	80	2,637	0.1	14	810	0.6	-37	1,053
		남성	83	2,297		142	3,534		82	940		-69	603
	'14년 대비	전체	1,076	7,892		1,176	8,845		548	6,924		644	5,915
		여성	1,045	7,715	7.5	1,089	8,362	3.8	395	5,896	-0.3	519	5,668
		남성	1,125	8,169		1,372	9,950		717	8,055		843	6,448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원자료 분석

○ 2024년 기준, 여성 근로자의 평균 월 급여 총액이 가장 높은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평균 월 급여 총액이 6,020천 원이며, 평균 월 급여 총액이 가장 낮은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1,677천 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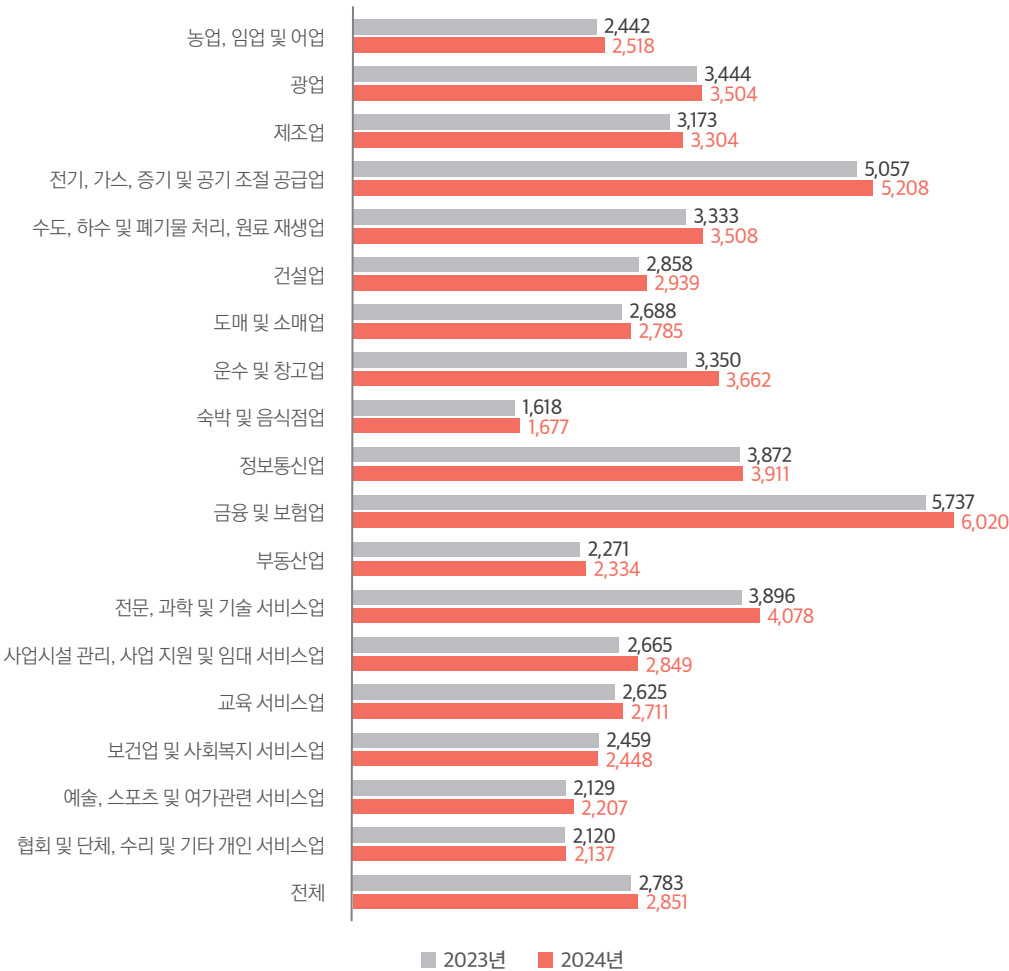
- 전년 대비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 수준 증가 폭이 가장 큰 업종은 운수 및 창고업으로 여성 근로자의 평균 월 급여 총액이 전년 대비 312천 원 증가하였음
-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전년 대비 평균 임금이 10천 원 감소하여 증가 폭이 가장 작았음

○ 2024년 기준, 여성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이 가장 높은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39.7천 원)이며 가장 낮은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13.7천 원)임

-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모든 업종에서 여성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증가하였는데, 시간당 임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5.4천 원 증가하였고, 시간당 임금이 가장 적게 증가한 업종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900원 증가하는데 그침
- 2024년 기준, 남녀 시간당 임금비가 가장 높은 업종은 운수 및 창고업으로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은 평균 99.3%수준이고, 남녀 시간당 임금비가 가장 낮은 업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62.6%)임

그림 V-3 업종별 여성 월 평균 임금

(단위: 천 원)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원자료 분석

표 V-4 성별·업종별 평균 월 급여 총액

(단위: 천 원)

업종 대분류	2023			2024			전년대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3,640	2,783	4,260	3,737	2,851	4,398	97	68	139
농업, 임업 및 어업	3,104	2,442	3,350	3,193	2,518	3,442	89	76	92
광업	4,399	3,444	4,529	4,538	3,504	4,681	139	60	152
제조업	4,323	3,173	4,712	4,487	3,304	4,887	164	131	17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6,478	5,057	6,795	6,607	5,208	6,910	129	151	116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030	3,333	4,164	4,226	3,508	4,361	195	174	197

업종 대분류	2023			2024			전년대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건설업	3,192	2,858	3,247	3,284	2,939	3,348	92	81	101
도매 및 소매업	3,444	2,688	4,022	3,579	2,785	4,192	134	96	170
운수 및 창고업	3,781	3,350	3,890	3,947	3,662	4,022	166	312	133
숙박 및 음식점업	1,792	1,618	2,114	1,857	1,677	2,200	64	59	86
정보통신업	4,803	3,872	5,262	4,921	3,911	5,402	118	40	140
금융 및 보험업	6,805	5,737	7,803	6,991	6,020	7,903	186	283	100
부동산업	2,876	2,271	3,182	2,932	2,334	3,239	56	63	5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968	3,896	5,570	5,194	4,078	5,814	227	182	24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227	2,665	3,699	3,360	2,849	3,814	133	184	115
교육 서비스업	3,204	2,625	3,987	3,276	2,711	4,049	72	85	6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787	2,459	4,392	2,763	2,448	4,373	-24	-10	-1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584	2,129	2,998	2,703	2,207	3,153	118	78	15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648	2,120	2,984	2,702	2,137	3,065	54	17	82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원자료 분석

표 V-5 성별·업종별 평균 시간당 임금

(단위: 천 원, %, %p)

구분	2023			2024			전년대비		
업종 대분류	여성	남성	임금비	여성	남성	임금비	여성	남성	임금비
전체	18.5	26.0	71.0	20.4	28.7	70.9	1.9	2.7	-0.2
농업, 임업 및 어업	16.0	21.1	75.6	17.5	23.3	75.0	1.5	2.2	-0.6
광업	20.1	25.4	79.2	22.8	27.6	82.7	2.7	2.2	3.5
제조업	18.9	26.6	71.3	21.3	29.4	72.5	2.4	2.8	1.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0.3	39.2	77.2	33.1	42.4	78.1	2.9	3.2	0.9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0.1	23.1	86.8	22.5	25.7	87.7	2.5	2.6	0.9
건설업	20.1	25.4	78.9	22.3	27.1	82.0	2.2	1.7	3.1
도매 및 소매업	17.6	24.0	73.1	19.4	27.2	71.4	1.8	3.2	-1.7
운수 및 창고업	20.5	22.8	89.9	25.1	25.3	99.3	4.6	2.5	9.4
숙박 및 음식점업	12.5	14.3	87.1	13.7	15.3	89.4	1.2	1.0	2.3
정보통신업	23.6	31.4	75.0	25.9	35.2	73.7	2.3	3.7	-1.3
금융 및 보험업	34.3	46.4	73.9	39.7	51.9	76.5	5.4	5.5	2.6
부동산업	15.8	18.2	86.8	17.3	19.8	87.6	1.5	1.6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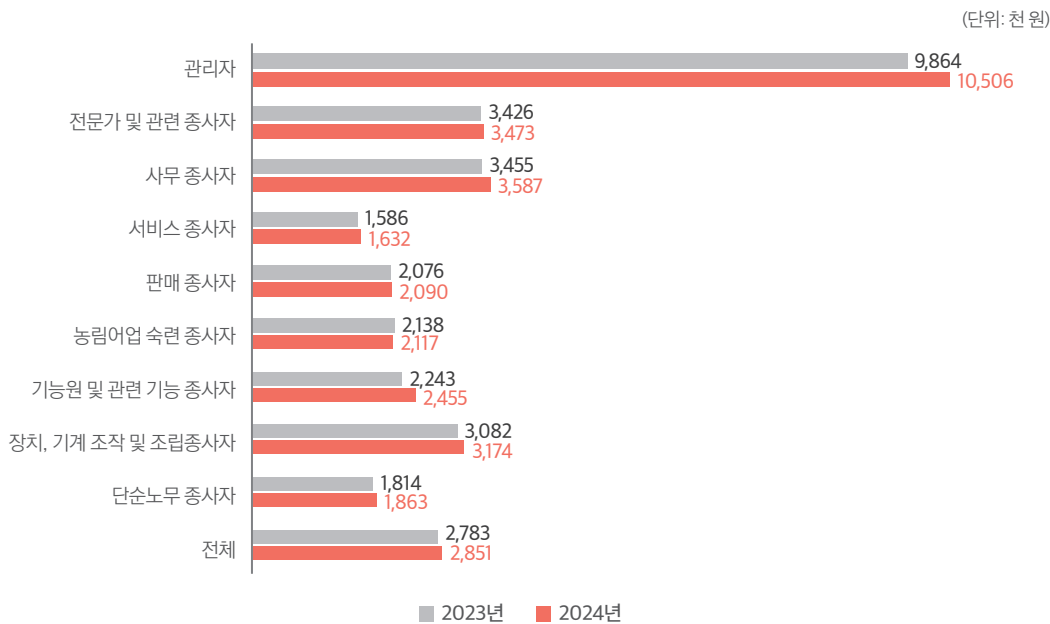
구분	2023			2024			전년대비		
	여성	남성	임금비	여성	남성	임금비	여성	남성	임금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3.9	33.5	71.3	27.0	37.9	71.0	3.1	4.5	-0.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6.7	22.1	75.8	19.4	24.3	79.6	2.7	2.3	3.8
교육 서비스업	22.8	31.0	73.4	24.5	32.8	74.7	1.8	1.8	1.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1	27.0	63.5	18.3	29.2	62.6	1.1	2.2	-0.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6.0	19.1	83.9	17.3	21.3	81.3	1.3	2.2	-2.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5.2	18.4	82.9	16.2	19.9	81.2	0.9	1.5	-1.7

주: 해당 값은 반올림한 것으로 각 항목의 합계 또는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 2024년 기준 여성 근로자의 평균 월 급여 총액이 가장 높은 직종은 관리자직종으로 평균 월 급여 총액이 10,506천 원이었고, 평균 월 급여 총액이 가장 낮은 직종은 서비스 종사자로 평균 월 급여 총액은 1,632천 원이었음

- 전년 대비 임금 수준 증가 폭이 가장 큰 직종은 관리자 직종으로 전년대비 평균 월 급여총액이 642천 원 증가하였음
- 반면,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의 경우 전년 대비 평균 월 급여 총액이 21천 원 감소하여 증가 폭이 가장 작았음

그림 V-4 직업별 여성 월 평균 임금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원자료 분석

표 V-6 성별·직업별 평균 월 급여 총액

(단위: 천 원)

직업 대분류	2023			2024			전년대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3,640	2,783	4,260	3,737	2,851	4,398	97	68	139
관리자	11,927	9,864	12,232	12,199	10,506	12,447	271	643	21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517	3,426	5,426	4,617	3,473	5,577	100	46	151
사무 종사자	4,283	3,455	5,075	4,407	3,587	5,230	124	131	155
서비스 종사자	1,763	1,586	2,303	1,818	1,632	2,403	55	46	100
판매 종사자	2,890	2,076	3,610	2,973	2,090	3,780	83	14	17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432	2,138	2,481	2,565	2,117	2,657	133	-21	17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250	2,243	3,379	3,361	2,455	3,471	111	212	92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788	3,082	3,897	3,912	3,174	4,020	124	92	123
단순노무 종사자	2,058	1,814	2,241	2,105	1,863	2,306	47	49	65

주: 제7차 표준직업분류의 직업 대분류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원자료 분석

○ 2024년 기준,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가장 높은 직종은 관리자 직종(69.1천 원)이며 가장 낮은 직종은 단순노무종사자(14.6천 원)임

- 전년 대비 모든 직종에서 여성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이 증가하였는데, 시간당 임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직종은 관리자로 10.1천 원 증가하였음
- 2024년 기준, 남녀 임금비가 가장 높은 직종은 서비스직으로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은 평균 89.3% 수준이고, 남녀 임금비가 가장 낮은 직종은 판매종사자(62.8%)임

표 V-7 성별·직업별 평균 시간당 임금

(단위: 천 원, %, %p)

직업 대분류	2023			2024			전년대비		
	여성	남성	임금비	여성	남성	임금비	여성	남성	임금비
전체	18.5	26.0	71.0	20.4	28.7	70.9	1.9	2.7	-0.2
관리자	59.0	73.2	80.6	69.1	80.6	85.7	10.1	7.5	5.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2.3	32.8	67.9	24.2	36.4	66.5	2.0	3.6	-1.4
사무 종사자	21.1	30.0	70.5	23.9	33.7	71.0	2.7	3.7	0.5
서비스 종사자	13.5	15.1	89.6	14.7	16.4	89.3	1.2	1.3	-0.3
판매 종사자	14.6	22.0	66.4	15.6	24.8	62.8	1.0	2.8	-3.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4.1	17.3	81.7	17.0	19.6	86.3	2.8	2.4	4.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3	23.4	69.5	18.7	25.7	72.8	2.4	2.2	3.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7.6	21.4	82.3	19.4	23.4	82.9	1.7	1.9	0.6
단순노무 종사자	13.5	16.9	80.0	14.6	17.1	85.5	1.1	0.3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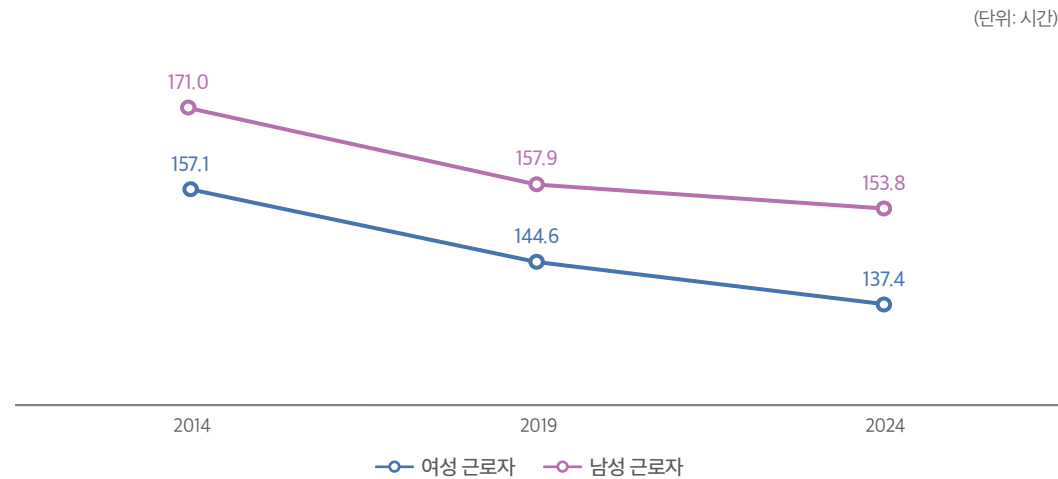
주: 1) 제7차 표준직업분류의 직업 대분류임
2) 해당 값은 반올림한 것으로 각 항목의 합계 또는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원자료 분석

2. 근로시간

○ 2024년 여성 근로자의 평균 월간 총 근로시간은 137.4시간, 남성 근로자는 153.8시간이며 지난 10년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

- 남녀간 월 평균 근로시간 차이는 2014년 13.9시간에서 2024년 16.4시간으로 약간 증가함

그림 V-5 성별 근로자 월 평균 근로시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원자료 분석

○ 2024년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총 근로시간은 137.4시간으로 전년 대비 10.8시간 감소, 10년 전 대비 19.8시간 감소하였음

-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소정 근로시간은 2024년 132.8시간, 초과 근로시간은 4.5시간으로 전년 대비 소정 근로시간은 10.8시간 감소, 초과 근로시간은 변화 없음
- 고용형태별로 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총 근로시간은 2024년 기준 158.5시간(소정 근로시간 152.7시간, 초과 근로시간 5.7시간)으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총 근로시간 95.7시간(소정 근로시간 93.5시간, 초과 근로시간 2.2시간)에 비해 62.8시간 많음
- 2024년 기준 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총 근로시간은 전년 대비 11.9시간 감소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6.1시간 감소하였음
- 전년대비 큰 폭의 근로시간 감소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조사시기인 6월 평일 일수가 2023년 대비 2024년 2일 감소한 영향이 큼

표 V-8 성별·고용형태별 월 평균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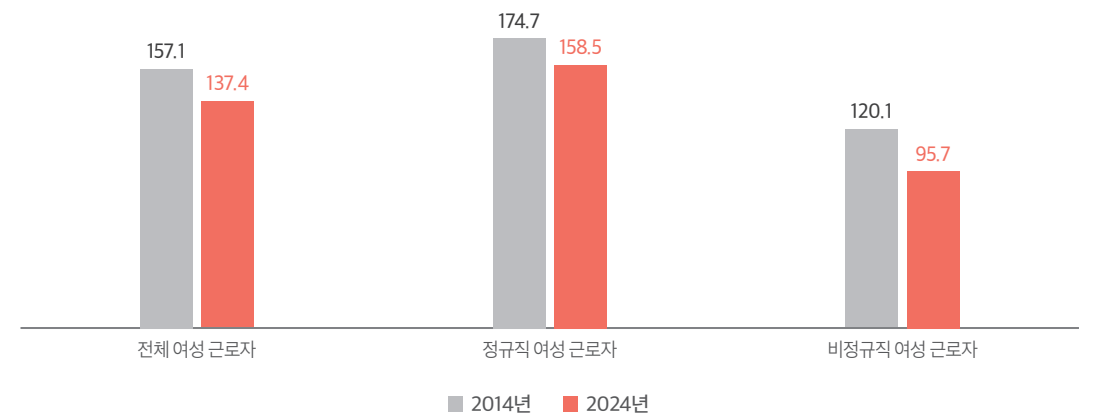
(단위: 시간)

연도	성별	전체 근로자			정규 근로자			비정규 근로자			
		총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총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총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2014	전체	165.5	154.6	10.8	177.7	165.4	12.3	128.3	122.0	6.3	
	여성	157.1	150.1	7.0	174.7	166.0	8.7	120.1	116.6	3.5	
	남성	171.0	157.6	13.4	179.4	165.0	14.4	137.1	127.7	9.4	
2019	전체	152.4	144.9	7.5	165.2	156.6	8.6	112.1	108.0	4.0	
	여성	144.6	140.2	4.5	161.4	156.1	5.3	103.7	101.4	2.3	
	남성	157.9	148.3	9.6	167.6	156.9	10.7	120.5	114.7	5.8	
2023	전체	157.6	150.3	7.4	174.5	165.9	8.6	111.0	107.2	3.8	
	여성	148.2	143.7	4.5	170.4	164.8	5.6	101.8	99.6	2.2	
	남성	164.4	155.0	9.4	177.1	166.6	10.5	120.5	115.0	5.4	
2024	전체	146.8	139.4	7.4	162.2	153.5	8.7	105.8	101.8	4.1	
	여성	137.4	132.8	4.5	158.5	152.7	5.7	95.7	93.5	2.2	
	남성	153.8	144.2	9.6	164.6	154.1	10.6	117.0	110.9	6.1	
증감	'23년 대비	전체	-10.8	-10.9	0.1	-12.3	-12.3	0.1	-5.1	-5.4	0.2
		여성	-10.8	-10.8	0.0	-11.9	-12.0	0.1	-6.1	-6.1	0.0
		남성	-10.6	-10.8	0.2	-12.5	-12.5	0.1	-3.4	-4.1	0.6
	'14년 대비	전체	-18.7	-15.3	-3.4	-15.5	-11.8	-3.6	-22.5	-20.2	-2.3
		여성	-19.8	-17.3	-2.5	-16.2	-13.2	-3.0	-24.4	-23.1	-1.3
		남성	-17.2	-13.4	-3.8	-14.8	-11.0	-3.8	-20.1	-16.8	-3.3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원자료 분석

그림 V-6 고용형태별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원자료 분석

○ 2024년에도 근로시간의 전반적인 감소세는 유지되고 있음

- 근속기간이 5년 이상인 여성 근로자의 2024년 월 평균 총 근로시간은 152.4시간이며, 소정 근로시간은 146.6시간, 초과 근로시간은 5.8시간으로 나타남
- 2024년 기준 근속기간 5년 미만인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총 근로시간은 130.5시간, 소정 근로시간은 126.5시간, 초과 근로시간은 4.0시간임
- 근속기간 5년 이상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총 근로시간은 전년대비 12.9시간 감소, 10년전 대비 16.1시간 감소했고, 근속기간 5년 미만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총 근로시간은 전년대비 10.7시간 감소, 10년전 대비 23.4시간 감소함

표 V-9 성별·근속기간별 월 평균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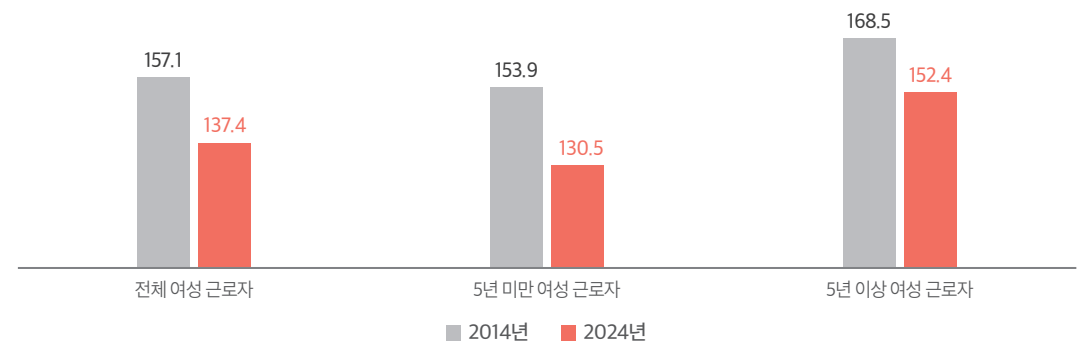
(단위: 시간)

연도	성별	근속기간 5년 미만			근속기간 5년 이상			
		총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총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2014	전체	161.6	151.8	9.8	174.0	160.8	13.2	
	여성	153.9	147.5	6.3	168.5	159.0	9.5	
	남성	168.0	155.4	12.6	176.2	161.6	14.6	
2019	전체	146.4	139.9	6.4	163.3	153.8	9.4	
	여성	139.7	135.9	3.8	157.1	150.9	6.2	
	남성	152.1	143.4	8.7	166.3	155.2	11.1	
2023	전체	149.7	143.6	6.2	172.0	162.5	9.5	
	여성	141.2	137.3	3.9	165.3	159.3	6.0	
	남성	157.0	148.9	8.1	175.6	164.3	11.3	
2024	전체	139.3	133.0	6.3	159.4	150.1	9.3	
	여성	130.5	126.5	4.0	152.4	146.6	5.8	
	남성	147.0	138.7	8.4	163.3	152.0	11.3	
증감	'23년 대비	전체	-10.5	-10.6	0.1	-12.7	-12.5	-0.2
		여성	-10.7	-10.7	0.1	-12.9	-12.7	-0.2
		남성	-10.0	-10.2	0.2	-12.3	-12.3	-0.1
	'14년 대비	전체	-22.3	-18.8	-3.5	-14.6	-10.7	-3.9
		여성	-23.4	-21.0	-2.4	-16.1	-12.4	-3.7
		남성	-21.0	-16.7	-4.3	-12.9	-9.5	-3.4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원자료 분석

그림 V-7 근속기간별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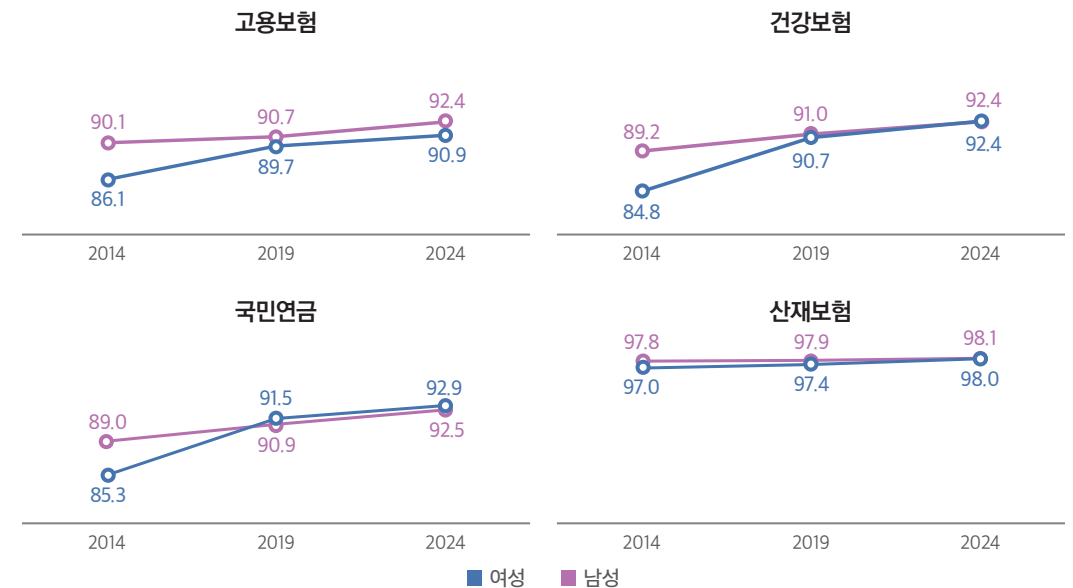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원자료 분석

3. 사회보험⁵⁾

- 지난 10년간 적용 제외 대상을 제외한 여성 근로자 중 사회보험 가입자 비중(사회보험 가입률⁶⁾)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모두에서 완만한 증가세

그림 V-8 남녀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원자료 분석

5) 고용보험은, 65세이상, 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상용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제외, 건강보험은 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제외, 국민연금은 18세 미만, 60세 이상, 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제외, 산재보험은 상용근로자 1인 미만, 상용근로자 5인미만 농림 어업 제외함. 또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교육서비스업 취업자의 사회보험 가입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 수치 집계시 교육서비스업 취업자는 제외되었음

6) 각 사회보험 가입률은 적용제외 대상을 제외한 근로자 중 가입자 비중을 %로 나타냄

○ 2024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률은 90.9%로 전년 대비 0.1%p 감소하였으나 10년 전 대비 4.8%p 증가한 수준임

- 여성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2024년 92.4%로 전년 대비 0.4%p 감소, 10년 전 대비 7.7%p 증가하였고, 국민연금 가입률은 2024년 92.9%로 전년 대비 0.3%p 감소, 10년 전 대비, 7.6%p 증가함
- 여성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024년 98.0%로 전년 대비 0.1%p 감소, 10년 전 대비 1.0%p 증가함

표 V-10 성별·근로자 사회보험 유형별 가입률

(단위: %, %p)

연도	성별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2014	전체	88.5	87.5	87.6	97.5	
	여성	86.1	84.8	85.3	97.0	
	남성	90.1	89.2	89.0	97.8	
2019	전체	90.3	90.9	91.1	97.7	
	여성	89.7	90.7	91.5	97.4	
	남성	90.7	91.0	90.9	97.9	
2023	전체	91.7	92.5	92.9	98.1	
	여성	91.0	92.8	93.2	98.1	
	남성	92.2	92.3	92.8	98.1	
2024	전체	91.8	92.4	92.6	98.1	
	여성	90.9	92.4	92.9	98.0	
	남성	92.4	92.4	92.5	98.1	
증감	'23년 대비	전체	0.0	-0.1	-0.3	0.0
		여성	-0.1	-0.4	-0.3	-0.1
		남성	0.2	0.1	-0.3	0.0
	'14년 대비	전체	3.3	4.9	5.1	0.6
		여성	4.8	7.7	7.6	1.0
		남성	2.3	3.2	3.4	0.3

주: 1) 사대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모두 적용 대상인 사람 중에 각 보험을 모두 가입한 사람의 비중을 %로 나타냄

2) 사회보험 가입률은 적용제외대상을 제외한 근로자 중 가입자 비중(%)을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원자료 분석

○ 고용형태별로 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률은 2024년 기준 각각 94%, 98.6%, 98.4%, 98.2% 수준으로 전년대비 거의 변화가 없음

- 반면,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각 보험 가입률은 순서대로 81.5%, 76.3%, 74.4%, 97.7%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이 약간 하락함
- 정규직-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간 가입률 차이는 고용보험이 2024년 12.5%p, 건강보험이 22.3%p, 국민연금 24%p, 산재보험 0.5%p로, 국민연금의 가입률 격차가 가장 크고 산재보험의 경우 격차가 거의 없음

표 V-11 성별·고용형태별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p)

연도	성별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2014	전체	95.4	97.8	97.6	97.7	63.0	51.2	48.2	96.5	
	여성	95.1	96.9	96.7	97.3	62.2	53.9	53.1	96.1	
	남성	95.6	98.3	98.0	97.9	63.7	48.6	43.1	97.0	
2019	전체	94.4	98.2	98.0	97.8	74.0	64.2	61.0	97.3	
	여성	94.3	97.7	97.6	97.7	74.9	69.6	70.0	96.5	
	남성	94.5	98.5	98.3	97.9	73.1	59.4	52.6	97.9	
2023	전체	94.5	98.8	98.6	98.1	81.4	71.7	68.5	98.2	
	여성	94.0	98.5	98.4	98.3	81.6	77.4	74.9	97.7	
	남성	94.7	99.0	98.8	98.0	81.1	66.7	62.7	98.7	
2024	전체	94.5	98.8	98.6	98.1	81.7	71.5	67.6	98.1	
	여성	94.0	98.6	98.4	98.2	81.5	76.3	74.4	97.7	
	남성	94.7	99.0	98.7	98.0	81.9	67.1	61.1	98.5	
증감	'23년 대비	전체	0.0	0.0	-0.1	0.0	0.4	-0.2	-0.8	-0.2
		여성	0.0	0.0	0.0	-0.1	-0.2	-1.1	-0.5	0.0
		남성	0.0	0.0	-0.1	0.0	0.8	0.5	-1.6	-0.2
	'14년 대비	전체	-1.0	1.0	1.0	0.3	18.8	20.3	19.5	1.5
		여성	-1.0	1.7	1.6	0.8	19.3	22.4	21.3	1.6
		남성	-0.9	0.7	0.7	0.1	18.2	18.5	18.0	1.5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원자료 분석

통계 설명자료

용어	해설
경제활동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수입이 있는 일을 행함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계
취업자	①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②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 ③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실업자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비경제활동인구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만 15세 이상인 자, 즉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에 관여하는 자 등
육아	조사대상주간에 주로 미취학자녀(초등학교 입학전)를 돌보기 위하여 집에 있는 경우
가사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가정에서 가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가사를 돌볼 책임이 있었다고 한 사람
재학·수강	정규교육기관,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에 통학한 사람
연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수입 있는 일, 구직활동 등 아무 일 없이 시간을 보낸 사람
심신장애	정상적인 일을 하기가 어려운 장기적인 질환, 정신·육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
취업준비	학교나 학원에 가지않고, 혼자 집이나 도서관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
진학준비	혼자 집이나 도서관 등에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공부하는 경우
군입대대기	군대를 가기 위해 조사대상기간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대기 중인 사람
쉬었음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조기퇴직·명퇴 등으로 인해 쉬고 있는 사람
고용률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
실업률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종사상지위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상태를 말하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구분

용어	해설
자영업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및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합친 개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무급가족종사자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
임금근로자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 받는 근로자로서 통상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로 구분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고용계약미설정자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고용계약미설정자는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자 등
비임금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형태의 근로자에 해당
산업	산업이란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자가 속한 사업체의 주된 경제활동을 의미 하며, 산업의 분류는 1992년부터 2000년까지는 1991년에 개정된 6차 한국 표준산업분류 기준,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8년 개정, 2004~2017년 수록), 10차 한국 표준산업분류(2017년 개정, 2013년~)를 적용
직업	직업이란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자가 종사하고 있는 일의 기능별 종류를 말하며, 직업의 분류는 1993년부터 2000년까지는 1992년에 개정된 4차 한국 표준직업분류 기준을,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2000년에 개정된 5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 6차 한국표준직업분류(2007년 개정, 2004~2017년간 신규 병행수록), 7차 한국표준직업분류(2017년 개정, 2013년 이후 소급제공)를 적용
여성기업	- 통계적 정의: 대표자가 여성인 기업(여성기업실태조사) - 법적 정의: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법인의 경우 여성대표자가 최대출자자인 상법 상의 회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통계설명자료

관련 사이트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https://www.mogef.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moel.go.kr/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	https://worklife.kr/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	https://saeil.mogef.go.kr/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www.ffsb.kr/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https://www.wbiz.or.kr/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홈페이지	https://www.wiset.or.kr/
여성과학기술인 생애주기 성장 플랫폼 'W브릿지'	https://www.wbridge.or.kr/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
고용24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



2025년

여성 경제 활동 백서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

발 행 일	2025년 12월 26일
발 행 처	성평등가족부(경제활동촉진과) 고용노동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
집 필 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선주, 전기택, 주재선, 박수범, 김안나, 양준영 한국노동연구원 손연정, 최세림
편집·디자인	세일포커스㈜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대로 15 창강빌딩 6층 Tel. 02-2275-6894 www.seilfocus.com